

CR 2012-36

CR 2012-36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유경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 한유경(이화여자대학교)
- 공동연구자 : 정제영(이화여자대학교)
김성기(협성대학교)
정성수(대구교육대학교)
윤신덕(삼각산중학교)
- 연구조원 : 이윤희(이화여자대학교)
선미숙(이화여자대학교)

정책연구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이나 정책대안 등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를 밝힙니다.

연구 요약

이 연구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위해 학생자치 역량 강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및 사례를 분석하고, 초·중·고 현장 교원, 학교문화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비전과 방안을 검토하며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개최 및 교육과학기술부·연구진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

학교문화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전국 11,320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자치 역량 수준,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참여 수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참여 수준 등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와 학생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사들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생자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를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학생들의 인식 수준은 교사들과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학생들은 학교규칙 제·개정 및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으나 시간이나 환경적 여건, 학교의 지원이 부족하여 학생자치 실태 수준이 그리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수준에 있어서도 교사들은 학교의 지원과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한 반면,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이 학생회, 자치법정,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적 활동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우고 고유한 청소

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급규칙 제정, 학급 부서 조직과 운영 등 초보적인 수준의 자치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학생자치과’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의 변화는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자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상급학교 진학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입시위주의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고, 학교의 운영도 교과성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입시문화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이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학생자치활동은 타율적이고 통제적인 문화와 결합되어 학교의 형식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유명무실하게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규칙 준수와 질서의식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 바른 언어 사용 등의 기본적인 민주시민 의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학교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 가치는 안전과 평화, 참여와 배려, 신뢰와 존중, 선의의 경쟁, 개방과 소통, 자율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 조직의 구성원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생들은 미래 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학 진학과 학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만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는 입시문화는 학생

자치활동을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활동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학교의 보수적 문화는 학생자치가 교사와 학생 간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은 이러한 전통적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학생의 의견 제시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학생의 자치 능력,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불신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화의 전환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통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에서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생활규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과정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대표성을 갖게 되면 학급의 자치활동과 연계되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과 평가를 통해 자정 능력을 갖춘 학생회가 운영되면 자치법정,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될 수 있다.

학생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운영위원을 배석하게 하는 것이다.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안건 심의 시에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고, 학생대표는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

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담회를 상설 운영위원 간담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전체 교직원 회의를 주 1회 또는 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도 평균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나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의 공식적 만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고충과 불만, 건의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회 운영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학교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자체 예산 편성, 동창회 기금 지원, 학교발전기금 지원, 학생회의 자구적 노력 등을 통해 학생회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생회 주관 공개포럼과 공청회 개최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의 생활협약이나 시설사용 규칙 등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과정으로서 포럼과 공청회 개최를 활용해야 한다. 이는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체득해 나가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중요한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인근 학교 학생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생회 활동은 교원들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인근 학교간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지역 학생회 모임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학교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회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단위 학생회가 공동의 관심사나 건의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제안하면, 교육위원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학급규칙’을 만들고, 학교공동체의 ‘자율적 생활협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약속을 만들고, 이를 학교수준으로 확대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학

생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약속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준법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별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학교 자치법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많은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와 연계하여 학생의 자율적 문제인식 능력을 높이고, 문제해결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봉사활동에의 참여도 장려되어야 한다. 봉사활동은 학생의 사회적 책임감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 등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적 성장과 발달,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양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우수동아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우수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기관을 확대하여야 하며, 동아리활동으로 계발한 역량을 봉사활동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봉사활동 연계 운영의 활성화 방안도 필요하다.

차 례

I. 서론	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5
3. 연구 방법	6
4.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점	9
II. 학교문화의 현실	13
1. 학생참여 및 교육적 지원	13
2. 학교규칙	24
3.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53
4. 선행연구 분석	71
III. 인성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	79
1. 총론연구팀의 인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81
2.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 결과	94
IV. 인성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에 대한 논의	123
1. 학생자치 실태	125
2. 학교규칙 실태	128
3.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실태	131
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35
1. 정책적 제언	137
2. 결론	145
참고문헌	149
부 록	159

표 차 례

<표 I-1>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 관련 문항 구성	7
<표 I-2>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9
<표 II-1> 개인 단위의 상벌점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제	22
<표 II-2> 오산 원일중학교 자치법정 운영 사례	23
<표 II-3> 학교규칙 관련 법령	26
<표 II-4> 학생 포상 및 징계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예시1	33
<표 II-5> 학생 포상 및 징계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예시2	33
<표 II-6> 일본 오키나와 현립 야에야마 상업고등학교의 교복 및 옷차림 규정	52
<표 II-7> 봉사활동의 운영단계	59
<표 II-8> 동아리활동의 종류	63
<표 II-9> 봉사활동의 유형 및 활동내용	64
<표 II-10> 춘천여자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사례	66
<표 II-11> 부산강서고등학교 봉사활동 사례	68
<표 II-12>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순위 및 항목별 지표	72
<표 III-1> 시·도별, 학교급별, 조사대상별 조사표본 수	82
<표 III-2> 인성의 중요성	83
<표 III-3>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	84
<표 III-4> 학교 인성 교육수준	85
<표 III-5> 인성형성에 부정적인 요소(1순위)	86
<표 III-6> 인성형성에 부정적인 요소(2순위)	87
<표 III-7> 등굣길 학생 괴롭힘 당하는 장면 목격 시 반응	88
<표 III-8>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	88
<표 III-9> 민주적절차를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규칙 결정	89
<표 III-10> 학생의 충분한 학생자치활동 참여	90
<표 III-11> 학급회의 개최 횟수	91
<표 III-12> 학생회자치활동강화_학생회활동활성화	91
<표 III-13> 학생회자치활동강화_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92
<표 III-14> 학생회자치활동강화_동아리활동활성화	93
<표 III-15> 학생회자치활동강화_또래 상담, 또래 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94

<표 III-16> 조사대상 현황	95
<표 III-17>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95
<표 III-18>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 희망 여부	96
<표 III-19>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여부	97
<표 III-20>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98
<표 III-21> 학생들의 자치활동 수준	98
<표 III-22>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지원 수준	99
<표 III-23>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 개최	100
<표 III-24> 학급회의 운영 수준	101
<표 III-2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101
<표 III-26> 학생회의 필요한 비용 학교에 요청 가능 여부	102
<표 III-27> 학생회 예·결산 학생 공개	103
<표 III-28>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시 성적 등에 의해 자격 제한	103
<표 III-29> 학생회실 설치 여부	104
<표 III-30> 학생회실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활용 장소	105
<표 III-31> 학교규칙 인지 여부	105
<표 III-32> 학교규칙을 알게 된 경로	106
<표 III-33>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여부	107
<표 III-34>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여부	107
<표 III-35>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부모 참여 여부	108
<표 III-36>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교사 참여 여부	108
<표 III-37>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	109
<표 III-38> 학교규칙의 준수·실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실시	110
<표 III-39> 학교규칙 관련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노력	110
<표 III-40> 동아리활동 활성화 수준	111
<표 III-41> 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 수준	112
<표 III-42> 학교에서 학급, 학년 단위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동아리 실시	112
<표 III-43>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신설 가능 여부	113
<표 III-44>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동아리활동 기록 여부	114
<표 III-45> 봉사활동 활성화 수준	114
<표 III-46> 학교의 봉사활동 지원 수준	115
<표 III-47>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기록 여부	116

<표 III-48>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116
<표 III-49> 교육과정 내 동아리반 선택 이유	117
<표 III-50> 교육과정 동아리 외 개별 동아리	117
<표 III-51> 개별 동아리 선택 동기	118
<표 III-52> 학기 중 개별 동아리활동 참여 시간	118
<표 III-53> 개별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119
<표 III-54> 학교일과 중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운영 방안	119
<표 III-55> 개인 봉사활동 실시 시기	120
<표 III-56> 개인 봉사활동 실시 방법	120
<표 III-57> 개인 봉사활동 경험이 흥미나 직업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121
<표 III-58> 동아리 봉사활동 경험이 흥미나 직업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121
<표 III-59> 보람 있는 봉사활동	122
<표 III-60> 향후 봉사활동 참여 희망 정도	122
<표 IV-1> 학교규칙 관련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및 참여 비교	128
<표 IV-2>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공동체 주체의 참여 여부	130
<표 IV-3>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	13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나라는 학교폭력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 동안 학교 현장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려운 상황에서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잇따른 자살로 인해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근본적인 접근으로 민간단체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동으로 ‘인성이 진정한 실력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워 ‘인성 교육 비전(시안)’을 발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배려, 공감, 협동심 등을 핵심가치로 하는 ‘바른 인성’을 키우는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은 민주시민교육과 그 의미가 다르지 않다. 사회적 약속을 이해하고, 그 약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것은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key competencies)’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Griffin, McGaw and Care, 2012: 301; OECD, 2005; 류성창 외, 2011). Griffin 등(2012)은 21세기에 필요로 하는 핵심역량을 ‘생각의 방식, 일하는 방식, 일하는 기술, 삶의 방식’ 등 4가지 범주로 나누고, 10가지 핵심적인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삶의 방식에 속하는 것이 ‘시민의식(citizenship)’이다. 시민의식은 오래 전부터 강조되어 왔던 교육의 목표이고,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왔지만, 21세기에 필요한 시민의식은 과거 산업화 시대의 시민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글로벌화된 시민

의식을 포함하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는 민주시민의식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민의식의 개념 규정과 함께 학교교육에서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목적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국가의 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학교교육의 결과로 개인적 수준에서 인격(人格)을 함양하고, 국가 수준에서는 국격(國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이종재 외, 2012: 27, 정범모, 2010).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도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교육의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즉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이 국가 수준에서 설정한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두고 있다.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이고, 누구나 동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교육, 소위 ‘입시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영혜 등(2011, 45-46)은 민주시민교육의 세계적 동향을 분석하고, 일곱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민주시민의 의미와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 시민(global citizen)이라는 관점을 수용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과서의 주제가 다양화되고,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실생활의 문제를 적절히 다룰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론이 활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교재 및 수업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과서

서술방식의 개선이 개선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민적 체험활동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의 풍토와 의사결정과정의 민주화를 통해 학교공동체 안에서 민주시민의 삶을 경험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일곱째, 정치적 교화의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이러한 시사점에서 살펴볼 때,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민주시민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는 부분은 바로 학교규칙의 개정과정에 참여하는 것과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학교조직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Glickman, Gordon, & Ross-Gordon, 2010: 31; 정제영, 2004: 5). 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의 통제·규제 위주의 학생지도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론 중심이 아닌 생활 속에서 체득하는 언어 예절, 타인 존중, 자기 절제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래 학교교육에 기대되는 새로운 학교문화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해 학생자치 역량 강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성교육 비전’ 계획 수립을 위한 총론 연구팀과 각론 11개 연구팀(주제: 가정과 사회, 실천적 교육과정 강화, 체육교육 활성화, 예술교육 확대, 독서교육 강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언어문화 개선, 위기학생 대책, 교원 양성·임용·연수 재구조화, 인성을 반영한 입시제도, 기업의 인재 채용)중 ‘학생자치 활성화를 통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였다.

총론팀과 연계하여 학교·가정·사회에서의 인성교육 관련 실태 및 문제점,

관련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관련 정책, 연구기관의 연구 자료 등을 분석하며 인성교육 비전 수립·선포 및 중장기적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학교문화 선진화 비전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주요 현황 및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주요 사회변화 양상 및 학교의 역할·위상 변화를 예측하며 이를 통해 학생자치 역량 강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참여 등 학교문화 선진화 비전을 제시하고, 학교문화 선진화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역할을 제안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전문가·학교 현장 교원을 대상으로 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개최 및 교과부·연구진 협의회,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가. 문헌연구

- 학생자치 역량 강화,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확대, 학생들의 자발적인 동아리활동과 봉사활동 참여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 국내·외 인성교육 및 학교문화 실태 및 연구 동향 파악
- 국내·외 인성교육 및 학교문화 관련 실태조사 분석

나. 전문가 협의회 개최

초중고 현장 교원, 학교문화 관련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비전과 방안을 검토하며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개최 및 교과부·연구진 협의회를 통해 연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다.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설문’ 조사 실시

1) 설문지 개발 과정

- 1단계 : 선행연구 검토 및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설문문항 초안을 개발하고, 교사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조사 실시
- 2단계 : 예비조사 결과와 선행연구들의 설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문지 수정본 개발
- 3단계 :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 리서치와 협의하여 온라인 설문에 적합하도록 설문 논리 구조 개발

2) 설문지 구성

- 설문지(학생용 및 교사용)는 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참여와 학생자치, 학교규칙,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등 4개 영역으로 구성

〈표 1-1〉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 관련 문항 구성

영역	문항	조사대상
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학교 설립형태 ·학교급과 학년 ·학교 유형 ·학교 소재지 ·학교 규모 ·성별 ·학생회 임원인지 여부 ·생활지도부 교사인지 여부	학생, 교사
		학생
		교사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참여와 학생자치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 희망 여부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여부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학생들의 자치활동 수준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지원 수준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 행사 개최	학생, 교사

영역	문항	조사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급회의 운영 수준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학생회 필요한 비용 학교 요청 가능 여부 ·학생회 예·결산 학생 공개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시 성적 등에 의해 자격 제한 ·학생회실 설치 여부 ·학생회실 없는 경우 학생회의 활용 장소 	
학교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규칙 인지 여부 ·학교규칙을 알게 된 경로 ·재학중인 학교규칙 제·개정 여부 ·재학중인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부모 참여 여부 ·재학중인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 의견 수렴 여부 ·학교규칙 준수·실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실시 ·학교규칙 관련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노력 ·재학중인 학교규칙 제·개정 시 교사 참여 여부 	<p>학생, 교사</p> <hr/> <p>교사</p>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리활동 활성화 수준 ·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 수준 ·학교에서 학급 학년 단위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동아리 실시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신설 가능 여부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동아리활동 기록 여부 ·봉사활동 활성화 수준 ·학교의 봉사활동 지원 수준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기록 여부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교육과정 내 동아리반 선택 이유 ·교육과정 동아리 외 개별 동아리 ·개별 동아리 선택 동기 ·학기중 개별 동아리활동 참여 시간 ·개별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학교일과 중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운영 방안 ·개인 봉사활동 실시 시기 ·개인 봉사활동 실시 방법 ·개인 봉사활동 경험이 흥미나 직업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동아리 봉사활동 경험이 흥미나 직업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보람 있는 봉사활동 ·향후 봉사활동 참여 희망 정도 	<p>학생, 교사</p> <hr/> <p>학생</p>

3) 조사대상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5,883교, 중학교 3,154교, 고등학교 2,283교 등 총 11,32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별 응답 대상은 총 9명으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다. 교사는 생활지도부장 또는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 1명과 생활지도부에 소속되지 않은 담임교사 1명이다. 학생은 전교학생회장(어린이 회장) 1명, 학급반장 또는 부반장 3명(학년별 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4, 5, 6학년만 대상임), 학생회장·반장·부반장 외 일반학생 3명(학년별 1명) 등이다.

4) 응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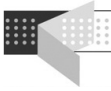
조사대상은 학생 79,240명, 교사 22,640명 등 총 101,880명인데, 그 중에서 학생 29,180명(36.8%), 교사 11,434명(50.5%) 등 총 40,614명(39.9%)이 응답하여 온라인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1-2〉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학교급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대상	101,880	79,240	22,640	52,947	41,181	11,766	28,386	22,078	6,308	20,547	15,981	4,566
응답자	40,614	29,180	11,434	19,024	13,304	5,720	12,771	9,505	3,266	8,819	6,371	2,448
응답율(%)	39.9	36.8	50.5	35.9	32.3	48.6	45.0	43.1	51.8	42.9	39.9	53.6

4. 기대효과 및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를 통해 인성교육 및 학교문화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황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중심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학교 스스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결과가 학교 현장의 자율적 변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실태분석과 활성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한된 기간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학교문화의 내용 중에서 학생참여, 학교규칙,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향후 학교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학교문화의 현실

1. 학생참여 및 교육적 지원
2. 학교규칙
3.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4. 선행연구 분석

II. 학교문화의 현실

1. 학생참여 및 교육적 지원

가. 학생자치의 개념

학생자치는 넓게 보면 교육자치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자치라는 것이 일반행정이나 중앙행정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율적으로 판단, 결정, 집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학교자치와 학생자치도 교육자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학교자치란 다른 공간이 아닌 학교라는 교육공간에서 교육을 운영함에 있어 학교 외의 타 조직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자치도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구성원의 한 집단인 학생의 의견을 자율적으로 생성하여 학교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이므로 교육자치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자치를 배제한 채 교육자치가 완벽히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학교자치의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기본법 동조 제2항에서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율성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의 한 외연이라 볼 수 있다. 자율성은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조직으로 본다면 구성원들의 의지로 학교운영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자치적 성격을 가지며 자기구속적 행위를 말한다. 결국 학교자치라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학교운영에 관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교육활동을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 목표는 일차적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학교자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학교운영의 자율화는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그 학부모들의 특성적 요구를 반영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고 학생지도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공동체성을 제고할 수 있다. 셋째,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만족도가 증대할 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게 됨으로써 학교교육의 책무성이 증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학교단위책임경영제이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도급경비제를 시행한다든가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권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자율권이 많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자치적 운영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한계들을 갖고 있다(김성기, 2005:64-65).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학생자치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교육자치는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관련해서 많이 논의, 발전되어 왔고, 학교자치는 학교자율화 정책에 의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학생자치는 많이 진전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최근에서야 학생체벌과 학생인권조례 등이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학생에 관한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했다. 학교자치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학교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에 의해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라면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과정으로서의 학생자치는 학교자치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학생자치에 대해 좀 더 심도깊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학생자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의 자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두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심의기관으로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에서는 학교운영의 자율성만을 천명하였을 뿐 그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학교자치의 절실한 필요를 느끼

지 못하면 결국 그 틀을 쉽게 바꾸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근거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성기, 2005 :65-66).

첫째, 현대사회의 다원화로 인해 교육적 공공성의 구체적 형태도 학교별로 다원화되어야 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학교운영의 자주성, 곧 학교자치는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학교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영조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공성을 보장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논리적·필연적으로 자율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성이란 사회일반에 두루 관련되거나 영향 따위를 미치는 성질을 말하는 것이다. 교육은 사회를 지탱하는 구성원을 길러내는 일로서 사회일반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적 주체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공적 주체의 객관적 판단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공공의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정책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즉 국가의 획일적 통제로 그 공공성을 실현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식을 통해 그 공공성을 실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방식의 하나가 바로 학교자치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을 공공성이라고 했을 때 그 공공성을 누가 판단하는가?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판단해 왔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사회에서는 그 이익의 실체가 사회계층과 같은 집단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합의된 공공이익이라는 것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이수 등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국가 단위에서 강제할 수 있는 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지만 그 외의 많은 학교운영의 측면은 국가단위의 단일한 규제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오히려 교육수혜자들의 교육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교육과정만 하더라도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권이 주어지게 된 것이다. 즉 교육 공공성의 실체적 내용은 이제 단위학교별로 실현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개별성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는 일종의 작은 사회로서 여러 계층의 아동들이 이합집산을 반복한다. 따라서 구성

원들이 바뀔 때 그 인적 구성의 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치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마다의 개별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그러한 지역사회의 특성을 잘 반영하기 위해서 학교자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셋째, 선택권이 제한된 제도적 상황은 교육수요자가 학교운영에 참여할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 만약 시장적 원리에 의해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한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그 학교의 운영방식에 대해 동의, 계약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직접통제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초·중등학교에서와 같이 일반적으로 학교선택권이 제한당한 상태에서는 재학기간 중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직접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논리는 결국 학부모회와 학생회의 자치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 학생자치의 법적 근거

1)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가능성

현행 교육법령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서 학생은 학교운영에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5조 (교육의 자주성 등) ②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이를 근거로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며, 그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학생의 기본적인 권이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며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은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부터 표현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기본적인 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학생회 지원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장이 학생상벌이나 생활지도, 학생자치활동, 학칙개정절차 등에 대해서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물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참여수준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학생이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장이 이 조직운영을 지원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학생은 학교운영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통로로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생략〉...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9조의4(의견 수렴 등) ②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국·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

다. 학생참여의 사례: 자치법정

1) 자치법정의 취지

학교에서 학생들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중앙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많이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학교폭력문제는 교내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라는 기구가 화해·조정 기구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그 인적 구성을 보면 학생이 아닌 성인들이다. 결국 성인들의 관점에서 처벌지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끼리 갈등의 원인을 밝히고 잘잘못을 합리적으로 따져서 처벌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는 점이다.

문용린 외(2008:56)의 연구에서도 학생자치법정의 목적은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서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사법절차를 경험해보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등 대부분의 역할을 직접 맡아서 운영하도록 한다. 이는 교원중심이었던 상벌의 결정권을 학생에게 일부 이양한 것으로 학생이 주체가 된 학생생활규정 운영이라는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이다.

2) 우수사례

가) 자치법정을 통한 학교문화 혁신(경기 도당고등학교)

도당고등학교는 학생들의 건전한 법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통한 민주적 생활 태도를 함양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하여 학생 스스로 생활·인권규정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도당자치법정’ 운영하였다.

도당자치법정은 학생 중심의 자율 기구로 법정 실무 지원팀(학생회에서 선발), 법정 실무 운영팀(판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법정질서담당관) 으로 구성하였다. 월 1회 그린마일리지 프로그램 누적 통계 20점 이상 학생을 자치법정에 회부하였다. 학생들은 배심원으로 참여하거나 또는 방청인으로 참관하면서 간접적으로나마 사법제도에 참여하는 경험을 쌓았다. 자치법정 운영 결과 2011학년도에는 전해에 비하여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되는 학생 수가 급감하였고(2010년도 54명(3.7%) → 2011년도 10명(0.7%)), 전·퇴학 학생수가 감소하였다(2010년도 41명(2.8%) → 2011년도 18명(1.3%)) 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의 비행 예방 효과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교과부, 2012).

나) 학생생활규정 교내학칙준수 서약식(경남 진해여자고등학교)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 제8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규정 제12조 ‘용의복장사항 외’, 제

45조 ‘징계 이외의 지도 방법’을 개정하고 학생들이 학칙 준수를 결의하는 교내 학칙 준수 서약식을 개최하였다(2011. 10. 10). 학칙 준수를 위한 서명 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서명지를 학생 대표 류혜수 학생이 교장선생님께 전해 드림으로써 학생들은 학칙 준수에 대한 굳은 결의를 다짐하였으며, 학칙내용은 각 교실에 항시 게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언제든지 보고 지킬 수 있게 하였다. 지난 3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6월에 학칙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새로운 학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학생회 개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9월 22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하였다.

학생 대표로 서약서를 낭독한 학생회장은 “학칙준수 서약식을 통해 우리학교 규칙에 대해 상세히 알게 되었고, 규칙을 잘 지키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준법 의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계기로 규칙과 약속을 잘 지키는 학교풍토가 조성되었으며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준법정신이 투철한 민주시민이 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로 학생생활평점제 부여 점수를 보면 BP 부여 건수/점수는 159건/595점에서 202건/781점으로 향상되었으며 RP 부여 건수/점수는 2064건/6419점에서 804건/2154점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생활규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한 결과라고 보여진다(교과부, 2012).

다) 학생자치법정(제주 표선고등학교)

바람직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학생자치법정 시연을 통해 학교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아 법정에 회부된 학생에게 학생 검사와 변호사의 열띤 토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졌다.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은 학교 생활규정을 지키지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부모님께 편지쓰기, 수업 열심히 듣고 교과 선생님께 확인 받도록 하는 판결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으

로 나타나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1, 2차 개정에서 학생으로만 구성되었던 법정이 3차 개정부터 학부모가 변호사로 참가하여 학생과 교사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소통의 마당이 되었고, 학부모 입장에서 변론이 전개됨에 따라 변론의 내용도 크게 확장되어 판결에 대한 공감을 상승시켰다. 학생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새로운 생활지도 방안으로 시행하는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 정착과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뿐만 아니라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 차후 개정에는 다양한 지역사회주민들을 변호사만 아니라 배심원으로 영입하여 법정의 폭을 넓힐 예정이다(교과부, 2012).

라) 『KOCE-상별점 마일리지-학생 자치법정』을 연계한 학생 자치 문화(경기 덕소중학교)

경기 덕소중학교는 학생의 자율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KOCE-상별점 마일리지-학생자치법정’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학급 단위로 실천하는 KOCE 프로그램(학급단위 친절, 질서, 청결, 예절 프로그램)과 개인 단위로 실천하는 상별점마일리지제, 학생자치법정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학생 자율에 의해 생활지도를 하는 것이므로 학교 내 체벌 Zero화 교육활동에 기여하고 있다. <학급 단위의 KOCE(친절, 질서, 청결, 예절) 프로그램> 이란 전교사가 참여하여 매 시간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생활 지도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급 반장과 부반장은 수업 시간 전에 교실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교과서 준비 상태 유지, 수업 전 바른 자세 유지 등 학급 기본생활습관의 파수꾼 임무를 수행한다. 생활지도교사는 매일 집계 결과를 수합하여 결과표를 학생들이 잘 볼 수 있는 복도와 교무실에 게시한다.

<개인 단위의 상별점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제는 모든 교사가 참여하여 상점 영역과 별점 영역을 구분하여 학생들의 상별점을 부여한 후 과별점자는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되고 상점이 높은 학생은 학교장 표창을 수

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상별점 누계가 21점 이상에 해당되는 학생을 담임교사에게 통보한 후 학생자치법정에 회부한다.

〈표 II-1〉 개인 단위의 상별점 마일리지 프로그램과 학생자치법정 운영제

단계	선도종류	대상자	담당 교사	지도 교육	감면점수
1 단계	훈계	10점~15점	담임교사	학생 상담 및 훈계	
2 단계	방과후 지도	16점~20점	학생부 교사	학생 상담 및 방과후 봉사 지도	0~5점
3 단계	학생 자치법정 회부	21점 이상	담임교사 학생부 교사	학생자치법정 결과에 따른 인성교육 실시	10~15점
4 단계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학생자치법정 결과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생부 교사	학생선도위원회에 회부하여 학교생활인권 규정 적용	15~20점

마) 평결 결과 실천 중심의 자치법정 운영(경기 오산원일중학교)

경기 오산 원일중학교의 학생자치법정은 자치법정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 가능한 평결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

자치법정 회부 대상자는 ‘별점이 일정 점수를 상회하는 학생, 누적된 특정 별점 항목에 대해 10회 이상 지적을 받은 학생으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는 학생, 선도위원회 회부사항 중 경미한 내용으로서 학생 선도위원회 자체 심의 과정을 통해 오산원일 법정 회부자로 판단되는 학생’이다. 법정 운영은 월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1년에 총 5회, 월요일 7교시(자치), 자치회의실을 이용하여 운영하였다.

〈표 II-2〉 오산 원일중학교 자치법정 운영 사례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일시	5월 2일(월) 7교시	7월 4일(월) 7교시	8월 29일(월) 7교시	10월 17일(월) 7교시	11월 28일(월) 7교시
대상 명단	권○○외 4명	박○○, 정○○	김○○외 2명	이○○, 박○○	김○○외 2명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장선생님과 면담 - 나의 장점 100가지 쓰기 - 나의 다짐 쓰기 - 부모님, 나, 선생님께 편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쓰는 편지 - 학교생활 대한 수필 쓰기 - 표어, 포스터 그리기 - 나의 다짐 쓰기 - 나의 장점 50가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장점 100가지 쓰기 - 2학기 동안 지정석에 앉기 - 명찰 패용 안한 학생 계도하기 - 나의 다짐 쓰기 - 나의 다짐 쓰기 - 한자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게 쓰는 편지 - 학교생활 대한 수필 쓰기 - 표어, 포스터 그리기 - 나의 다짐 쓰기 - 나의 장점 50가지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장점 100가지 쓰기 - 2학기 동안 지정석에 앉기 - 명찰 패용 안한 학생 계도하기 - 나의 다짐 쓰기 - 한자쓰기

운영 결과 학생 자치적인 징계 결정 프로그램으로서 학생들의 재비행 방지에 효과가 있었고, 판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활동으로 사법 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할 수 있고 준법정신도 향상되었다. 또한 학생자치권을 확대시켜 학교 내 갈등을 학생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교과부, 2012).

바) 학생, 학부모가 만들어 가는 학교 생활규정 제정(충남 논산중학교)

논산중학교는 학교규칙 개정을 위해 규정을 결정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일방적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교사와 학생 간 쌍방향으로 소통·공감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휴대폰 관리 방법 △용의 복장 △구체적인 훈육·훈계 방법 △선도 규정 등에 대해 학생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교사와 학생간의 공감대가 형성,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책무성을 높이는 일석 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교과부, 2012).

사) 학생자치법정 운영사례(서울 장원중학교)

학생 자치법정 운영을 단계적 계획적으로 실시한 사례로 1학기 모의자치법정 운영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2학기부터 본격적인 학생자치법정을 운영하였다. 법무부와 연계하여 법복, 재판봉을 갖추고, 학생회장단을 법교육센터교육, 가정법원 청소년 참여인단으로 활동하게 하는 등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자치법정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교생에 대한 교육자료로 활용하여 별점이 많은 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은 물론 모든 학생들의 준법정신을 고취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2012).

- 학생자치법정에서 부과한 벌(과제)
 - 학생자치법정 배심원으로 활동하기 3시간
 - 00한의원 금연클리닉 참여하기 10회
 - 담임선생님께 등교 1시간 전 문자메시지 보내기 20회
 - 부모님과 교환일기 쓰기
 - 서울지방법원 형사법정 참관하고 소감문 써오기 등등

2. 학교규칙

학교규칙 즉, 학칙은 크게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규칙(특히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 과정에 직접적인 이해관련당사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나 의견 수렴 과정이 생략되거나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규칙의 내용들이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생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

은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국내·외 학교규칙의 현황과 실제,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학생생활규정을 중심으로 학교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교규칙의 개념 및 의의

자유와 개성을 강조하는 사회변화와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생 두발에 대한 제한과 단속을 강화(조금주, 2008)하는 등 주로 학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학생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2002년 9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공고한지도 벌써 10년이 흘렀다. 그 동안 2003년부터는 생활지도의 방향을 “학생의 인권·자유·책임 중시”로 설정하고 각급 학교에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학교생활규칙을 개정 시행하도록 지도해왔다.

학교규칙, 즉 학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학교규칙의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크게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된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데 제약이 따르지만,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하지만 학칙에 대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국가청소년위원회·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 21, 2006), 우선 학칙 준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규칙이 거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해당 교칙이 존재하는지를 모른다는 반응이 많았다. 특별히 용의복장과 관련해서 눈에 띄는 교칙은 잘 지키는 편이었으나 그 외에 이성교제나 집회 및 결사 관련 규칙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법령에 나타난 학교규칙 관련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3〉 학교규칙 관련 법령

<p>초·중등 교육법 제8조</p>	<p>제8조(학교 규칙)</p> <p>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p> <p>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3.21〕</p>
<p>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9조</p>	<p>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p> <p>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9, 2011.3.18, 2012.4.20〉</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교규칙 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 등) <p>② 삭제 〈2005.1.29〉</p> <p>③ 병설학교 또는 기숙사 등을 두는 학교나 학과 또는 시간제·통신제과정을 두는 고등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8〉</p> <p>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1.3.18, 2012.4.20〉</p>

출처: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2012.8.20.현재

학칙은 학사행정이나 교수 및 학습에 관한 일반사항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준수해야 할 학교생활규정이 포함된다. 학칙의 일부로서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

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으로서 직접적으로 학생의 학교생활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실질적인 생활규범이다(문용린 외, 2008).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정해 놓은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며, 교원과 학부모들에게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관련 법령에 나타난 학교규칙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첫째, 학교규칙은 학교운영의 근간이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규칙이 중요하다.

둘째, 학교규칙은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시킨다. 학교규칙에는 학교마다의 특색있는 학생자치활동과 학생지도방법 등을 담아낼 수 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제·개정 과정에서 지도·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증대되었다.

셋째,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였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단위학교에서는 이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본적 절차와 다양한 우수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학교규칙은 학교의 이해관련당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게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제공한다(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먼저, 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준다.

첫째, 학칙은 학생들의 참여로 만들어지며, 학생들이 스스로 만든 규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때 자치규범으로서의 본질적인 가치가 실현된다. 둘째, 학칙은 학생들의 학습권리를 폭넓게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학교 내·외에서의 잘못된 행동을 제한하고 구속하는 법규적인 성격을 갖는다. 셋째, 학칙은 학생들이 자

신들의 생활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창조해 가는 학생자치활동의 원천이다.

교원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칙은 학교교육 목표를 실현하고 학생들의 자아실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운영되어야 한다. 둘째, 학칙은 학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지원하고 조력하는 교육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셋째, 학칙은 상·벌 등 학생지도에 대한 기준이 되며, 학생 및 학부모와 소통하고 공감대를 넓혀가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에게 주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칙은 학부모에게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안내서 역할을 한다. 둘째, 학칙은 학부모의 참여와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될 때 학교 공동체 규범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된다. 셋째, 학칙은 학생지도 및 인성교육에 있어서 학부모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나.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교규칙의 현황 및 실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모든 학교에는 학교규칙, 즉 학칙이 있으며 학칙은 크게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학칙의 구성은 학교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어떤 학교는 학교규칙에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을 모두 담고 있으나 다른 학교는 학교규칙의 대부분이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은 개괄적인 사항들(예: 학생자치활동, 상벌, 학교규칙 개정 등)만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의 학생생활규정에서 다루고 있다.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의 용어 사용도 통일되지 않고 다양한 용어들로 사용되고 있는데, 학교생활규정, 학교생활규칙, 학생생활규정,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학생생활협약, 학생생활규칙 등의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용어의 통일성, 일관성, 의미

의 구체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최근 학교규칙 관련 법령(특히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고, 학교규칙 운영매뉴얼이 단위학교에 보급됨에 따라 선도적인 초·중등학교에서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반영하여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사항이나 학교규칙 재개정 절차에 대한 사항들을 학칙에 반영하는 등의 재정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학교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이 장에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나와 있는 학교규칙의 기재 사항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학교규칙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학교규칙의 제·개정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활성화하려는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의 학교규칙을 비교해 봄으로써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은 학교마다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상이하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가 있으나 내용의 구성 항목은 대부분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의 내용과 항목이 많고 구체적임을 알 수 있으며, 학생생활규정은 크게 총칙, 교·내외 생활규칙, 포상 및 징계, 용모규정, 전자기기 사용 규정, 소지품 규정, 학생자치활동 규정, 규정의 제·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현황과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총칙

아래에서 보듯이, 학생생활규정의 총칙은 대부분의 학교가 차이 없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의 모든 학교가 2-3개의 조항으로 총칙을 구성하고 있었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총칙을 예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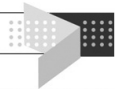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p>제1조 : 이 규정은 ‘○○초등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칭한다.</p> <p>제2조 :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인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의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p>	<p>제1조(명칭) 본 규정은 ‘○○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p> <p>제2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도록 함은 물론, 자율과 책임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2012.4.20.)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의거하여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p>

2) 교내·외 생활 규칙

교내·외 생활규칙은 총칙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으로서 교내와 교외에서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초등학교보다는 중등학교가 교내·외 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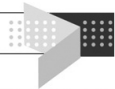
한편, 같은 학교급인 고등학교 내에서도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학교별로 교내·외 생활과 관련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많은 조항을 만들어 놓은 학교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간단한 조항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학교도 있었다.

제8장 교내·외 생활	제1절 교내생활 규칙
<p>제55조 : 학교의 정규 집회 이외의 모든 집회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4조(기본품행) 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남을 존중하며,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② 특히 타인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p> <p>제5조(외출) 등교한 후 외출할 때에는 교사의 허락을 받아 외</p>



<p>제56조 : 교외의 생활에 있어서는 안전에 유의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늦게 거리를 배회하지 않는다.</p> <p>제57조 : 학생은 흥행장, 주점, 오락실, 극장 등 출입을 금하는 장소의 출입을 금한다.</p> <p>제58조 : 학생 등교일 이외의 휴가 또는 휴일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소집을 할 수 있다.</p>	<p>출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외출할 때는 등교 시 복장(운동화 포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p> <p>제6조(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과 교구 등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한다.</p> <p>②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p> <p>제7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특히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p> <p>제8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와 우정을 쌓는다.</p> <p>제9조(폭력예방 및 조치)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p> <p>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하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으로 할 수 있다.</p> <p>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p> <p>④ 학교폭력 가·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p> <p>제10조(이성교제 및 제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p> <p>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p> <p>②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해서는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p> <p>③ 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고, 건전한 이성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p> <p>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p> <p>⑤ 불건전한 이성교제는 ‘학생선도 규정’ 제12조(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 처분할 수 있다.</p> <p>제2절 교외생활 규칙</p> <p>제11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p>
--	--

	<p>준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계발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하급 학생을 만나면 서로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장애우)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하거나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 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청소년유해업소(오락실,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 도박장 등) 출입 및 불법취업을 금한다. <p>제12조(사이버 예절)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p>제13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사안이 발생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학생(자녀)의 평소와 다른 이상 행동 ④ 기타 사안이 발생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



3) 학생 포상 및 징계

학생 포상 및 징계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표창이나 포상과 관련된 조항은 한두 조항으로 매우 간단한 반면, 징계와 관련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4〉 학생 포상 및 징계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예시1

사례: 부산 00중학교 201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p>제9장 학생 포상 및 징계</p> <p>제34조(표창) 학교장은 전 교육활동을 통하여 각 교과별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 및 효행이 두드러진 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포상할 수 있다.</p> <p>제35조(징계)</p> <p>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 학교에서는 불가능) <p>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징계를 할 때에는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p> <p>③ 학생 지도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p>

〈표 II-5〉 학생 포상 및 징계와 관련된 학생생활규정 예시2

사례: 경남 00고등학교 2012학년도 학생생활규정
<p>제4장 표창 및 징계</p> <p>제18조(표창) 표창의 종류와 기준은 진급 및 졸업사정 규정에 따른다.</p> <p>제19조(징계)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질서를 혼란케 하여 참신한 교풍 수립을 방해한 자는 징계한다.</p> <p>제20조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p>

- ① 학교 내의 봉사 : 3일 이상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배움터킴이, 학생부교사 및 상담부교사의 지도를 받아 교내봉사 조끼를 입고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 ② 사회봉사 : 5일 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행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위탁 교육을 한다.
- ④ 출석정지 : 가정학습, 인성교육, 상담, 심리치료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등교 시 제출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시에는 20조 2항, 3항의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를 병행하며,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 교육을 한다.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음.
- ⑤ 퇴학처분 :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38조 4항의 ‘출석정지’를 학교장이 명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⑥ 제 20조 제1항, 제2항, 제3항의 징계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제21조(학교 내의 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 내의 봉사』에 처할 수 있다.

-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과가 10회 이상 및 무단결석이 10일이상인 학생
- ②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③ 고사 중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방조한 학생
- ④ 2차 흡연이 적발된 학생
- ⑤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⑥ 공과금을 유용한 학생
- ⑦ 불량서적을 탐독한 학생
- ⑧ 불량비디오를 시청한 학생
- ⑨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⑩ 용의 복장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학생
- ⑪ 일과 중 교내를 무단이탈한 학생
- ⑫ 학습태도가 심히 불량하거나 면학분위기를 상습적으로 저해하는 학생
- ⑬ 건전한 이성교제의 범주를 벗어나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⑭ 타인의 물건을 몰래 훔친 학생
- ⑮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22조 (사회봉사)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사회봉사』에 처할 수 있다.

- ① 제21조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②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을 거부 또는 방해한 학생
- ③ 시험을 거부한 학생
- ④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 ⑤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싸움을 하는 학생
- ⑥ 흥기를 소지한 학생
- ⑦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⑧ 불법집회, 또는 불량 서클에 가입하거나 참석한 학생
- ⑨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⑩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⑪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과가 15회 이상 및 무단결석이 15일이상인 학생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3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에 처할 수 있다.

- ① 제22조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②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③ 금품을 갈취, 사취한 학생
- ④ 흥기로 타인을 위협한 학생
- ⑤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⑥ 불온문서를 은닉, 탐독, 제작, 게시 또는 유포한 학생
- ⑦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⑧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⑨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학생
- ⑩ 불법과외 금지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 ⑪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과가 30회 이상 및 무단결석이 30일이상인 학생
- ⑫ 3차 흡연하고 적발된 학생
- ⑬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24조(출석정지처분)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은 『출석정지』에 처할 수 있다.

- ① 제 23조 각 항의 위반으로 특별교육 이수처분을 받고도 재차 위반한 학생
- ②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과가 45회 이상 및 무단결석 45일 이상을 한 학생
- ③ 폭력을 행사하여 4주 이상의 진단을 요하는 상해를 입힌 학생
- ④ 4차 흡연하고 적발 당한 학생
- ⑤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5조(퇴학처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 ① 제24조의 각 항을 재차 위반한 학생
- ②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③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④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⑤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⑥ 흥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 ⑦ 집단폭행을 모의, 선동 가담한 학생

- ⑧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⑨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자
- ⑩ 5차 흡연하고 적발된 학생
- ⑪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26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시간, 봉사활동일수(시간), 기관 및 이수시간 등은 인성교육부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① 학교 내의 봉사 : 등교하여 교사의 지시를 받아 학교 내의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매일 반성문을 제출한다.
 - ㉠ 학교환경 미화작업
 - ㉡ 교원의 업무보조
 - ㉢ 교재, 교구정비
 -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일
- ② 사회봉사 : 사회봉사를 할 경우에는 봉사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시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철도안내, 공원 관리 등)
 - ㉢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등)
 - ㉣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봉사
- ③ 특별교육이수 : 다음 각 호의 교육이수 중에서 선도위원회가 지정한다.
 - ㉠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 중독 치료 학교(기관)의 교육이수
 - ㉢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이수
 - ㉣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이수
 - ㉤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이수
 - ㉥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이수

④ 퇴학처분

퇴학처분과 동시 사회교육기관, 산업체특별학급, 직업교육훈련기관, 대안학교 등으로 진로를 전환하거나 학생의 희망에 따라 진로를 변경할 수가 있다. 단, 학교장은 학생을 퇴학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사고결석으로 처리함)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심의절차)

- ① 학교 내 봉사는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교선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② 사회봉사이상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인성교육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도위원회 심의 사항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28조(징계 내용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토록 요청한다(훈계 제외).

제29조(징계학생 행사 참여 및 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소풍, 여행 등),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0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만료전이라도 개선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결과처리) 학생선도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32조(징계재심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처분 중 ‘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퇴학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남도 학교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경상남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퇴학처분(전학) 재심 청구서’(서식1)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청구 하여야 한다.

4) 두발·복장 등 용모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에서 두발·복장 등 용모와 관련된 규정이 가지는 의의는 두발과 복장 등 용모는 학생생활지도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며, 건전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교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모와 관련된 규정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징계와 함께 학생생활규정에서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학교가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기본적이고 다소 추상적인 사항들을 기재해 놓은 학교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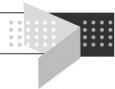
용모와 관련된 규정에서 구체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두발이나 복장과 같은 용모가 학생들의 개성과 정체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므로, 일률적이고 강제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을 정하고, 정해진 규정에 따라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용모나 두발의 규제는 강도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외모규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학생들로 하여금 외모규제를 준수하게 하는데 더욱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이정현 외, 2012) 결과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제3장 용의 및 복장	제3장 두발·복장 등 용모 규정
<p>제10조 학생들의 건전한 의생활 정착을 통해 검소하고 단정한 생활 기풍이 조성되도록 지도한다.</p> <p>제11조 학생은 항상 학생의 신분과 품위에 맞는 단정한 머리, 검소하고 실용적이며 활동하기에 좋은 학생다운 옷차림을 하여야 한다.</p> <p>제12조 용의 복장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색깔, 형태는 본교 규정에 정한 교복을 착용한다.</p> <p>① 손모직 등 사치성 의류로 제작된 교복의 착용을 지양한다.</p> <p>② 교복 착용 시 속내의가 겉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p> <p>③ 흑한기는 동복 상의 속에 검정, 진한 감청색, 진회색의 목티를 입을 수 있다.</p> <p>④ 외투의 색은 검정, 진한 감청색, 진회색 계통으로 하고, 여학생은 길이를 교복치마 길이 정도로 하며 추울 시 교복 자켓 위에 입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⑤ 교복 정위치에 명찰을 패찰한다.</p> <p>⑥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하거나 시내를 배회할 수 없다.</p> <p>⑦ 교복의 형태 및 색깔은 교복사에서</p>	<p>제1절 두발 및 용모 규정</p> <p>제14조(목적) 본 규정은 학생으로서 두발·복장과 용모를 단정하게 하여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건전한 학교생활 기풍을 조성하여 자율적인 시민 의식과 능동적 사고를 고취시켜서 표선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5조(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2012.4.20.)에 의거하여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p> <p>제16조 (두발 및 용모 등) 두발은 학생의 신분에 맞게 단정하고, 용의는 청결하여야 하며, 그에 맞는 두발 및 용모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① 남학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두발형태는 앞머리는 눈썹을 덮지 않을 정도로 하고, 뒷머리는 상의 교복 깃에 머리가 닿지 않도록 하며, 옆머리는 정면에서 보았을 때 귀가 전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2. 머리중앙(정수리부분) 부위, 뒷머리, 옆머리를 규정에 벗어나게 변형을 해서는 안 된다. 3. 옆머리는 뒷머리와 균형을 맞추어 짧게 유지한다. 4. 인위적으로 머리모양이나 특성을 전부 또는 일부의 변형(기름, 스프레이, 염색, 파마, 무스, 젤, 고대, 삭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머리색깔은 자연색을 유지한다.

<p>나온 수선하지 않은 교복을 원칙으로 한다.</p> <p>⑧ 치마의 길이는 치마를 입고 정자세로 섰을 때 무릎 제일 위쪽을 기준으로 위로 5c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치마의 폭도 과도하게 줄이지 않는다.</p> <p>⑨ 남자 교복 바지는 걷어 올렸을 시 종아리를 통과해야 한다.</p> <p>⑩ 규정을 어긴 교복을 3회 이상 입어 적발되었을 시에는 압수하여 별도 보관한다.</p> <p>제13조 두발은 학생다운 단정한 모양을 갖추어야 한다.</p> <p>① 두발은 학생다운 청결한 모양으로 갖추어야 한다.</p> <p>② 남학생은 앞머리가 눈썹을 덮지 않아야 하고, 옆머리가 귀를 1/3이상 덮거나 뒷머리가 옷깃에 닿아서는 안된다.</p> <p>③ 여학생 머리는 어깨선 정도로 한다.</p> <p>④ 남, 여 모든 학생은 삭발, 파마, 염색(검은 색깔 이외), 탈색, 향수사용, 색조화장 및 눈썹화장, 무스, 기름 등을 바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p> <p>⑤ 손톱의 길이가 혈오감을 주어서는 안 되며, 매니큐어를 바르는 것을 금한다.</p> <p>제14조 가방은 학생용 가방 및 보조가방을 휴대하도록 한다.</p> <p>제15조 신발은 학생의 신분에 맞는 소박한 운동화, 단화를 착용하여야 한다.</p> <p>① 여학생 단화는 원색이 아닌 것으로, 굽 높이는 4cm 이하여야 하며, 앞이 올라거나 뾰족한 것, 각지거나 금</p>	<p>5. 귀걸이 및 악세사리 등의 착용은 허용하지 않는다.</p> <p>6. 써클렌즈, 눈썹깎기, 인조눈썹, 그리고 색조화장(립스틱, 비비크림 포함)은 하지 않으며, 손톱 매니큐어는 금지한다.</p> <p>② 여학생</p> <p>1. 두발 길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단, 머리가 목의 길이를 넘을 때는 묶도록 한다.)</p> <p>2. 머리핀, 머리밴드 등의 착용은 허용하되 학생 신분에 맞는 단정한 것으로 제한한다.</p> <p>3. 신체의 일부에 피어싱을 일체 허용하지 않으며, 귀걸이 및 악세사리 등의 착용도 허용하지 않는다.</p> <p>4. 인위적으로 머리모양이나 특성을 전부 또는 일부의 변형(기름, 스프레이, 염색, 파마, 무스, 젤, 고대, 삭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머리 색깔은 자연색을 유지한다.</p> <p>5. 써클렌즈, 눈썹깎기, 인조눈썹, 그리고 색조화장(립스틱, 비비크림 포함)은 하지 않으며, 손톱 매니큐어는 금지한다.</p> <p>제2절 복장 및 교복 규정</p> <p>제17조(교복 규정 및 교복 착용) 본교 교복 착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① 남학생 교복 규정</p>
---	---

<p>속장식이 붙은 것은 금한다.</p> <p>② 사치성 구두, 슬리퍼, 군화, 고무신, 장화류(부츠) 등의 착용은 금한다.</p> <p>③ 양말은 원색이 아닌 것으로 하며, 여학생의 경우 스타킹은 무늬가 없는 살색 및 검정색을 한다.</p> <p>제16조 화장품, 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기타 학생 신분엔 맞지 않는 장신구는 금한다.</p> <p>제17조 불량서적 및 음반, 출판물, 기타 유해물품을 휴대하지 않는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남학생</th> </tr> </thead> <tbody> <tr> <td>동복</td> <td>1) 상의 : 상의 자켓, 흰색 와이셔츠, 곤색 타이(지정교복) 2) 하의 : 상의와 같은 색상의 바지 3) 단추 : 학교 마크가 표시된 깡통형 지정 단추</td> </tr> <tr> <td>하복</td> <td>1) 상의 : 지정 교복, 반팔 흰색 와이셔츠, 카라 있는 흰색 남방이나 티 2) 하의 : 지정교복 ※ 반드시 하얀 속옷(상의)을 갖추어 입는다.</td> </tr> <tr> <td>춘추복</td> <td>1) 상의: 긴팔 흰색 와이셔츠 및 넥타이 2) 하의: 동복 바지</td> </tr> </tbody> </table>	구분	남학생	동복	1) 상의 : 상의 자켓, 흰색 와이셔츠, 곤색 타이(지정교복) 2) 하의 : 상의와 같은 색상의 바지 3) 단추 : 학교 마크가 표시된 깡통형 지정 단추	하복	1) 상의 : 지정 교복, 반팔 흰색 와이셔츠, 카라 있는 흰색 남방이나 티 2) 하의 : 지정교복 ※ 반드시 하얀 속옷(상의)을 갖추어 입는다.	춘추복	1) 상의: 긴팔 흰색 와이셔츠 및 넥타이 2) 하의: 동복 바지
	구분	남학생							
	동복	1) 상의 : 상의 자켓, 흰색 와이셔츠, 곤색 타이(지정교복) 2) 하의 : 상의와 같은 색상의 바지 3) 단추 : 학교 마크가 표시된 깡통형 지정 단추							
	하복	1) 상의 : 지정 교복, 반팔 흰색 와이셔츠, 카라 있는 흰색 남방이나 티 2) 하의 : 지정교복 ※ 반드시 하얀 속옷(상의)을 갖추어 입는다.							
춘추복	1) 상의: 긴팔 흰색 와이셔츠 및 넥타이 2) 하의: 동복 바지								
<p>② 여학생 교복 규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여학생</th> </tr> </thead> <tbody> <tr> <td>동복</td> <td>1) 상의: 상의 자켓, 조끼, 흰색 브라우스, 곤색 타이 2) 조끼: 하의와 같은 색상 3) 하의: 지정된 치마 4) 단추: 학교 마크가 표시된 깡통형 지정 단추</td> </tr> <tr> <td>하복</td> <td>1) 상의: 지정 교복, 반팔 흰색 와이셔츠, 카라 있는 흰색 남방이나 티 2) 하의: 지정교복 ※ 반드시 하얀 속옷(상의)을 갖추어 입는다</td> </tr> <tr> <td>춘추복</td> <td>1) 상의: 긴소매의 흰색 블라우스와 조끼, 넥타이 2) 조끼: 동복과 동일 3) 하의: 지정된 치마</td> </tr> </tbody> </table>	구분	여학생	동복	1) 상의: 상의 자켓, 조끼, 흰색 브라우스, 곤색 타이 2) 조끼: 하의와 같은 색상 3) 하의: 지정된 치마 4) 단추: 학교 마크가 표시된 깡통형 지정 단추	하복	1) 상의: 지정 교복, 반팔 흰색 와이셔츠, 카라 있는 흰색 남방이나 티 2) 하의: 지정교복 ※ 반드시 하얀 속옷(상의)을 갖추어 입는다	춘추복	1) 상의: 긴소매의 흰색 블라우스와 조끼, 넥타이 2) 조끼: 동복과 동일 3) 하의: 지정된 치마	
구분	여학생								
동복	1) 상의: 상의 자켓, 조끼, 흰색 브라우스, 곤색 타이 2) 조끼: 하의와 같은 색상 3) 하의: 지정된 치마 4) 단추: 학교 마크가 표시된 깡통형 지정 단추								
하복	1) 상의: 지정 교복, 반팔 흰색 와이셔츠, 카라 있는 흰색 남방이나 티 2) 하의: 지정교복 ※ 반드시 하얀 속옷(상의)을 갖추어 입는다								
춘추복	1) 상의: 긴소매의 흰색 블라우스와 조끼, 넥타이 2) 조끼: 동복과 동일 3) 하의: 지정된 치마								
<p>③ 교복 착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 등교 시는 규정된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에서 허가하는 날에 한하여 사복을 착용할 수 있다. 2. 교복은 계절 변화에 따라 지정된 동복, 춘추복, 하복을 적절히 착용하고, 남학생의 하의 길이는 땅에 닿지 않도록 하며, 여학생의 치마 길이는 무릎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3. 제2조 교복 착용 규정에 벗어나게 교복을 변 									



	<p>형하여 입어서는 안 된다.</p> <p>4. 단, 학생의 신체적인 결함 등의 사유로 인해 사전에 학교장이 허락할 경우 기타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p> <p>④ 교복착용기간</p> <p>1. 동복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착용한다.</p> <p>2. 하복은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착용한다.</p> <p>3. 춘추복은 외투를 벗은 상태이고 봄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가을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착용한다.</p> <p>4. 단, 일기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p> <p>제18조(신발 및 양말) 신발 및 양말 착용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① 신발은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운동화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p> <p>② 양말은 여학생은 하절기에는 짧은 양말, 동절기에는 검정 또는 회색 계열의 스타킹을 착용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 원색의 양말 착용을 금한다.</p> <p>제19조 (교복 및 체육복 명찰) 본교 교복 및 체육복 명찰 규정은 다음과 같다.</p> <p>① 명찰은 학년별로 규정된 것을 교복 상의 왼쪽 호주머니 위에 패용하여야 한다.</p> <p>1. 명찰 위치 : 동복, 춘추복, 하복은 교복 상의 왼쪽 호주머니 위에 패용한다.</p> <p>2. 명찰의 규격 : 가로 6cm, 세로 2cm</p> <p>3. 명찰 재질 : 아크릴</p> <p>4. 명찰 색깔 : 3학년 흰색, 2학년 청색, 1학년 흰색으로 학년 색깔은 자동적으로 순환된다.</p> <p>② 체육복은 분실방지를 위해 학년 반 이름을 박음질한다.</p> <p>1. 박음질 위치 : 체육복 상의는 상의 아래 앞쪽에, 하의는 왼쪽 호주머니 상단에 박음질한다.</p>
--	--

	<p>2. 명찰의 글씨 색깔 : 노란색 글씨로 전교생이 같이 사용한다.</p> <p>제20조(외투) 교복착용을 한 상태에서 외투 착용은 허용할 수 있다. (단, 짙은 원색과 문자나 그림이 새겨진 것은 금한다.)</p> <p>제21조(책가방) 학생용 책가방으로 등에 멜 수 있는 형태의 학생신분에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	---

5) 소지품 검사

소지품 검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면, 무기류나 음란물 등과 같이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함으로써 건전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있다. 또한 소지품 검사는 청소년 시기에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나 약물류 등과 같은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소지품 검사는 학생인권 침해 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소지품 검사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학급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기 보다는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거나 특별한 사유 또는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만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지품 검사가 필요하거나 가능한 상황을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5장 소지품 검사 규정

제27조(목적)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 및 사용을 지도·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2012.4.20.)에 의거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소지품 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9조(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상황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금한다.

- ① 청소년 시기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담배 및 약물류 등의 유해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경우
- ② 무기류, 음란물 등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의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 ③ 기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포착된 경우
 1. 학생이 흡연한 상황을 보았거나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흡연한 사실을 부인할 때
 2. 학생이 술(또는 주류)과 같은 것을 소지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거나 음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보여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3. 약물복용으로 인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로 보이거나 약물 복용 상황을 보았다는 제보가 있을 때
 4. CCTV 또는 제보에 의해 절도 혐의의 가능성이 충분하나 그 사실을 부인할 때
 5. 기타 일탈행동 원인이 될 만한 물건 등의 학교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충분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제보가 접수되었을 때

제30조(소지품 검사 절차) 소지품 검사는 제29조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① 소지품의 검사는 담임교사, 생활지도관련 담당교사(학생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등) 또는 구체적인 정황을 목격한 교사가 실시한다.
- ②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장 또는 교감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31조(유해물품 소지자의 처벌)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거나 유해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상·벌점제 또는 학생선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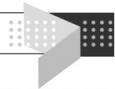
6)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학생들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전자기기의 사용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교내에서 원칙적으로 휴대전화기 사용은 물론 휴대조차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 보호자 명의의 소지신청서를 담임에게 제출한 후 휴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휴대전화기 사용이 전 국민적으로 보편화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규정은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보이며, 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히려 학교 일과 중(특히 수업 중)에는 반드시 끄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벌점과 같은 징계 조항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진다. 휴대전화 사용규정 등은 학생들 스스로 휴대규정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휴대전화 사용규정	제4장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규정
<p>I. 목 적 학생들의 무절제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날로 심화 되는 바 교육적인 측면에서 무절제한 사용을 규제하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p> <p>II. 방 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휴대전화를 학교 일과 중에는 절대 휴대할 수 없으며 매일 등교 후 휴대전화를 담임교사에게 보관하고 학교 시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할 학생은 반드시 보호자 명의의 소지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3. 담임교사는 소지 신청서를 심사 후 소지허락 여부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4. 본 규정을 위반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는 수거하여 학년부에서 10일간 보관하며, 	<p>제22조(목적) 본 규정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학교 내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p> <p>제23조(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2012.4.20.)에 의거하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p> <p>제24조(사용 제한)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내에서는 휴대폰 및 전자기기(스마트폰, 게임기 등)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불가피하게 사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학생이 가지고 온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핸드폰 및 전자기기(스마트폰, 게임기, 오락기, MP3, 전자사전, 기타 전자기기라고 볼 수 있는 기기 등)를 가지고 왔을 경우



선도규정에 의거 벌점(5점)이 부여된다.
(※ MP3 등 수업에 지장을 주는 매체도 본 규정에 해당된다)

● 횡수별 벌점 및 보관 일시 ●

적발 횡수	벌 점	보관일시	비고
1	3점	3일(적발일부터 적용)	담임교사 관리(본인수령)
2	5점	10일(적발일부터 적용)	담임교사 관리(본인수령)
3	10점	30일(적발일부터 적용)	학부모 통보
4회 이상	15점	1학기(적발일부터 학기말까지)	학부모 통보

III. 세부추진사항

1. 교내의 공중전화 및 수신자요금부담 전화를 정비하여 항시 사용가능한 상태로 유지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통화할 사정이 발생했을 때는 담당교사에게 양해를 얻고 통화한 후 다시 보관한다.
3. 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4.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들의 동참을 유도한다.
5. 각 학년별 교무실에 휴대전화 수거용 통을 보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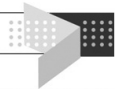
등교 즉시 담임선생님에게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관리 가방을 이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단, MP3, 전자사전은 학습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 ③ 학교생활 중 휴대전화(스마트폰 또는 핸드폰 등) 및 전자기기를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벨이나 진동으로 인한 방해가 발생할 때는 압류하여 일정기간 보관 후 인계한다.
- ④ 정기고사(중간, 기말고사) 및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주관·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할 때 휴대폰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사전, 게임기 등)를 소지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하며 평가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제25조(학교 정보화기기 사용제한) ① 학교 내 정보화기기는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하며, 소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 ② 학교 내 정보화기기를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훼손 및 파손 등의 위반을 하였을 경우와 정보화기기를 훔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6조(위반자의 처벌) 본 규정을 어기거나 교사지도에 불응하는 경우는 상·벌점제 또는 학생선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과 더불어 민주시민의식을 키우는데 매우 중요하다. 다만,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

<p>제 10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p> <p>제36조(학급회) 학생 자치 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한 기초로서 학급마다 학급회를 조직·운영한다. 학급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정한다.</p> <p>제37조(학생회) 학급회의 기초 위에서 전교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 학생회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둔다.</p> <p>제38조(기타 학생 자치 활동) 학급회·학생회 외의 학생 자치 활동은 적극 권장·보호되어야 한다. 다만, 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본교의 교육목적 및 학생자치활동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지도한다.</p>	<p>제7장 학생자치활동</p> <p>제27조(학생자치활동)</p> <p>①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학생회를 조직·운영한다.</p> <p>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장려·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p>
---	--

8) 학교규칙 개정 절차

학교규칙은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신뢰로운 과정을 거쳐 제·개정 되어야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규칙의 개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당하고 객관적이며 신뢰로운 과정이란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규제와 처벌보다는 제·개정 및 운영과정에 학생, 학부모, 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율과 책임 중심의 규칙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학교규칙을 준수하는 학교문화를 만들 수 있으며 교사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규칙 : 제11장 학교규칙의 개정

제35조(학교규칙 개정)

- ① 학칙의 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며,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 ② 학칙개정에 필요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③ 제27조(학생자치활동), 제30조(포상), 제31조(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등 학생 생활에 관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다. 단,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절차는 따로 정한다.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 제6장 규정의 개정 및 기타 규정

제32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을 개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생생활에 따른 학칙제·개정 절차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

제33조(기타 규정) 본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다. 외국의 학교규칙

학생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오래전부터 있어 온 선진 외국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보면 예상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교규칙에 비해 매우 상세하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 침해적 요소가 나타나기도 함을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이나 규제로 인해 상호간 논란을 일으키기 보다는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더라도 최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을 제시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개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여기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선진 외국의 학교규칙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학생생활규정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의 학교규칙은 州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일반적인 학교규칙, 운동장에서의 학교규칙, 점심시간의 학교규칙, 규칙 위반에 대한 처리 과정, 복장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조금주, 2008). 일반적인 학교규칙으로는 손과 발을 가지런히 하고 물건은 제자리에 둔다.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 항상 올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어른들께 경의를 표하며, 권위를 가진 분들께 순종한다. 학교의 물건이나 개인 소지품을 소중히 여긴다. 학생들은 본인의 건강이나 학업에 필요한 물건 외에는 다른 물건을 가져오면 안된다. 약물이나 무기, 그 밖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물건을 학교에 가져오면 안된다 등이 있다. 운동장에서의 학교규칙으로는 운동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해야 한다. 장난감이나 음식물을 운동장으로 갖고 들어가지 않는다. 야구공, 야구 방망이, 미식축구 용품들은 지정된 체육시간에 담당 교사의 지도 아래서만 사용할 수 있다 등이 있으며, 점심시간의 규칙으로는 조용히 해야 하고 해당 학급의 지정된 자리로 가서, 조용히 이야기하며, 자신의 음식만을 먹는다.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는다 등이 있다. 한편 복장규칙으로는 모자나 야구모자, 또는 밴드나 머리에 쓰는 스카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폭력이나 성 행위, 흡연이나 약물 복용, 음주를 장려하는 말이나 그림이 있는 옷이나 장신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너무 짧거나 속이 보이는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복부가 드러나거나 끈 티셔츠는 허용되지 않는다. 너무 크거나 발가락이 나오는 신발은 허용되지 않는다. 킹즈(Kings), 레이더스(Raiders), 시카고 불스(Chicago Bulls) 등의 운동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버클 선을 넘는 긴 벨트는 허용되지 않는다. 버클에 글자가 새겨진 벨트 또한 허용되지 않는다. 단이 마무리 되지 않은 옷은 허용되지 않는다 등이 있다.

Washington D.C. 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을 살펴보면 학교등록, 전학, 거주자 증명, 기거주자 등록금, 출·결석, 지각, 태만, 학교의 일시적 폐쇄, 면역증명, 건강, 유니폼, 학생(성적)보고, 학교생활 문제해결, 학생을 위한 서비스, 교통,

학교 시설물 이용 등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의 학교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출석 의무에 관한 규정, 결석 및 무단결석에 관한 규정, 건강에 관한 규정, 교복에 관한 규정, 학생지원 서비스에 관한 규정, 교통서비스에 관한 규정, 학교시설물 이용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문용린 외, 2008). Washington D.C. 교육청의 학생생활규정의 특징은 학생의 출·결석을 아주 중요한 규정 내용¹⁾으로 다루고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중도탈락률이 높은 미국의 학교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뉴욕시 교육청은 2008년 9월에 규율규정과 학생권리 및 책임 규정을 발표하고 뉴욕시 공립학교에 배포하였는데,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장은 재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품행 서약서를 배포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관한 책임과 권리를 숙지하고 품행규정을 준수할 것으로 서약한 후 학교에 반송하도록 요청하였다(문용린 외, 2008). 뉴욕시 교육청에서 배포한 규율규정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 및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 둘째, 생활규정이나 학칙 위반 시 학교는 학생의 행동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학생의 문제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중재조치를 함께 제시하도록 한다는 점, 셋째, 학교공동체 구성원이 동등하고 평등하며 공평하게 대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강조하고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 괴롭힘에 대해서도 관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학교의 학교규칙 내용 역시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규제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규칙의 내용과

1) 출석을 매우 강조하며 학교와 학부모의 인지와 동의를 전제로 결석을 인정해 준다. 자녀가 결석할 경우에는 부모들은 24시간 내에 이러한 사실을 통지받으며, 수업시간에 거리를 배회하는 학생들은 경찰이 바로 학교출석처치센터에 보내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다.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어른들께 경의를 표하며 권위를 가진 분들에게 순종한다는 표현까지 들어 있어 우리나라의 학교생활규칙에는 없는 보수적인 사항들까지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학교규칙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서울시교육청, 2007).

첫째, 주의 법으로 중요 사항을 규정하고, 생활지도규정은 그것을 모태로 하여 제정된다.

둘째, 학생 생활 지도를 교사의 문제로 보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셋째,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분명하게 서술한다.

넷째, 사소한 문제부터 중요한 문제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다섯째, 학생이 일으키는 생활 지도상의 문제에서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하며, 그 해결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를 중시한다.

여섯째, 징계 받는 학생의 사후관리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일곱째, 무단결석은 거의 범죄 수준으로 취급하여 엄격하게 관리한다.

여덟째, 교사는 수업에 전념하게 하고, 생활 지도나 출결을 담당하는 사무실과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행정적으로 처리한다.

2) 일본

우리나라보다 더 오랜 교복 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에게 식민지 영향을 준 일본의 학교규칙을 살펴보면, 군국주의적 영향으로 학교에서 짧은 머리가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1960년대부터 경제발전으로 점차 서구화되면서 두발형태가 완화되었다가 197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복장과 두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이후 1990년대 들어와서 다시 공·사립학교에서 두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교는 여전히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조금주, 2008).

〈표 II-6〉 일본 오키나와 현립 야에야마 상업고등학교의 교복 및 옷차림 규정

(취지) 제1조 : 이 규정은 학생의 교복 및 옷차림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 학생은 원칙으로 교내에서는 교복 혹은 학교 지정의 실습복, 체육복을 착용한다.
 또 등학교 중에는 교복을 착용한다.

(교복의 종류) 제3조 : 학생의 교복은 다음과 같다. 남학생은 하복 상의 무색의 와이셔츠, 하의 검정바지(학생복용), 동복은 상, 하 검정의 학생복을 착용한다. 여학생은 하복 상의 흰색의 반소매 블라우스에 학교 지정 넥타이, 하의 무색의 짙은 감색 스커트를 입는다. 춘추복은 상의 흰색의 긴소매 블라우스에 학교 지정 넥타이, 하의는 하복과 같다. 동복은 상의 흰색의 블라우스 위에 학교 지정 자켓과 학교 지정 넥타이, 하의는 하복과 같다. 자켓 길이는 웨스트 밑 10-20cm이며, 자켓 단추는 뒤에 구멍이 있는 단추로 하고, 스커트 길이는 극단적으로 짧거나 긴 것은 금지하며, 무릎길이 위아래 5cm로 제한한다. 블라우스 옷깃은 솔카라 혹은 셔츠 칼라로 한다. 넥타이는 폭 3cm로 마크가 있는 것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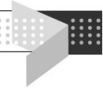
(교복의 착용기간) 제4조 : 교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조정기간을 두는 것이 가능하다. 조정기간은 학생지도부가 제안하고 직원회의의 승낙을 얻어 결정한다. 하복 혹은 여자 춘추복은 4월 1일 - 10월 31일, 동복은 11월 1일 - 3월 31일로 한다.

(두발의 제한) 제5조 : 학생의 파마, 염색, 그 외 이상한 머리 모양을 금지한다.

(화장 혹은 장신구 금지) 제6조 : 학생의 화장 및 장신구(귀걸이, 목걸이 등)는 금지한다.

출처: 조금주(2008).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은 두발에 대한 규정이 우리나라보다 다소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파마, 염색 등의 머리 모양만 금지하고 있고 두발의 길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그 외 교복이나 화장 등에 관한 규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3.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가.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의 개념

1) 동아리활동의 개념

교육과학기술부는 동아리를 “동아리는 특기, 적성, 취미, 소질 등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진 학생들의 모임으로서 자발적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하는 자치활동”(학생자치활동 길잡이, 2011)으로 정의하였다.

2009 개정교육과정 이전까지는 동아리는 교내에서 특별활동 시간 이외의 별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활동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동아리활동에 한정된 의미였다. 그러나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4개 영역으로 고시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아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의 한 부분으로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면서 동아리활동이 정규교육과정으로 포함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아리활동을 정규 교육과정의 하나로 중요시하게 된 것은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흥미, 소질, 취미, 적성, 특기가 비슷한 학생들로 구성된 활동부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창의성과 협동심을 기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능력을 창의적으로 계발·신장하고 자아실현의 기초를 닦게 하며 여가를 선용하는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지역 내 학교 간 각종 동아리 경연대회를 통해 우의를 다지는 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실행되고 동아리활동은 첫째,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운영되는 동아리활동과 둘째, 정규교육과정의 동아리활동을 교육과정 외의 시간까지 연장하여 활동하는 ‘상설동아리’ 셋째, 정규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없이 학생 자율로 조직·운영되고 있는 자율 상설동아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정규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정부는 2009년 12월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9-41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및 학교 급별 편제에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설”하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간배당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배당기준

- 초등학교 1~2학년 : 272시간
- 초등학교 3~4학년 : 204시간
- 초등학교 5~6학년 : 204시간
- 중학교 1~3학년 : 306시간
- 고등학교 1~3학년 : 24단위(408시간)

즉, 초등학생의 경우는 1, 2학년에는 주당 4시간으로 편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초등학교 3학년~중학교 3학년에는 주당 3시간 편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고등학교 3년간 24단위는 주당 4시간 운영 기준 편성이다.

학교에서의 동아리활동은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수업에서 담지 못하는 다양한 문화, 예술, 체육, 체험활동을 담을 수 있는 장으로 학생들에게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학생자치활동길잡이, 2011).

나) 정규교육과정을 연장한 상설동아리활동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 중 일부는 활동시간을 방과후 및 주말로 연장하여 상설동아리로 운영되기도 한다. 주로 방송동아리, 밴드동아리, 독서동아리, 토론동아리 등 정규교육과정 내의 활동만으로는 동아리활동의 목적

을 다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 지도교사와 학생들이 의견을 모아 상설적으로 활동하며 학교에 따라서는 상설동아리로 등록하면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다.

2009개정교육과정은 동아리활동을 창의·인성 교육과정의 부분으로 중요시하여, 학교정보공시 항목 중 하나로 상설동아리의 수와 상설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 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자료는 학교평가의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다) 자율 상설동아리활동

교육과정과는 관계없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고 지도교사를 초빙하여 운영하는 동아리이다. 대표적인 것이 2011학년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학교스포츠클럽이다. 학교스포츠클럽 외에도 학생들은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조직 과정은 먼저 학생들이 동일한 취미를 가진 학생들을 모아서 동아리를 조직하고 자신들의 동아리 지도교사로 모시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가 동아리 지도를 요청한다. 교사의 허락이 있으면 동아리조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고 활동한다. 동아리 조직 신청서에는 동아리활동 학생들의 명단, 지도교사, 활동일시 등을 기록한다. 동아리대표를 맡은 학생은 동아리활동상황을 일지에 기록하여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는다. 활동일지는 생활기록부에 동아리활동에 대한 기록의 기초자료가 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또한 장려되는 동아리활동으로 운영되는 학교스포츠클럽 수와 스포츠클럽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학생 수는 학교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2) 봉사활동의 개념

일반적으로 봉사활동이란 의무감 또는 타인의 강요나 명령이 아닌 자신의 자

발적 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체적인 활동으로, 금전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타인이나 사회를 위한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베푸는 활동이다. 또한 즉흥적인 선행보다 사전 계획을 통해 이루어지는 의도적인 활동이며, 스스로 계획한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계속되는 지속적인 활동이다. 아울러 개인적인 활동뿐 아니라 단체가 협동하여 실행할 때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활동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봉사활동은 학생봉사활동으로서, 학생봉사활동은 아직 성장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완전한 의미의 ‘자원봉사’를 요구하기 보다는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 곧 ‘봉사학습(Service-Learning)’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봉사학습은 학습자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올바르게 육성하기 위한 사회체험학습으로, 자아발견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가 학교교육의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라면 봉사학습의 궁극적 목적은 ‘경험교육’을 통해 ‘서로 돕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하는 봉사활동은 활동과정을 통해 습득되는 ‘인성발달’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봉사활동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첫째, 학생봉사활동은 개개인의 자유 의지에 따른 자원봉사의 개념보다는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지도되는 교육적인 활동이다. 봉사활동은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소홀해진 인성교육의 강화를 위해 1995년 ‘5.31 교육개혁방안’을 통해 제도화 되었으며 인성 함양, 심신단련, 사회성 개발 등을 위한 실천, 체험위주의 다양한 활동을 중시하는 방안의 하나로 1996학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1997년 고시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특별활동(자치활동, 적응활동, 계발활동, 봉사활동, 행사활동)으로 편성되고,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으로 편성하여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해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활동이 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 시행 첫 해인 2000년 11월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제도운영 개선지침’을 발표하고 모든 학교가 특별활동 중 10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시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2001년부터 봉사활동은 학교교육 과정에 의한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과 교육과정 외의 개인 봉사활동으로 나누어 시행되게 되었다.

둘째, 학생 봉사활동은 계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을 학교가 지도하는 활동이다. 학생 봉사활동은 학생들의 성장을 돕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어야 하므로 학습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봉사활동은 학교 단위의 활동이나 개인 단위의 활동을 막론하고 계획 수립과 검토 과정을 거쳐 실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학교장 또는 지도교사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 봉사활동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 지적, 사회적, 도덕적 발달 단계를 감안하여 학교급별로 적절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활동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봉사정신과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주로 교내 및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중학교는 학교에서 안내, 지도된 활동을 중심으로 실천하도록 하면서 학교 내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공기관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부문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신이 장차 선택하려는 진로 영역과 관련하여 봉사활동을 실천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진로 선택에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학생봉사활동 길라잡이, 2011).

가)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

봉사활동 영역은 1996학년도부터 「학생봉사활동 운영지침」(교육과학기술부 장학자료 제112호)을 준거로 각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서 학생 봉사활동의 유형, 방법, 운영 방안 등을 학교별로 특성에 맞게 정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학생·학부모·학교·봉사 대상 기관 등의 인식 부족과 봉사활동을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실적 취득에 치중한 나머지 허위 실적증명서 발급, 시간 부풀리기 등 편법이 동원되었고, 학교 현장에서 학생 봉사활동의 교육적 의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소홀, 학교급별, 학년별 봉사활동의 분야와 시간의 획일적인 편성·운영, 학교와 봉사활동 단체와의 협력체제 미흡 등등의 문제점이 지적되므로, 국무총리 지시(제2000-21호)에 의해 현행 학생봉사활동 문제점에 대한 관계부처 및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2000년 11월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제도운영 개선지침’을 수립·시행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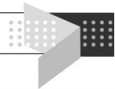
‘초·중·고등학교 학생봉사활동 제도운영 개선지침’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시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에게는 교육과정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봉사활동의 취지, 실시 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부모, 봉사 대상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시·도 자체 연수계획에 의거 합동연수를 실시함으로써 학생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 봉사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 특별활동의 연간 68시간 중 봉사활동에 초등학교 5-7시간, 중·고등학교 10시간 이상 반영하고, 봉사활동 관련 학교 교육과정의 단계적 지도를 권장하였다.

셋째, 학생 봉사활동의 질적 평가제 도입하여 봉사활동 확인서에 해당기관 지도자의 평가 내용 기록, 학교생활기록부의 봉사활동 내용에 평가 내용 요약 기록하도록 하였고, 대학입학전형시 대학의 모집 단위별 특성에 적합한 봉사활동 반영하도록 대학에 권장하고 대학입학전형시 봉사활동 반영사항을 대학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봉사활동을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1학년도 중학교 1학년부터 모든 학교가 정규교육과정 내에서 봉사활동 영역에 10시간 이상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단계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7〉 봉사활동의 운영단계

구분	단계	지도중점	세부지도내용
학교 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1단계	사전교육 (봉사활동 기본 교육)	- 봉사활동의 개념 및 의의 - 봉사활동의 필요성 및 절차 - 활동 영역 및 유의사항 등
	2단계	프로그램 구성	- 교사·학생 상호 협의하에 봉사활동 프로그램 계획 및 구성
	3단계	봉사활동의 실행	- 프로그램의 계획에 따른 봉사활동 참여
	4단계	봉사활동의 평가·발전	- 감상문 쓰기 및 토론하기 - 봉사활동 소감 발표 및 평가회 - 발전된 봉사활동 계획 및 수립 등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심화 단계	개별적·지속적 활동	- 계획 수립 - 사전 지도(사전계획서 제출) - 활동 및 평가 - 확인서 제출

출처 : 2011학년도 학생봉사활동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나)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

학생들의 봉사활동 시간은 대체적으로 연 20시간의 범위 안에서 시·도 교육청별, 학교별·학년별 봉사활동 내용과 시간을 지역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 내의 봉사활동 외에 학생들은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 ‘학교 교육과정 이외의 봉사활동’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관리되고 상급학교 진학 시 중학교의 경우 고입 내신 성적에 반영되며, 고등학교는 대학에 따라 내신 성적에 반영되기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교육 과정 이외의 봉사 활동도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 계획으로 편성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즉 학교별로 특색 있는 봉사 활동 프로그램 개발하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게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학생 개인 봉사 활동은 사전 계획을 반드시 담임 교사가 확인하고 사전 지도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봉사 활동에 참가하는 경우는 사전 계획서 확인을 통해 기관의 신뢰성, 활동 목적 및 내용, 활동 시간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봉사학습’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고 있다.

나.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의 의의

1) 동아리활동의 의의

각종 선행연구의 결과를 보면 동아리활동은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동아리활동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송수지 외, 2012).

송수지, 김정민, 남궁지영은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교육종단조사 1~6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여 2005년부터 전국 150개 중학교의 6,908명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의 자아개념 성장에 동아리활동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중 25.1%의 학생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 이외의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았고, 중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동아리활동을 한 학생은 28.2%, 중학교 시절에만 활동했던 학생은 36.3%, 중학교 시절에는 활동하지 않았다가 고등학생이 되어서 동아리활동을 시작한 경우가 10.4%였다.

위 연구에 의하면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비참여학생들보다 사회 자아개념이 높으며 특히 중학교부터 꾸준히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였던 집단의 사회 자아개념의 성장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지속적으로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동아리활동은 교사주도의 교과활동과는 달리 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의 노력으로 동아리 운영, 발표, 전시 등을 경험하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또래와의 활동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키우며, 사회적 관계를 배워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 학업 자아개념 영역에서 긍정적

인 자아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송수지 외, 2012).

이 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동아리활동이 청소년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동아리활동을 한 적이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사와의 관계와 교칙준수, 학교생활 만족도, 학습활동, 학교생활 적응도가 높고(안종미, 2004), 동아리활동을 하는 청소년이 전체 자아존중감이 더 높고, 교우관계도 원만하며(김성규, 2010) 문제 청소년들에게도 동아리활동을 통한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해 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김정주, 2001).

또한 청소년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길러진 취미와 교양, 기술 및 생활태도 등은 진로와 직업 선택에까지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자생적인 참여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자신들이 또래친구들의 문제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김성규, 2010).

청소년 동아리활동은 자치활동으로서, 집단활동에 대한 경험으로서, 진로탐색의 수단으로서, 여가활동으로서, 지역사회 연계수단으로서의 특성이 있다(김성규, 2010). 청소년기 동아리활동은 교우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며 조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확인하며 적응하고, 자발성, 수용적 태도, 민주적 인격, 공동체적 감정, 창의성 등을 포괄하는 긍정적인 청소년의 자아상을 발견할 수 있는 장이다. 또한 청소년 문제 예방 차원에서 효과적이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민주성과 단체성,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터전이며, 인적자원개발 측면에서 직업능력 개발과 연계되어지며 지역청소년문화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 인권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성규, 2010).

청소년기 발달의 중심 과제 중 하나인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은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자아존중감은 전 생애에 걸쳐 교우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학습동기나 태도, 나아가 계속되는 학업성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잘 수용하고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잘 인식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한다. 반면,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삶은 부정적인 자기태도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심함과 억압감을 가지고 있고, 도전감이나 모험성이 적고 타인에 대한 의식과 의존성이 많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즉 사회생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교우관계 역시 원만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김성규, 2010).

아울러 동아리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는 학생들보다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학교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 고 생각하거나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공부를 한다’ 고 응답하였다. 이는 청소년 학생활동이 어른들이 우려하는 것과는 달리 학업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송수지 외, 2012).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를 위하여 의미있는 교육적 여가 활동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김성규, 2010).

2) 봉사활동의 의미

학생 봉사활동은 균형적인 인성교육이나 생활체험적인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지식위주의 입시경쟁에 내몰린 학생들에게 봉사의 의미를 이해하고 타인을 돕는 일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체 의식과 삶의 보람, 자신의 존재가치를 느낄 수 있는 실천중심의 교육과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봉사활동을 통하여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기르고, 타인을 배려하는 너그러운 마음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및 지역사회의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책임감을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봉사활동은 청소년의 자아개념 및 자아 존중감, 사회적 책임감,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지적 성장과 발달,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봉사활동의 시간, 횟수 등 양적인 부분보다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더 높은 효과가 있었다(김지혜, 2012).

그러나 여성가족부가 2011년 6월 전국 중·고등학생 1,451명을 대상으로 봉사활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의 65%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응답 청소년의 76%는 우리나라 청소년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가장 큰 문제점을 ‘청소년의 욕구 미반영’으로 응답하였다(김지혜, 2012). 따라서 만족스러운 양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다.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의 현황

1) 동아리활동의 종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동아리활동의 종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8〉 동아리활동의 종류

활동명	활동별 내용
학술 활동	외국어 회화, 과학, 컴퓨터, 사회조사, 다문화 탐구, 신문활용, 발명, 인터넷 등
문화예술 활동	문예, 창작, 회화, 조각, 서예, 전통 예술, 현대 예술, 성악, 기악, 뮤지컬, 오페라, 연극, 영화, 방송, 사진, 도서 등
스포츠 활동	구기운동, 육상, 수영, 체조, 배드민턴, 인라인 스케이트, 아이킹, 야영 등
실습노작 활동	요리, 수예, 재봉, 꽃꽂이, 사육, 재배, 조경, 설계, 목공, 로봇 제작 등
청소년단체 활동	스카우트연맹, 걸스카우트연맹, 청소년연맹, 청소년적십자, 우주소년단, 해양소년단 등

2) 봉사활동의 유형

2009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내용은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표 II-9〉 봉사활동의 유형 및 활동내용

활동 영역	활동 유형	활동 내용
교내 봉사활동	지도 활동	- 학습 부진 친구 돕기 - 장애인, 병약자, 다문화 가정 학생 돕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일손 돕기 활동	- 복지 시설, 공공시설, 병원, 농·어촌 등에서의 일손 돕기
	위문 활동	- 불우이웃돕기 - 고아원, 양로원, 병원, 군부대에서 위문 활동
	자선 구호 활동	- 재해 구호 - 국제 협력과 난민 구호
자연환경 보호활동	환경시설 보존 활동	- 깨끗한 환경 만들기 - 자연 보호 - 식목 활동 - 저탄소 생활 습관화
	지역사회개발 활동	- 공공시설물 보호 - 문화재 보호
캠페인 활동	캠페인 활동	- 공익활동 이해 및 참여 확대 - 각종 편견 극복
기타		- 봉사활동 기본교육 및 평가 - 위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봉사활동

3) 동아리활동 우수사례

가) 학생 중심의 자율적인 동아리 활성화(울산 강남고등학교)

울산강남고등학교 동아리활동의 가장 큰 특색으로 “학생 주도의 자율적인 동아리 조직과 운영”이라는 점과 “학교교육과정과 학생 자율적 동아리활동의 조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조직 과정에서부터 각 동아리 대표학생이 홍보자료와 영상을 제작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홍보회를 개최한 후 동아리 지원 신청서를 받아 조직하고 있다.

동아리활동은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동아리별 탐구활동을 실시하고 월1회 동아리대표 회의를 통해 동아리 운영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아울러 학교는 학생들이 상시적인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과교실, 리소스 센터, 상설 동아리실을 개방하고 있다.

교외 체험활동도 동아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매월 1회에 걸쳐 동아리별 교외체험활동을 실시하는데 각 체험장소는 순환하여 탐방하되 지역과학교육지원지도(RSM)를 활용한 과학탐방, 문화탐방, 산업체탐방,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동아리활동의 결과는 학생회 및 각 동아리장이 주축이 되어 계획하고 실행하는 축제로 승화되고 있다. 축제의 주요 행사는 ‘동아리 주제탐구대회’와 ‘동아리별 전시·체험 부스 운영’으로 구성된다. 축제 때 실시한 주제탐구대회 및 각종 동아리에서 운영한 전시체험프로그램의 내용은 책으로 발간하고 있다. 학생들 스스로가 주도하여 동아리를 조직하고 자율적으로 동아리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리더십, 기획력, 협동심, 공동체 의식을 기르고 기존의 소비하고 즐기는 특색 없는 학교 문화에 비해 스스로 참여하고 창의적인 체험을 통하여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축제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보이고 있다.

나)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부산 대연초등학교)

대연초등학교는 학교문화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동아리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이에 많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활동을 하였다.

특히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20여 개의 스포츠 관련 동아리가 있다. 대연초등학교는 2010년부터 ‘1학생 1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동아리를 만들어 학교에 보고하면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씨름, 농구, 축구, 음악줄넘기 등 다양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내에 골프연습장 등을 마련해 동아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스포츠 동아리 외에도 과학연구동아리, 방송부, 연극부, 관현악부 등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학교의 지원으로 대연초등학교는 전교생의 약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동아리활동(강원 춘천여자고등학교)

강원 춘천여자고등학교는 강원대학교, 강원도 청소년수련관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춘천여자고등학교 동아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표 II-10〉 춘천여자고등학교 동아리활동 사례

연번	동아리명	지역사회 연계 활동 내용
1	산하	강원대학교 연극부 '영그리'와 연계하여 강사선생님 초청, 분장 등 여러 도움을 받으며 활동함
2	PROP (또래상담동아리)	강원도 청소년 상담센터(1388)와 연계하여 여러 캠페인과 행사에 참가하여 학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고, 도와주는 활동을 함
3	INSANE (밴드부)	각종 대회 등에 참가하고, 춘천시 고등학교 밴드부 연합공연에 참가함
4	서머서머	춘천시청소년환경운동단체에 소속되어 교내학생들과 춘천시민에게 환경오염의 심각성과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캠페인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가게'에서 봉사활동을 함
5	YKA (홍사단)	YKA(Young Korean academy)는 정기적인 봉사활동과 금병초등학교와의 학교 간 교류 협정을 체결
6	FRANCIS (과학실험동아리)	강원대학교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실시
7	두빛나래 (봉사동아리)	'두빛나래'는 강원도 청소년수련관과 연계되어 봉사활동을 전개함.
8	Bible.com	'Bible.com'은 국제 구호개발 NGO인 굿네이버스와 연계하여 전쟁과 기아의 참혹함에 대한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함

4) 봉사활동 우수사례

가) 학부모-자녀 함께하는 봉사활동(경남 고성중학교)

학부모샤프론 봉사단은 학생봉사활동 제도의 취지를 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조직되기 시작한 단체이다. 매년 창단과 운영에 관한 설명회 및

학부모봉사단 연수, 각종 워크숍을 개최하여 학교별로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단체이다.

경남 고성중학교는 3월 초 학부모 샤프론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며 학부모 교육 및 봉사활동 실시하였고, 학부모의 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9월 초 학생 프론티어 봉사단을 조직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봉사활동의 기초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나눔과 배려, 사랑의 인성 함양을 위해 학부모가 솔선수범하여 본보기가 됨으로써 학생의 봉사활동을 이끌어내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봉사활동의 결과 봉사활동 자체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생-학부모가 함께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배려할 수 있는 인성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나) 지역사회 홀로노인 대상 봉사활동(부산 강서고등학교)

부산 강서고등학교는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사회 홀로노인 대상 봉사활동을 학교 특색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 내 홀로노인들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점에 착안,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홀로노인들의 정서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학생에게는 인성함양과 입학사정관제 대비 및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부산 강서고등학교는 적십자사, 부산강서구청, 부산강서종합복지관, 부산청소년활동진흥센터, IBK 기업은행, 한국사회복지협회, 보건복지부 휴먼네트워크 등 7개 기관과 협력관계를 체결하여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봉사자 모집 단계에서부터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II-11〉 부산강서고등학교 봉사활동 사례

시기	추진 내용
3월 초	동아리 모집 홍보 및 심층 면접을 통한 학생 선발 (경쟁률 3:1)
4월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서종합사회복지관과의 협약을 통한 발대식 - 동아리 단원 사전 오리엔테이션(총 3회) 실시 - 사회복지사, 지도교사 조장선발 및 프로그램 아이디어 회의실시 - 연간 활동 계획서 제출
4월 중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둘째 주 토요일부터 매주 해당 가구 방문 - 1회 활동시간 4시간 (연 평균 학생 1인 당 봉사활동시간 100시간 달성)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1인당 봉사활동 대회 의무적 참가 - 동기 부여 및 수상기회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연중 활동 평가회 실시 (교장, 복지관장 등 기관장 참석) - 우수 조 시상 및 사례발표를 통한 상호 활동 경험 공유 및 미비점 보완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 1회 사회복지사, 담당교사가 각 조 활동상태 점검 및 일지 확인. - 매 활동 시 지도교사 동행 활동 (현장 지도를 통한 효율의 극대화) - 방학 중에도 해당 멘티에 대한 위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

위와 같은 활동 결과 봉사활동을 통해 학생의 인성함양, 바람직한 자아형성 및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학교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및 학생들에게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멘티(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의욕을 주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 활동으로 부산광역시장상(2009), 제2회 대한민국 휴먼대상(2010)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다) 장애친구와 함께하는 과학봉사활동(광주 승의중학교)

승의중학교는 2011년 4월 23일(토) 10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 행복재활원에서 장애 친구들이 평소에 경험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과학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100여 명의 행복재활원 장애 친구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이날 행사는 올 해로 벌써 아홉 번째를

맞았으며, 송의중학교 과학동아리 ‘빅뱅’(조문영 외 25명)과 ‘조선대학교 WISE’, ‘I-ROBO’ 등의 봉사 동아리가 같이 참여하여 이제까지 이웃들과 소외된 생활을 해온 장애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과학 동아리 빅뱅의 봉사활동은 7월 7일 무지개특수 어린이집, 11월 1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전교생이 60여명인 평동초등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과학 지식과 미래의 꿈을 나누어 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과학 동아리 ‘빅뱅’의 봉사활동 체험 수기가 중앙일보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주최한 「제18회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의중학교는 2011학년도 교육과학기술부 ‘학교문화 선도학교’로 지정되어 ‘나눔 문화 확산’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라)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봉사활동 통합 운영(충남 입장중학교)

충남 입장중학교는 교육과정 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단위로 전체 학생과 전교사가 사제동행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입장중학교는 동아리활동을 토요일제로 운영하면서 중증 장애인 요양원인 ‘등대의 집’(충남 천안시 소재)과 결연을 맺어 동아리별로 돌아가면서 ‘등대의 집 릴레이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 활동 전 날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소감문 작성 및 사진전을 통해 추수지도를 하였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봉사활동으로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고 나눔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릴레이 봉사의 운영으로 전교생과 교사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마) 세계시민의식을 키우는 나눔 실천(제주 한라초등학교)

제주 한라초등학교는 김만덕 삶의 정신인 나눔·배려를 실천하는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나눔과 배려를 체험하고 더불어 사는 세계 시민 소양 능력을 함양하고, 지구촌 가족에게 나눔이라는 아름다운 실천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여 지구촌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삼고자 월드비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운동’에 참여하였다.

2011년 4월 8일 한라초등학교에서 전 교직원과 학부모, 각 반 대표어린이들이 모여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어린이와 한 학급 한 생명 살리기 결연식을 맺고 이어서 학교장이 콩고민주공화국을 방문하여 후루마초등학교와 교실개축, 전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결연을 맺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받은 돈이나 용돈을 절약하여 모금을 하고 매월 말 30,000원이 되는 학급은 월드비전 제주지부의 협조를 받아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보내고, 콩고민주공화국 결연 친구들과 편지로 소통하는 등 지구촌 세계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과 역할에 대한 인식을 함양되는 계기가 되었다.

바) 지역사회와 전문가 집단과 연계한 동아리·봉사 활동(진보고등학교)

진보고등학교는 동아리활동을 통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성 함양하며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과의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지원센터와 또래 상담 교육, 상담기법 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을 협력하여 운영하고, 진보병원 노인병동, 아름다운 실버타운 등의 봉사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지역 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지역사회 기관 및 전문가 집단의 협조로 학생들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활동함으로써 학습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운영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밝고 긍정적인 학생상을 정립하였으며,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였다. 동아리 봉사활동을 통하여 애함심을 갖게 되었으며, 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내·외 생활에 적극적으로

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공교육에 대해 신뢰하는 풍토를 조성하였다. 학생 중심의 봉사 동아리활동으로 운영하였기에 학생들의 건전한 정서 함양에 크게 기여하였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되었다.

4. 선행연구 분석

가. 현황 진단

우리나라는 최근 OECD 가입, G20 정상회의 개최,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하는 등 국격(國格)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 사회의 세계 리더로서 성장해야 할 우리의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의식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시민 의식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을 통해 미래사회의 핵심적인 역량을 길러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기본적인 준법정신과 윤리, 도덕의식이 위기에 처해 있다. 학교에서는 폭력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졸업식 알몸뒤풀이, 욕설, 왕따, 괴롭힘, 금품요구, 폭력 등의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교사의 지도에 대한 불응과 심지어는 교사를 폭행하거나 희롱하는 등 학생들의 방종과 무질서는 학교 내부의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졸업식 알몸뒤풀이 사건은 건전한 학생 문화가 실종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입학식, 졸업식, 학생 축제 등이 학교특색과 전통으로 승화되지 못한 채 형식적인 행사로 전락하고,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폭행), 학생의 옷을 벗게 하여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단체기합을 주는 행위(강제추행, 강요), 알몸 상태 모습을 핸드폰·카메라로 촬영·배포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학생들의 욕설 문화는 2000년 초고속 인터넷 활성화 이후, PC방, 채팅문화,

휴대전화 유행 등으로 보편화, 습관화되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학생들이 느끼는 학생 언어 사용의 문제점은 욕설(50.5%), 언어폭력(33.4%), 은어(9.2%), 통신언어(5.2%) 등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학생들 사이에 ‘욕 애플리케이션’, ‘욕 배틀(욕게임)’ 등이 유행하여 청소년 문화의 일부분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청소년 욕설 문화는 우리 사회 성인들의 욕설 문화가 학교에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체벌금지 이후 학교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교사의 지도 불응을 넘어서 교사에 대한 욕설과 폭행 등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교실붕괴의 단면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1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1년 22건에 불과했던 교권침해 건수는 해마다 늘어 지난 2011년에는 287건으로 증가하였다. 교권 침해 사례의 유형을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감소되고 있으나, 학생에 의한 사례는 증가 추세('08년 : 56.8% → '09년 : 73.6% → '10년 9월 : 77.9%)이며,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제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우리 학생들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수준은 비교 대상인 36개국 가운데 35위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관계지향성은 100점 만점에 48점, 사회적 협력은 100점 만점에 13점으로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12〉 청소년 사회적 상호작용 역량 순위 및 항목별 지표

순위	국가	종합점수	관계지향성	사회적협력
01	태국	0.69	82.2	56.5
02	인도네시아	0.64	89.0	45.0

순위	국가	종합점수	관계지향성	사회적협력
03	파라과이	0.61	75.2	60.5
08	러시아	0.53	74.5	29.0
11	뉴질랜드	0.53	58.3	43.5
12	영국	0.53	58.0	42.5
16	오스트리아	0.52	59.1	43.0
17	이탈리아	0.50	68.6	23.5
20	스페인	0.46	64.7	29.0
23	대만	0.45	61.0	18.5
35	한국	0.31	48.0	13.0

※ 종합점수: 1점 만점, 관계지향성·사회적협력: 100점 만점

※ 조사대상: 36개 국가 중2학년 14만 600여명

‘국내·외 초등학생 교실학습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7)’ 결과에 의하면 ‘교실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을 배우고 실천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영국 60.6%, 프랑스 60.0%, 일본 28.7%인 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5.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교실에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칙을 배우고 실천한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프랑스 63.0%, 영국 54.3%, 일본 20.0%인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18.4%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며, 학교에서 질서와 규칙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민주시민 자질 함양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중요한 목적이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사회체제에 대한 존중감과 법과 질서 준수 등의 준법정신, 상호존중의 공공의식, 청렴의식 등 윤리, 도덕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교사들도 학생들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의 한국본부가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반부패 인식 지수’ 조사 결과, 응답자

의 20%가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과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사회의 도덕성 지표개발 연구’에 따르면 학생은 경로효친, 정직, 절제, 생명존중 등 18개 도덕성 점수 분포에서 평등·인권존중 영역을 제외한 17개 영역에서 성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경우 반대하겠다’라는 응답에 성인의 48.7%가 반대하겠다고 응답하였는데, 학생은 60.3%가 반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길거리에 침을 뱉는다’는 질문에는 학생의 38.6%, 성인의 19.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잔디밭에 들어간다’는 질문에는 학생의 28.3%, 성인의 14.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어른에게 존대말을 쓰며 정중하게 대한다’는 질문에 성인은 87.9%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고교생은 69.6%, 중학생은 62.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나이 드신 분이 타면 자리를 양보한다’는 질문에 성인의 80.3%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고교생은 68.1%, 중학생은 61.9%만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부당한 일을 보면 모른척한다’는 질문에는 학생의 20.8%, 성인은 11.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로 볼 때 우리사회의 도덕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청소년 대상의 민주시민 교육이 강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국제교육협의회(IEA)가 세계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제 시민의식 교육연구(ICCS)’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로 조사 대상국 평균인 62%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미디어에 대해서는 각각 45%, 51%로 공공기관에 대한 청소년의 신뢰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이러한 결과는 공공질서에 대한 경시의 태도로 이어져 준법정신과 윤리, 도덕성의 훼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05년 KBS방송문화연구소가 중고생 1,000명을 표집하여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약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나에게만

몰래 시험문제를 가르쳐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무조건 거절하겠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29.8%에 그치고 있다. 또한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10억 원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제안을 받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거절한다'라는 응답은 46.8%로 '발각될 가능성과 처벌의 경중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라는 응답을 46.3%와 비슷하게 나타냈으며, '제안한 사람을 고발한다'는 응답은 4.0%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약 50%가 '그 제안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응답해 부정적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와 프랑스, 홍콩의 중학교 2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 프랑스의 경우 25명 중 '단호히 거절한다'가 15명, '고발한다'가 7명으로 조사되었다. 홍콩에서는 총 38명의 학생 중 28명이 '제안한 사람을 고발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이 학생회, 자치법정, 동아리 등 학생자치기구에 소속되어 교육활동과 의사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생 스스로 자율과 참여를 통해 조직을 구성하고, 교육적 활동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자질을 키우고 고유한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 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의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은 학급규칙 제정, 학급 부서 조직과 운영 등 초보적인 수준의 자치활동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조직에 '학생자치과'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여전히 학교의 변화는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나. 원인 진단

학생자치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상급학교 진학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는 입시위주의 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에서 모두 시험 성적을 높이는 것을 지상 과제로 삼고 있고, 학교의 운영도 교과 성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지속된 입시문화에서는 학생자치활동 자체가 성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학생자치활동은 타율적이고 통제적인 문화와 결합되어 학교의 형식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서 유명무실하게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서 규칙 준수와 질서의식 함양, 타인에 대한 배려, 바른 언어 사용 등의 기본적인 민주시민 의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온 것이다.

학교 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핵심 가치는 안전과 평화, 참여와 배려, 신뢰와 존중, 선의의 경쟁, 개방과 소통, 자율과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의 향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학교 조직의 구성원이 바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학생들은 미래 한국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학교의 왜곡된 현실을 드러내는 핵심 지표중 하나는 바로 학교폭력의 수준이다. 학교폭력은 학교문화가 사회문화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폭력과 위협, 권위와 소외, 불신과 반목, 과도한 경쟁, 폐쇄와 단절, 통제와 규제로 대표되는 현대 한국 사회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는 한국 사회의 시민의식 수준을 넘어설 수 없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적, 절차적 중요성이 경시되는 문화는 학생들에게 가치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결과적으로 폭력이라는 형태로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시민 의식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다. 타

인에 대한 배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대화와 토론 등의 의사소통 역량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른 언어사용이 중요하다. 학교공동체를 구성하는 교사, 학생, 학부모 상호간의 바른 언어 사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학교공동체의 구성원 상호간에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는 것은 인성교육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학교폭력의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터넷 매체의 급속한 발달과 SNS 등 쌍방향 의사소통의 대중화로 인해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욕설과 비속어의 의미를 교육함으로써 바른 언어 사용이 생활화되었다는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해 갈 수 있는 교육과 실천이 시급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자치활동을 통해 얻는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학 진학과 학력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입시와 직결되지 않는 학생자치활동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가정과 학교에서 성적 향상과 명문대 진학만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삼는 입시문화는 학생자치활동을 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활동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학교의 보수적 문화는 교사와 학생간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학생이 참여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은 이러한 전통적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 학생의 의견 제시는 교사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취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학생의 자치 능력, 의사결정 능력에 대한 불신도 학생의 자치활동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일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감·소통을 위한 학생생활협약’은 학교문화를 바꾸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사봉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참여해 학생생활협약을 만들고 정규 수업에 생활협약을 활

용한 과정을 포함, 학생들이 직접 만든 협약을 체득하도록 하고 있다. 각 학급에서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협약을 8가지씩 정한 뒤 학년별 공청회, 전교생 총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학교 전체의 생활협약 8가지를 만들어 가는 식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만들어진 협약은 그 자체로 학생들의 일상생활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해 갈 수 있도록 설계되고 운영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핀란드 교육문화부의 ‘끼바 꼬울루(Kiva Koulu) 프로젝트’는 우리 학교문화 선진화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핀란드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학교문화를 개발하고 평가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 끼바 꼬울루 프로젝트를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발하였고, 현재는 전체 학교의 약 82%에 해당하는 2,500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끼바 꼬울루 프로젝트는 학교 내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학생들은 교육과정에서 토의와 집단활동, 짧은 영상, 역할극 시연 등을 통해 학급 규칙을 만들어간다. 학급 규칙을 전부 모아 Kiva 조약을 만들고 학생들이 모두 이에 서명하고 준수해 나간다. 끼바 꼬울루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뿐 아니라 우울과 불신, 정신질환, 범죄와 반사회적 행동을 예방함으로써 새로운 학교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학교문화의 전환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규제 위주의 통제적 관점에서 벗어나 학생을 인격적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신뢰에서 자치활동의 활성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다. 학교 생활규정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정하고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과정은 자율과 책임 중심의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기본적인 과정이 될 수 있다.

인성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

1. 총론연구팀의 인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2.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 결과

Ⅲ. 인성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인성교육 총론연구팀은 11개 연구팀에서 개발한 설문문항을 수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팀에서는 학교문화와 학생자치활동에 초점을 맞추어 설문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총론연구팀과 본 연구팀의 조사 결과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총론연구팀의 인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인성교육 실태조사는 총 500개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2012년 7월 6일~7월 24일까지(19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크게 인성교육의 현주소, 인성교육 실천과제로 구성하였다. 인성교육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하여 1)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태, 2) 설문 대상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 3) 인성교육 핵심요소에 대하여 설문하였으며, 인성교육 실천과제는 인성교육의 세부영역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시·도별, 학교급별, 조사대상별 조사표본 수는 총 57,902명으로 다음과 같다.

〈표 III-1〉 시·도별, 학교급별, 조사대상별 조사표본 수

학교급	시·도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
	합 계	31,364	11,280	15,258	57,902
초등 학교	소계	8,455	3,738	4,919	17,112
	서울	983	750	665	2,398
	부산	523	181	335	1,039
	대구	198	84	130	412
	인천	755	258	419	1,432
	광주	217	26	91	334
	대전	285	173	230	688
	울산	134	71	126	331
	경기	1,869	594	1,089	3,552
	강원	221	103	97	421
	충북	268	191	194	653
	충남	629	274	256	1,159
	전북	597	279	342	1,218
	전남	421	123	190	734
	경북	549	245	322	1,116
	경남	722	367	413	1,502
제주	84	19	20	123	
중학교	소계	12,025	2,867	5,148	20,040
	서울	1,653	393	540	2,586
	부산	1,034	161	453	1,648
	대구	107	29	35	171
	인천	657	243	381	1,281
	광주	199	89	118	406
	대전	496	114	295	905
	울산	272	91	208	571
	경기	2,658	583	1,001	4,242
	강원	542	196	207	945
	충북	640	149	327	1,116
	충남	204	55	127	386
	전북	398	97	165	660
	전남	753	136	315	1,204
	경북	1,019	112	182	1,313
	경남	1,282	387	764	2,433
제주	111	32	30	173	
고등 학교	소계	10,884	4,675	5,191	20,750
	서울	1,102	618	491	2,211
	부산	899	510	506	1,915
	대구	438	162	267	867
	인천	604	362	464	1,430

학교급	시·도	학생	교사	학부모	전체
	광주	306	173	229	708
	대전	190	72	76	338
	울산	342	172	276	790
	경기	2,560	1,026	899	4,485
	강원	302	79	66	447
	충북	398	123	89	610
	충남	816	257	320	1,393
	전북	447	159	109	715
	전남	605	218	399	1,222
	경북	769	263	354	1,386
	경남	1,006	432	536	1,974
	제주	100	49	110	259

나. 인성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 문항 중 ‘앞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93.7%, 학부모 97.2%, 교사 97.8%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와 교사가 그 중요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95.9%, 중학교 92.3%, 고등학교 93.4%로 나타났고,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98.5%, 중학교 96.8%, 고등학교 96.5%로,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98.3%, 중학교 97.7%, 고등학교 97.4%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인성의 중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 인성의 중요성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512(1.6)	1,486(4.7)	17,555(56.0)	11,811(37.7)	31,364(100)	467.602***
학	82(1.0)	265(3.1)	4,909(58.0)	3,210(37.9)	8,466(100)	
생	245(2.0)	691(5.7)	7,276(60.5)	3,821(31.8)	12,033(100)	
	185(1.7)	530(4.9)	5,370(49.4)	4,780(44.0)	10,865(100)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 부 모	전체	119(0.8)	309(2.0)	6,537(42.8)	8,293(54.4)	15,258(100)	173.344***
	초등학교	13(0.3)	62(1.3)	1,824(37.1)	3,015(61.4)	4,914(100)	
	중학교	46(0.9)	122(2.4)	2,400(46.7)	2,574(50.1)	5,142(100)	
	고등학교	60(1.2)	125(2.4)	2,313(44.5)	2,704(52.0)	5,202(100)	
교 사	전체	48(0.4)	204(1.8)	3,023(26.8)	8,005(71.0)	11,280(100)	77.453***
	초등학교	14(0.4)	48(1.3)	836(22.2)	2,865(76.1)	3,763(100)	
	중학교	15(0.5)	54(1.9)	821(28.5)	1,995(69.2)	2,885(100)	
	고등학교	19(0.4)	102(2.2)	1,366(29.5)	3,145(67.9)	4,632(100)	

***p<.001 **p<.01 *p<.05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뢰와 협력, 참여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46.3%, 학부모 35.8%, 교사 19.6%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와 교사가 학생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71.0%, 중학교 43.2%, 고등학교 30.5%로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불어 사는 능력을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33.9%, 중학교 38.3%, 고등학교 35.3%로 학생 평가와는 달리 초등학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초등학교 21.8%, 중학교 16.6%, 고등학교 19.9%로 초등학생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학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III-3〉 학생들의 더불어 사는 능력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전체	χ^2	
학 생	전체	2,973(9.5)	13,873(44.2)	12,389(39.5)	2,129(6.8)	31,364(100)	3,368.823***
	초등학교	225(2.7)	2,236(26.4)	5,043(59.6)	962(11.4)	8,466(100)	
	중학교	1,155(9.6)	5,681(47.2)	4,486(37.3)	711(5.9)	12,033(100)	
	고등학교	1,593(14.7)	5,956(54.8)	2,860(26.3)	456(4.2)	10,865(100)	
학 부 모	전체	1,369(9.0)	8,422(55.2)	4,605(30.2)	862(5.6)	15,258(100)	94.117***
	초등학교	366(7.4)	2,879(58.6)	1,471(29.9)	198(4.0)	4,914(100)	
	중학교	437(8.5)	2,740(53.3)	1,602(31.2)	363(7.1)	5,142(100)	
	고등학교	566(10.9)	2,803(53.9)	1,532(29.5)	301(5.8)	5,202(100)	

구분	매우 낮다	낮다	높다	매우 높다	전체	χ^2
전체	1,861(16.5)	7,200(63.8)	2,056(18.2)	163(1.4)	11,280(100)	74.194***
교	487(12.9)	2,457(65.3)	760(20.2)	59(1.6)	3,763(100)	
사	545(18.9)	1,862(64.5)	433(15.0)	45(1.6)	2,885(100)	
고등학교	829(17.9)	2,881(62.2)	863(18.6)	59(1.3)	4,632(100)	

***p<.001 **p<.01 *p<.05

‘현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60.8%, 학부모 53.7%, 교사 32.0% 순으로 높게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수준에 비해, 교사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7.0%, 중학교 59.6%, 고등학교 41.8%로 학교급이 낮을 수록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고,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53.6%, 중학교 54.4%, 고등학교 52.9%로 중학교의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41.4%, 중학교 26.3%, 고등학교 27.7%로 학부모의 의견과는 상반되게 중학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 학교 인성 교육수준

구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	χ^2
전체	2,592(8.3)	9,695(30.9)	15,957(50.9)	3,120(9.9)	31,364(100)	4,965.822***
학	211(2.5)	890(10.5)	5,503(65.0)	1,862(22.0)	8,466(100)	
생	933(7.8)	3,927(32.6)	6,356(52.8)	817(6.8)	12,033(100)	
고등학교	1,448(13.3)	4,878(44.9)	4,098(37.7)	441(4.1)	10,865(100)	
전체	967(6.3)	6,105(40.0)	7,074(46.4)	1,112(7.3)	15,258(100)	49.986***
학	229(4.7)	2,048(41.7)	2,301(46.8)	336(6.8)	4,914(100)	
부	336(6.5)	2,011(39.1)	2,380(46.3)	415(8.1)	5,142(100)	
모	402(7.7)	2,046(39.3)	2,393(46.0)	361(6.9)	5,202(100)	
전체	1,495(13.3)	6,185(54.8)	3,277(29.1)	323(2.9)	11,280(100)	331.097***
교	284(7.5)	1,920(51.0)	1,400(37.2)	159(4.2)	3,763(100)	
사	427(14.8)	1,699(58.9)	693(24.0)	66(2.3)	2,885(100)	
고등학교	784(16.9)	2,566(55.4)	1,184(25.6)	98(2.1)	4,632(100)	

***p<.001 **p<.01 *p<.05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

는 질문에 대하여 1순위로 학생은 33.4%, 학부모는 27.6%가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사는 45.6%가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이라고 응답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책임을 찾는 반면 교사는 가정에서 그 책임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37.3%가 ‘폭력적인 또래문화’를 응답했고, 중학교 36.5%, 고등학교 42.9%가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23.1%가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을, 중학교 26.5%, 고등학교 33.8%가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이라고 응답하였고, 교사는 초등학교 47.3%, 중학교 46.5%, 고등학교 43.6%가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5〉 인성형성에 부정적인 요소(1순위)

구분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폭력적인 또래문화	성적위주 학교교육	경쟁적 사회풍토	유해한 매체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	전체	χ^2
전체	4,089(13.0)	7,889(25.2)	10,461(33.4)	2,283(7.3)	3,037(9.7)	3,605(11.5)	31,364(100)	3230.458***
학	874(10.3)	3,154(37.3)	1,409(16.6)	350(4.1)	1,460(17.2)	1,219(14.4)	8,466(100)	
생	1,543(12.8)	3,061(25.4)	4,387(36.5)	723(6.0)	991(8.2)	1,328(11.0)	12,033(100)	
고등학교	1,672(15.4)	1,674(15.4)	4,665(42.9)	1,210(11.1)	586(5.4)	1,058(9.7)	10,865(100)	
전체	2,824(18.5)	2,825(18.5)	4,214(27.6)	1,831(12.0)	2,567(16.8)	997(6.5)	15,258(100)	374.044***
학	1,137(23.1)	782(15.9)	1,095(22.3)	588(12.0)	1,007(20.5)	305(6.2)	4,914(100)	
부	870(16.9)	1,118(21.7)	1,361(26.5)	542(10.5)	902(17.5)	349(6.8)	5,142(100)	
모	817(15.7)	925(17.8)	1,758(33.8)	701(13.5)	658(12.6)	343(6.6)	5,202(100)	
전체	5,140(45.6)	360(3.2)	2,373(21.0)	1,950(17.3)	1,143(10.1)	314(2.8)	11,280(100)	50.762***
교	1,780(47.3)	96(2.6)	716(19.0)	698(18.5)	383(10.2)	90(2.4)	3,763(100)	
사	1,341(46.5)	117(4.1)	582(20.2)	466(16.2)	306(10.6)	73(2.5)	2,885(100)	
고등학교	2,019(43.6)	147(3.2)	1,075(23.2)	786(17.0)	454(9.8)	151(3.3)	4,632(100)	

***p<.001 **p<.01 *p<.05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2순위로 학생은 22.3%가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이라고 응답하였고, 학부모는 24.0%가 ‘유해한 매체’라고 응답하였고, 교사는 22.5%가 ‘경

쟁적 사회풍토'라고 응답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4.8%가 '유해한 매체'를 응답했고, 중학교 22.3%가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에 응답했으며, 고등학교 24.9%가 '경쟁적 사회풍토'라고 응답하였다.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26.5%, 중학교 25.4%, 고등학교 20.3%가 모두 동일하게 '유해한 매체'라고 응답하였다. 교사는 초등학교 22.8%가 '경쟁적 사회풍토', 중학교 21.8%는 '유해한 매체', 고등학교 23.7%는 '성적 위주의 학교교육'이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6〉 인성형성에 부정적인 요소(2순위)

구분	부모의 잘못된 교육관	폭력적인 또래문화	성적위주 학교교육	경쟁적 사회풍토	유해한 매체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	전체	χ^2	
전체	2,719(8.7)	5,528(17.6)	5,710(18.2)	5,286(16.9)	5,138(16.4)	6,983(22.3)	31,364(100)		
학생	초등학교	628(7.4)	1,763(20.8)	1,201(14.2)	808(9.5)	2,102(24.8)	1,964(100)	1,576.732***	
	중학교	1,102(9.2)	2,229(18.5)	2,338(19.4)	1,777(14.8)	1,898(15.8)	2,689(100)		
	고등학교	989(9.1)	1,536(14.1)	2,171(20.0)	2,701(24.9)	1,138(10.5)	2,330(21.4)		10,865(100)
학부모	전체	1,201(7.9)	2,332(15.3)	2,952(19.3)	2,856(18.7)	3,668(24.0)	2,249(14.7)	15,258(100)	
	초등학교	472(9.6)	704(14.3)	862(17.5)	819(16.7)	1,303(26.5)	754(15.3)	4,914(100)	202.493***
	중학교	403(7.8)	867(16.9)	1,012(19.7)	822(16.0)	1,308(25.4)	730(14.2)	5,142(100)	
	고등학교	326(6.3)	761(14.6)	1,078(20.7)	1,215(23.4)	1,057(20.3)	765(14.7)	5,202(100)	
전체	1,905(16.9)	891(7.9)	2,517(22.3)	2,536(22.5)	2,392(21.2)	1,039(9.2)	11,280(100)		
교사	초등학교	688(18.3)	256(6.8)	807(21.4)	858(22.8)	850(22.6)	304(8.1)	3,763(100)	49.352***
	중학교	486(16.8)	273(9.5)	614(21.3)	620(21.5)	629(21.8)	263(9.1)	2,885(100)	
	고등학교	731(15.8)	362(7.8)	1,096(23.7)	1,058(22.8)	913(19.7)	472(10.2)	4,632(100)	

***p<.001 **p<.01 *p<.05

'학교나 등굣길에서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하여 '모른 척 지나간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은 10.8%, 학부모 3.1%, 교사 2.6% 순으로 나타나 학생들에 비해 학부모와 교사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4.4%, 중학교 12.5%, 고등학교 13.9%,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1.8%, 중학교 3.0%, 고등학교 4.4%로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2.0%, 중학교 2.5%, 고등학교 3.0%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모
 른 척 하고 지나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7〉 등굣길 학생 괴롭힘 당하는 장면 목격 시 반응

구분	그만두도록 적극제지	주변 사람에게 도움요청	신고한다	모른 척 지나간다	전체	χ^2
전체	6,012(19.2)	6,514(20.8)	15,452(49.3)	3,386(10.8)	31,364(100)	
학 생						2,256.747***
초등학교	1,395(16.5)	856(10.1)	5,843(69.0)	372(4.4)	8,466(100)	
중학교	2,137(17.8)	2,791(23.2)	5,597(46.5)	1,508(12.5)	12,033(100)	
고등학교	2,480(22.8)	2,867(26.4)	4,012(36.9)	1,506(13.9)	10,865(100)	
학 부 모						135.838***
전체	4,165(27.3)	3,367(22.1)	7,259(47.6)	467(3.1)	15,258(100)	
초등학교	1,165(23.7)	1,175(23.9)	2,488(50.6)	86(1.8)	4,914(100)	
중학교	1,412(27.5)	1,089(21.2)	2,487(48.4)	154(3.0)	5,142(100)	
고등학교	1,588(30.5)	1,103(21.2)	2,284(43.9)	227(4.4)	5,202(100)	
교 사						44.057***
전체	5,702(50.5)	1,829(16.2)	3,461(30.7)	288(2.6)	11,280(100)	
초등학교	1,943(51.6)	695(18.5)	1,049(27.9)	76(2.0)	3,763(100)	
중학교	1,456(50.5)	452(15.7)	906(31.4)	71(2.5)	2,885(100)	
고등학교	2,303(49.7)	682(14.7)	1,506(32.5)	141(3.0)	4,632(100)	

***p<.001 **p<.01 *p<.05

‘바람직한 인성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하
 는 질문에 대하여 학부모 48.4%, 교사 48.2%가 ‘초등학교’라고 응답하였다. 학
 교급별로 살펴보면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64.1%, 중학교 40.7%, 고등학교
 4.1.2%,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44.9%, 중학교 48.8%, 고등학교 50.4%가 모두
 동일하게 ‘초등학교’ 시기를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응답하였다

〈표 III-8〉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

구분	영아기 (0-3세)	유아기 (4-5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χ^2
전체	746(4.9)	3,747(24.6)	7,387(48.4)	2,978(19.5)	400(2.6)	15,258(100)	
학 부 모							1,479.248***
초등학교	249(5.1)	1,177(24.0)	3,148(64.1)	319(6.5)	21(0.4)	4,914(100)	
중학교	261(5.1)	1,190(23.1)	2,095(40.7)	1,536(29.9)	60(1.2)	5,142(100)	
고등학교	236(4.5)	1,380(26.5)	2,144(41.2)	1,123(21.6)	319(6.1)	5,202(100)	
교 사							533.677***
전체	1,138(10.1)	3,686(32.7)	5,432(48.2)	947(8.4)	77(0.7)	11,280(100)	

구분	영아기 (0-3세)	유아기 (4-5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χ^2
초등학교	500(13.3)	1,494(39.7)	1,689(44.9)	71(1.9)	9(0.2)	3,763(100)	
사 중학교	269(9.3)	924(32.0)	1,408(48.8)	280(9.7)	4(0.1)	2,885(100)	
고등학교	369(8.0)	1,268(27.4)	2,335(50.4)	596(12.9)	64(1.4)	4,632(100)	

***p<.001 **p<.01 *p<.05

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대한 인식

‘학생의 두발, 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알고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학생은 63.5%, 학부모 73.8%, 교사 92.8% 순으로 학생의 비율이 교사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57.0%, 중학교 69.1%, 고등학교 62.2%,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73.4%, 중학교 78.9%, 고등학교 69.1%,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89.3%, 중학교 94.7%, 고등학교 94.5%로 중학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9〉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규칙 결정

구분	모른다	알고있다	전체	χ^2
전체	11,456(36.5)	19,908(63.5)	31,364(100)	
학				
초등학교	3,637(43.0)	4,829(57.0)	8,466(100)	324.281***
중학교	3,715(30.9)	8,318(69.1)	12,033(100)	
고등학교	4,104(37.8)	6,761(62.2)	10,865(100)	
학				
부				
전체	4,002(26.2)	11,256(73.8)	15,258(100)	130.144***
초등학교	1,307(26.6)	3,607(73.4)	4,914(100)	
중학교	1,085(21.1)	4,057(78.9)	5,142(100)	
고등학교	1,610(30.9)	3,592(69.1)	5,202(100)	
교				
사				
전체	813(7.2)	10,467(92.8)	11,280(100)	103.712***
초등학교	403(10.7)	3,360(89.3)	3,763(100)	
중학교	153(5.3)	2,732(94.7)	2,885(100)	
고등학교	257(5.5)	4,375(94.5)	4,632(100)	

***p<.001 **p<.01 *p<.05

‘학생들이 학급회의,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은 62.9%, 학부모 64.1%, 교사 49.9%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75.4%, 중학교 64.1%, 고등학교 51.7%,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63.9%, 중학교 68.3%, 고등학교 60.0%,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51.6%, 중학교 47.6%, 고등학교 49.9%로 학생과 교사는 초등학교인 반면 학부모는 중학교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10〉 학생의 충분한 학생자치활동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2,577(8.2)	9,065(28.9)	15,994(51.0)	3,728(11.9)	31,364(100)	1,518.57***
	초등학교	327(3.9)	1,750(20.7)	4,795(56.6)	1,594(18.8)	8,466(100)	
	중학교	892(7.4)	3,423(28.4)	6,394(53.1)	1,324(11.0)	12,033(100)	
	고등학교	1,358(12.5)	3,892(35.8)	4,805(44.2)	810(7.5)	10,865(100)	
학부모	전체	686(4.5)	4,800(31.5)	8,420(55.2)	1,352(8.9)	15,258(100)	200.383***
	초등학교	125(2.5)	1,653(33.6)	2,706(55.1)	430(8.8)	4,914(100)	
	중학교	185(3.6)	1,442(28.0)	2,994(58.2)	521(10.1)	5,142(100)	
	고등학교	376(7.2)	1,705(32.8)	2,720(52.3)	401(7.7)	5,202(100)	
교사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39.92***
	초등학교	144(3.8)	1,677(44.6)	1,754(46.6)	188(5.0)	3,763(100)	
	중학교	185(6.4)	1,328(46.0)	1,266(43.9)	106(3.7)	2,885(100)	
	고등학교	291(6.3)	2,031(43.8)	2,111(45.6)	199(4.3)	4,632(100)	

***p<.001 **p<.01 *p<.05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의 학급에서는 학급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중학교 46.2%, 고등학교 48.3%로 개최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1달에 1회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학교 39.8%, 고등학교 38.4%는 1달에 1회 정도 학급회의를 개최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Ⅲ-11〉 학급회의 개최 횟수

구분	매주 1회	2주 1회	1달 1회	없다	전체	χ^2
전체	1942(6.2)	4097(13.1)	12470(39.8)	12855(41.0)	31364(100)	2228.324***
학 초등학교	994(11.7)	1915(22.6)	3516(41.5)	2041(24.1)	8466(100)	
생 중학교	450(3.7)	1234(10.3)	4785(39.8)	5564(46.2)	12033(100)	
고등학교	498(4.6)	948(8.7)	4169(38.4)	5250(48.3)	10865(100)	

***p<.001 **p<.01 *p<.05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회 활동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은 80.9%, 학부모 89.9%, 교사 92.1%로 학생에 비해 학부모와 교사가 필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7.4%, 중학교 77.6%, 고등학교 79.6%,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90.5%, 중학교 89.3%, 고등학교 89.8%,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88.2%, 중학교 93.5%, 고등학교 94.3%로 학생과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12〉 학생회자치활동강화_학생회활동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534(4.9)	4,439(14.2)	18,165(57.9)	7,226(23.0)	31,364(100)	565.112***
학 초등학교	283(3.3)	789(9.3)	4,797(56.7)	2,597(30.7)	8,466(100)	
생 중학교	699(5.8)	1,996(16.6)	6,996(58.1)	2,342(19.5)	12,033(100)	
고등학교	552(5.1)	1,654(15.2)	6,372(58.6)	2,287(21.0)	10,865(100)	
학 부모	221(1.4)	1,330(8.7)	10,646(69.8)	3,061(20.1)	15,258(100)	57.344***
초등학교	25(0.5)	444(9.0)	3,483(70.9)	962(19.6)	4,914(100)	
중학교	82(1.6)	469(9.1)	3,558(69.2)	1,033(20.1)	5,142(100)	
고등학교	114(2.2)	417(8.0)	3,605(69.3)	1,066(20.5)	5,202(100)	
교 사	56(0.5)	840(7.4)	8,155(72.3)	2,229(19.8)	11,280(100)	155.406***
초등학교	27(0.7)	417(11.1)	2,730(72.5)	589(15.7)	3,763(100)	
중학교	13(0.5)	173(6.0)	2,069(71.7)	630(21.8)	2,885(100)	
고등학교	16(0.3)	250(5.4)	3,356(72.5)	1,010(21.8)	4,632(100)	

***p<.001 **p<.01 *p<.05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이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은 84.7%, 학부모 89.0%, 교사 85.6%로 학부모가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7.6%, 중학교 81.5%, 고등학교 85.9%,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88.7%, 중학교 88.7%, 고등학교 89.7%,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79.1%, 중학교 88.6%, 고등학교 89.1%로 학부모와 교사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13〉 학생회자치활동강화_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268(4.0)	3,539(11.3)	16,780(53.5)	9,777(31.2)	31,364(100)		
학생	초등학교	241(2.8)	808(9.5)	4,722(55.8)	2,695(31.8)	8,466(100)	251.171***
	중학교	600(5.0)	1,622(13.5)	6,487(53.9)	3,324(27.6)	12,033(100)	
	고등학교	427(3.9)	1,109(10.2)	5,571(51.3)	3,758(34.6)	10,865(100)	
학부모	전체	196(1.3)	1,475(9.7)	10,135(66.4)	3,452(22.6)	15,258(100)	79.132***
	초등학교	30(.6)	524(10.7)	3,388(68.9)	972(19.8)	4,914(100)	
	중학교	86(1.7)	494(9.6)	3,404(66.2)	1,158(22.5)	5,142(100)	
교사	고등학교	80(1.5)	457(8.8)	3,343(64.3)	1,322(25.4)	5,202(100)	224.191***
	전체	158(1.4)	1,463(13.0)	7,715(68.4)	1,944(17.2)	11,280(100)	
	초등학교	65(1.7)	721(19.2)	2,462(65.4)	515(13.7)	3,763(100)	
	중학교	45(1.6)	285(9.9)	2,024(70.2)	531(18.4)	2,885(100)	
	고등학교	48(1.0)	457(9.9)	3,229(69.7)	898(19.4)	4,632(100)	

***p<.001 **p<.01 *p<.05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동아리활동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은 86.8%, 학부모 92.9%, 교사 94.8%로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6.9%, 중학교 86.1%, 고등학교

교 87.3%,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93.4%, 중학교 92.8%, 고등학교 92.8%,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92.8%, 중학교 95.6%, 고등학교 95.8%로 학생과 교사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학부모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14〉 학생회자치활동강화_동아리활동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086(3.5)	3,064(9.8)	16,106(51.4)	11,108(35.4)	31,364(100)	101.653***	
학 생	초등학교	244(2.9)	862(10.2)	4,101(48.4)	3,259(38.5)		8,466(100)
중학교	478(4.0)	1,193(9.9)	6,451(53.6)	3,911(32.5)	12,033(100)		
고등학교	364(3.4)	1,009(9.3)	5,554(51.1)	3,938(36.2)	10,865(100)		
학 부 모	전체	152(1.0)	923(6.0)	9,888(64.8)	4,295(28.1)	15,258(100)	37.41***
초등학교	18(0.4)	305(6.2)	3,262(66.4)	1,329(27.0)	4,914(100)		
중학교	60(1.2)	315(6.1)	3,304(64.3)	1,463(28.5)	5,142(100)		
고등학교	74(1.4)	303(5.8)	3,322(63.9)	1,503(28.9)	5,202(100)		
교 사	전체	53(0.5)	535(4.7)	7,449(66.0)	3,243(28.8)	11,280(100)	77.903***
초등학교	21(0.6)	247(6.6)	2,564(68.1)	931(24.7)	3,763(100)		
중학교	10(0.3)	116(4.0)	1,893(65.6)	866(30.0)	2,885(100)		
고등학교	22(0.5)	172(3.7)	2,992(64.6)	1,446(31.2)	4,632(100)		

***p<.001 **p<.01 *p<.05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또래 상담, 또래 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학생은 83.9%, 학부모 90.7%, 교사 89.2%로 학부모가 가장 높고, 학생들의 인식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5.8%, 중학교 82.7%, 고등학교 83.9%, 학부모의 경우는 초등학교 90.7%, 중학교 90.3%, 고등학교 90.1%, 교사의 경우는 초등학교 86.5%, 중학교 89.6%, 고등학교 91.1%로 학생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교사와 학부모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15〉 학생자치활동강화_또래 상담, 또래 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1,310(4.2)	3,717(11.9)	17,325(55.2)	9,012(28.7)	31,364(100)	162.654***
초등학교	287(3.4)	917(10.8)	4,401(52.0)	2,861(33.8)	8,466(100)	
중학교	546(4.5)	1,528(12.7)	6,813(56.6)	3,146(26.1)	12,033(100)	
고등학교	477(4.4)	1,272(11.7)	6,111(56.2)	3,005(27.7)	10,865(100)	
학부모	전체 185(1.2)	1,237(8.1)	9,626(63.1)	4,210(27.6)	15,258(100)	34.782***
초등학교	32(0.7)	427(8.7)	3,066(62.4)	1,389(28.3)	4,914(100)	
중학교	70(1.4)	429(8.3)	3,190(62.0)	1,453(28.3)	5,142(100)	
고등학교	83(1.6)	381(7.3)	3,370(64.8)	1,368(26.3)	5,202(100)	
교사	전체 93(0.8)	1,124(10.0)	7,556(67.0)	2,507(22.2)	11,280(100)	46.272***
초등학교	38(1.0)	467(12.4)	2,474(65.7)	784(20.8)	3,763(100)	
중학교	22(0.8)	276(9.6)	1,925(66.7)	662(22.9)	2,885(100)	
고등학교	33(0.7)	381(8.2)	3,157(68.2)	1,061(22.9)	4,632(100)	

***p<.001 **p<.01 *p<.05

2.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 및 응답 현황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는 전국의 초등학교 5,883교, 중학교 3,154교, 고등학교 2,283교 등 총 11,320개 학교의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012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14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별 응답 대상은 총 9명으로 교사 2명, 학생 7명이다. 교사는 생활지도부장 또는 생활지도부 소속 교사 1명과 생활지도부에 소속되지 않은 담임교사 1명이다. 학생은 전교학생회장(어린이 회장) 1명, 학급반장 또는 부반장 3명(학년별 1명으로 하되, 초등학교는 4, 5, 6학년만 대상임), 학생회장·반장·부반장 외 일반학생 3명(학년별 1명) 등이다.

〈표 Ⅲ-16〉 조사대상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학생	교사	학교	학생	교사	학교	학생	교사
합계	5,883	41,181	11,766	3,154	22,078	6,308	2,283	15,981	4,566
서울	591	4,137	1,182	377	2,639	754	314	2,198	628
부산	297	2,079	594	171	1,197	342	142	994	284
대구	216	1,512	432	123	861	246	92	644	184
인천	232	1,624	464	131	917	262	118	826	236
광주	147	1,029	294	86	602	172	66	462	132
대전	141	987	282	87	609	174	61	427	122
울산	119	833	238	61	427	122	52	364	104
세종	20	140	40	9	63	18	5	35	10
경기	1,159	8,113	2,318	586	4,102	1,172	421	2,947	842
강원	353	2,471	706	163	1,141	326	117	819	234
충북	259	1,813	518	130	910	260	82	574	164
충남	412	2,884	824	185	1,295	370	114	798	228
전북	414	2,898	828	208	1,456	416	132	924	264
전남	429	3,003	858	246	1,722	492	156	1,092	312
경북	491	3,437	982	279	1,953	558	193	1,351	386
경남	495	3,465	990	269	1,883	538	188	1,316	376
제주	108	756	216	43	301	86	30	210	60

조사대상은 학생 79,240명, 교사 22,640명 등 총 101,880명인데, 그 중에서 학생 29,180명(36.8%), 교사 11,434명(50.5%) 등 총 40,614명(39.9%)이 응답하여 온라인 설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Ⅲ-17〉 설문조사 대상 및 응답 현황

학교급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상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전체	학생	교사
대상	101,880	79,240	22,640	52,947	41,181	11,766	28,386	22,078	6,308	20,547	15,981	4,566
응답자	40,614	29,180	11,434	19,024	13,304	5,720	12,771	9,505	3,266	8,819	6,371	2,448
응답률(%)	39.9	36.8	50.5	35.9	32.3	48.6	45.0	43.1	51.8	42.9	39.9	53.6

나.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참여와 학생자치

‘학생들은 학교운영에 대해 건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44.2%, 교사는 77.3%가 건의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고 응답해 학생보다 교사가 학생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욕구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33.8%, 중학교는 48.3%, 고등학교는 59.9%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73.6%, 중학교는 79.8%, 고등학교는 82.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욕구를 다소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III-18〉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 희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2,437(8.4)	4,313(14.8)	9,520(32.6)	9,570(32.8)	3,340(11.4)	29,180(100)	2093.594***
학 생	1,883(14.2)	2,491(18.7)	4,431(33.3)	3,369(25.3)	1,130(8.5)	13,304(100)	
중학교	436(4.6)	1,301(13.7)	3,173(33.4)	3,423(36.0)	1,172(12.3)	9,505(100)	
고등학교	118(1.9)	521(8.2)	1,916(30.1)	2,778(43.6)	1,038(16.3)	6,371(100)	
전체	17(0.1)	277(2.4)	2,304(20.2)	7,833(68.5)	1,003(8.8)	11,434(100)	106.688***
교 사	8(0.1)	185(3.2)	1,317(23.0)	3,753(65.6)	457(8.0)	5,720(100)	
중학교	5(0.2)	52(1.6)	602(18.4)	2,304(70.5)	303(9.3)	3,266(100)	
고등학교	4(0.2)	40(1.6)	385(15.7)	1,776(72.5)	243(9.9)	2,448(100)	

***p<.001 **p<.01 *p<.05

한편,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53.8%, 교사는 41.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사보다 학생이 스스로 학교운영 참여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욕구에 대한 조사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로, 교사와 학생이 인식하는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양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57.6%, 중학교는 51.4%, 고등

학교는 49.2%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42.3%, 중학교는 39.3%, 고등학교는 44.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 질수록 학교운영에의 자신들의 참여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교사의 경우, 중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도를 가장 낮게 평가하는 반면, 고등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참여도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표 III-19〉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88(2.7)	2,845(9.7)	9,869(33.8)	11,078(38.0)	4,600(15.8)	29,180(100)	
학생							514.305***
초등학교	401(3.0)	1,056(7.9)	4,184(31.4)	4,937(37.1)	2,726(20.5)	13,304(100)	
중학교	205(2.2)	988(10.4)	3,430(36.1)	3,708(39.0)	1,174(12.4)	9,505(100)	
고등학교	182(2.9)	801(12.6)	2,255(35.4)	2,433(38.2)	700(11.0)	6,371(100)	
교사							40.740***
초등학교	180(1.6)	1,751(15.3)	4,707(41.2)	4,448(38.9)	348(3.0)	11,434(100)	
중학교	87(1.5)	916(16.0)	2,299(40.2)	2,209(38.6)	209(3.7)	5,720(100)	
고등학교	63(1.9)	504(15.4)	1,415(43.3)	1,211(37.1)	73(2.2)	3,266(100)	
고등학교	30(1.2)	331(13.5)	993(40.6)	1,028(42.0)	66(2.7)	2,448(100)	

***p<.001 **p<.01 *p<.05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59.7%, 교사는 63.9%가 제시할 기회가 있다고 응답하여,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의 참여기회가 학생이 인식하는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66.3%, 중학교는 57.0%, 고등학교는 50.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참여기회를 낮게 인식하고 있었고,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65.0%, 중학교는 61.5%, 고등학교는 64.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순으로 참여기회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참여기회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 -20〉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93(2.4)	2,645(9.1)	8,413(28.8)	11,762(40.3)	5,667(19.4)	29,180(100)	1089.903***
학 초등학교	271(2.0)	757(5.7)	3,460(26.0)	5,342(40.2)	3,474(26.1)	13,304(100)	
생 중학교	203(2.1)	977(10.3)	2,901(30.5)	3,957(41.6)	1,467(15.4)	9,505(100)	
고등학교	219(3.4)	911(14.3)	2,052(32.2)	2,463(38.7)	726(11.4)	6,371(100)	
전체	105(0.9)	898(7.9)	3,123(27.3)	6,607(57.8)	701(6.1)	11,434(100)	47.692***
교 초등학교	49(0.9)	461(8.1)	1,491(26.1)	3,293(57.6)	426(7.4)	5,720(100)	
사 중학교	30(0.9)	257(7.9)	972(29.8)	1,861(57.0)	146(4.5)	3,266(100)	
고등학교	26(1.1)	180(7.4)	660(27.0)	1,453(59.4)	129(5.3)	2,448(100)	

***p<.001 **p<.01 *p<.05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58.5%, 교사는 45.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이 교사보다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67.0%, 중학교는 54.0%, 고등학교는 47.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낮은 학교급일수록 본인들의 자치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48.7%, 중학교는 39.4%, 고등학교는 46.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 -21〉 학생들의 자치활동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46(1.5)	1,973(6.8)	9,705(33.3)	11,372(39.0)	5,684(19.5)	29,180(100)	1288.524***
학 초등학교	119(0.9)	474(3.6)	3,807(28.6)	5,448(41.0)	3,456(26.0)	13,304(100)	
생 중학교	166(1.7)	749(7.9)	3,458(36.4)	3,652(38.4)	1,480(15.6)	9,505(100)	
고등학교	161(2.5)	750(11.8)	2,440(38.3)	2,272(35.7)	748(11.7)	6,371(100)	
전체	126(1.1)	1,336(11.7)	4,761(41.6)	4,512(39.5)	699(6.1)	11,434(100)	125.196***
교 초등학교	48(0.8)	573(10.0)	2,312(40.4)	2,353(41.1)	434(7.6)	5,720(100)	
사 중학교	47(1.4)	494(15.1)	1,436(44.0)	1,147(35.1)	142(4.3)	3,266(100)	
고등학교	31(1.3)	269(11.0)	1,013(41.4)	1,012(41.3)	123(5.0)	2,448(100)	

***p<.001 **p<.01 *p<.05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56.3%, 교사는 5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62.1%, 중학교는 54.4%, 고등학교는 47.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치활동 지원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59.8%, 중학교는 57.7%, 고등학교는 62.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중학교에서 가장 낮은 인식도를,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인식도를 보였다. 학생과 교사 모두 학생의 자치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었다.

〈표 III-22〉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540(1.9)	2,132(7.3)	10,083(34.6)	10,929(37.5)	5,496(18.8)	29,180(100)	882.865***
학 생	195(1.5)	666(5.0)	4,180(31.4)	5,006(37.6)	3,257(24.5)	13,304(100)	
중학교	170(1.8)	694(7.3)	3,471(36.5)	3,632(38.2)	1,538(16.2)	9,505(100)	
고등학교	175(2.7)	772(12.1)	2,432(38.2)	2,291(36.0)	701(11.0)	6,371(100)	
교	74(0.6)	703(6.1)	3,832(33.5)	5,911(51.7)	914(8.0)	11,434(100)	60.421***
초등학교	29(0.5)	351(6.1)	1,920(33.6)	2,871(50.2)	549(9.6)	5,720(100)	
중학교	29(0.9)	225(6.9)	1,128(34.5)	1,682(51.5)	202(6.2)	3,266(100)	
고등학교	16(0.7)	127(5.2)	784(32.0)	1,358(55.5)	163(6.7)	2,448(100)	

***p<.001 **p<.01 *p<.05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47.8%, 교사는 26.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특히 교사집단에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49.9%, 중학교는 44.7%, 고등학교는 48.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18.9%, 중학교는 27.4%, 고등학교는 41.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생의 경우, 중학교에

서 그 자율성을 가장 낮게,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교사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도 높아지고 있었다.

〈표 III-23〉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 개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280(4.4)	4,137(14.2)	9,814(33.6)	8,975(30.8)	4,974(17.0)	29,180(100)	242.631***
학 초등학교	635(4.8)	1,838(13.8)	4,202(31.6)	3,907(29.4)	2,722(20.5)	13,304(100)	
생 중학교	401(4.2)	1,420(14.9)	3,434(36.1)	2,939(30.9)	1,311(13.8)	9,505(100)	
고등학교	244(3.8)	879(13.8)	2,178(34.2)	2,129(33.4)	941(14.8)	6,371(100)	
전체	550(4.8)	3,439(30.1)	4,444(38.9)	2,632(23.0)	369(3.2)	11,434(100)	836.426***
교 초등학교	406(7.1)	2,212(38.7)	2,023(35.4)	933(16.3)	146(2.6)	5,720(100)	
사 중학교	100(3.1)	813(24.9)	1,456(44.6)	798(24.4)	99(3.0)	3,266(100)	
고등학교	44(1.8)	414(16.9)	965(39.4)	901(36.8)	124(5.1)	2,448(100)	

***p<.001 **p<.01 *p<.05

‘학급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51.8%, 교사는 33.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이 교사에 비해 학급회의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67.4%, 중학교는 41.9%, 고등학교는 34.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스스로의 학급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43.0%, 중학교는 21.6%, 고등학교는 25.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학급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중학교 교사들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초등학교 교사들이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표 Ⅲ-24〉 학급회의 운영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337(4.6)	3,596(12.3)	9,123(31.3)	9,165(31.4)	5,959(20.4)	29,180(100)	3346.996***
학 생	267(2.0)	763(5.7)	3,303(24.8)	4,781(35.9)	4,190(31.5)	13,304(100)	
중학교	546(5.7)	1,501(15.8)	3,475(36.6)	2,772(29.2)	1,211(12.7)	9,505(100)	
고등학교	524(8.2)	1,332(20.9)	2,345(36.8)	1,612(25.3)	558(8.8)	6,371(100)	
전체	385(3.4)	2,352(20.6)	4,918(43.0)	3,284(28.7)	495(4.3)	11,434(100)	685.194***
교 사	101(1.8)	832(14.5)	2,326(40.7)	2,094(36.6)	367(6.4)	5,720(100)	
중학교	164(5.0)	929(28.4)	1,467(44.9)	634(19.4)	72(2.2)	3,266(100)	
고등학교	120(4.9)	591(24.1)	1,125(46.0)	556(22.7)	56(2.3)	2,448(100)	

***p<.001 **p<.01 *p<.05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85.6%, 교사는 32.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에 큰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1.3%, 중학교는 89.5%, 고등학교는 8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25.5%, 중학교는 36.3%, 고등학교는 43.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짐에 따라 학생과 교사 모두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가 높아지고는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학생과 교사간의 인식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서 그 인식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Ⅲ-25〉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4,186(14.3)	14,075(48.2)	10,919(37.4)	29,180(100)	1081.562***
학 생	2,496(18.8)	5,107(38.4)	5,701(42.9)	13,304(100)	
중학교	999(10.5)	5,149(54.2)	3,357(35.3)	9,505(100)	
고등학교	691(10.8)	3,819(59.9)	1,861(29.2)	6,371(100)	
전체	7,727(67.6)	2,492(21.8)	1,215(10.6)	11,434(100)	298.222***
교 사	4,264(74.5)	930(16.3)	526(9.2)	5,720(100)	
중학교	2,079(63.7)	834(25.5)	353(10.8)	3,266(100)	
고등학교	1,384(56.5)	728(29.7)	336(13.7)	2,448(100)	

***p<.001 **p<.01 *p<.05

‘학생회는 필요한 비용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31.8%, 교사는 9.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에 대해서는 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5.0%, 중학교는 31.4%, 고등학교는 4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5.7%, 중학교는 9.9%, 고등학교는 15.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회 활동에 대한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26〉 학생회의 필요한 비용 학교에 요청 가능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4,315(14.8)	9,280(31.8)	15,585(53.4)	29,180(100)	930.582***
학 초등학교	2,249(16.9)	3,332(25.0)	7,723(58.1)	13,304(100)	
생 중학교	1,306(13.7)	2,986(31.4)	5,213(54.8)	9,505(100)	
고등학교	760(11.9)	2,962(46.5)	2,649(41.6)	6,371(100)	
전체	8,604(75.2)	1,026(9.0)	1,804(15.8)	11,434(100)	344.986***
교 초등학교	4,662(81.5)	324(5.7)	734(12.8)	5,720(100)	
사 중학교	2,391(73.2)	323(9.9)	552(16.9)	3,266(100)	
고등학교	1,551(63.4)	379(15.5)	518(21.2)	2,448(100)	

***p<.001 **p<.01 *p<.05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은 22.5%, 교사는 32.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2.8%, 중학교는 21.3%, 고등학교는 23.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25.5%, 중학교는 36.0%, 고등학교는 42.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회 예결산 공개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 모두 고등학교에서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7〉 학생회 예·결산 학생 공개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8,963(30.7)	6,574(22.5)	13,643(46.8)	29,180(100)	370.775***
학생	3,442(25.9)	3,034(22.8)	6,828(51.3)	13,304(100)	
중학교	3,135(33.0)	2,026(21.3)	4,344(45.7)	9,505(100)	
고등학교	2,386(37.5)	1,514(23.8)	2,471(38.8)	6,371(100)	
전체	5,794(50.7)	3,669(32.1)	1,971(17.2)	11,434(100)	467.914***
교사	3,446(60.2)	1,458(25.5)	816(14.3)	5,720(100)	
중학교	1,470(45.0)	1,175(36.0)	621(19.0)	3,266(100)	
고등학교	878(35.9)	1,036(42.3)	534(21.8)	2,448(100)	

***p<.001 **p<.01 *p<.05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시 성적 등에 의해 자격을 제한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20.8%, 교사는 11.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급 및 학생 간부로 진출하는 장벽은 학생이 더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15.6%, 중학교는 23.5%, 고등학교는 2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4.1%, 중학교는 18.6%, 고등학교는 21.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수 모두 일관되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급 및 학생간부로의 진입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28〉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시 성적 등에 의해 자격 제한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6,020(54.9)	6,084(20.8)	7,076(24.2)	29,180(100)	483.565***
학생	7,712(58.0)	2,073(15.6)	3,519(26.5)	13,304(100)	
중학교	4,965(52.2)	2,236(23.5)	2,304(24.2)	9,505(100)	
고등학교	3,343(52.5)	1,775(27.9)	1,253(19.7)	6,371(100)	
전체	9,726(85.1)	1,361(11.9)	347(3.0)	11,434(100)	717.030***
교사	5,355(93.6)	236(4.1)	129(2.3)	5,720(100)	
중학교	2,547(78.0)	609(18.6)	110(3.4)	3,266(100)	
고등학교	1,824(74.5)	516(21.1)	108(4.4)	2,448(100)	

***p<.001 **p<.01 *p<.05

‘학교에 학생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31.8%, 교사는 29.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23.4%, 중학교는 31.9%, 고등학교는 4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14.9%, 중학교는 35.4%, 고등학교는 55.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그렇다는 응답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9〉 학생회실 설치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2,393(42.5)	9,272(31.8)	7,515(25.8)	29,180(100)	1479.098***
학 초등학교	6,779(51.0)	3,113(23.4)	3,412(25.6)	13,304(100)	
생 중학교	3,787(39.8)	3,029(31.9)	2,689(28.3)	9,505(100)	
고등학교	1,827(28.7)	3,130(49.1)	1,414(22.2)	6,371(100)	
전체	7,628(66.7)	3,376(29.5)	430(3.8)	11,434(100)	1523.688***
교 초등학교	4,685(81.9)	853(14.9)	182(3.2)	5,720(100)	
사 중학교	1,972(60.4)	1,155(35.4)	139(4.3)	3,266(100)	
고등학교	971(39.7)	1,368(55.9)	109(4.5)	2,448(100)	

***p<.001 **p<.01 *p<.05

‘학생회실이 없다면, 학생회실이 필요한 경우(전교 학생회의 등)에 주로 활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학생들은 일반교실 30.7%, 교과교실 22.7%, 도서관 16.7%, 다목적실 13.0%, 강당·시청각실 11.7%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일반교실을 가장 높게 응답(49.6%)한 반면, 중학교는 도서관을(27.9%), 고등학교는 다목적실을(25.8%) 가장 높게 응답하여 학교급별에 따라 학생들이 자치활동에 사용하는 학교시설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학생회실이 없는 경우 학생회의 활용 장소

구분	일반교실	교과교실	도서관	다목적실	강당, 시청각실	기타	전체	χ^2
전체	3809(30.7)	2814(22.7)	2,067(16.7)	1,617(13.0)	1,446(11.7)	640(5.2)	12,398(100)	2917.726***
학 생	3,359(49.6)	1,422(21.0)	668(9.9)	545(8.0)	492(7.3)	293(4.3)	6,779(100)	
중학교	319(8.4)	992(26.2)	1,055(27.9)	600(15.8)	576(15.2)	245(6.5)	3,787(100)	
고등학교	131(7.2)	400(21.9)	344(18.8)	472(25.8)	378(20.7)	102(5.6)	1,827(100)	
전체	2,375(31.1)	1,619(21.2)	1,252(16.4)	1,199(15.7)	947(12.4)	236(3.1)	7,628(100)	2031.520***
교 사	2,268(48.4)	977(20.9)	493(10.5)	469(10.0)	367(7.8)	111(2.4)	4,685(100)	
중학교	79(4.0)	468(23.7)	575(29.2)	403(20.4)	363(18.4)	84(4.3)	1,972(100)	
고등학교	28(2.9)	174(17.9)	184(18.9)	327(33.7)	217(22.3)	41(4.2)	971(100)	

***p<.001 **p<.01 *p<.05

다. 학교규칙 운영 실태

학교규칙에 대한 설문문항 중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89.7%, 교사는 95.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은 학생과 교사 모두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8.5%, 중학교는 91.3%, 고등학교는 90.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94.3%, 중학교는 97.6%, 고등학교는 97.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에 대한 인식은 교사와 학생 모두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 학교규칙 인지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26,185(89.7)	2,995(10.3)	29,180(100)	49.955***
학 생	11,769(88.5)	1,535(11.5)	13,304(100)	
중학교	8,680(91.3)	825(8.7)	9,505(100)	
고등학교	5,736(90.0)	635(10.0)	6,371(100)	
전체	10,965(95.9)	469(4.1)	11,434(100)	76.075***
교 사	5,393(94.3)	327(5.7)	5,720(100)	
중학교	3,188(97.6)	78(2.4)	3,266(100)	
고등학교	2,384(97.4)	64(2.6)	2,448(100)	

***p<.001 **p<.01 *p<.05

복수응답이 가능했던 ‘학교규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학생은 가정통신문 50.7%, 학교홈페이지 48.0%, 유인물 39.3%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교사는 학교홈페이지 67.9%, 유인물 60.7%, 가정통신문 48.3%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가 학교규칙을 알게 되는 주요 매개체로 나타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가정통신문과 유인물이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에는 모든 학교급에서 학교 홈페이지와 유인물이 학교규칙을 알게 되는 주요 통로로 나타났다.

〈표 III-32〉 학교규칙을 알게 된 경로

구분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설명회	유인물	게시판	교내방송	학교운영위원회회의	전교생조회시	기타	전체
전체	14922(57.0)	12568(48.0)	4667(17.8)	10284(39.3)	8102(30.9)	8420(32.2)	4509(17.2)	8784(33.5)	1,609(6.1)	26,185
학생										
초등학교	7236(61.5)	7,105(60.4)	1,488(12.6)	2,069(17.6)	3,774(32.1)	3,766(32.0)	1,497(12.7)	3,707(31.5)	949(8.1)	11,769
중학교	4897(56.4)	3,391(39.1)	1,784(20.6)	4,794(55.2)	2,549(29.4)	2,720(31.3)	1,786(20.6)	2,974(34.3)	403(4.6)	8,680
고등학교	2,789(48.6)	2,072(36.1)	1,395(24.3)	3,421(59.6)	1,779(31.0)	1,934(33.7)	1,226(21.4)	2,103(36.7)	257(4.5)	5,736
교사										
전체	5,291(48.3)	7,445(67.9)	3,847(35.1)	6,656(60.7)	2,107(19.2)	1,485(13.5)	2,376(21.7)	2,242(20.4)	1,056(9.6)	10,965
초등학교	2,615(48.5)	3,781(70.1)	1,718(31.9)	2,715(50.3)	750(13.9)	441(8.2)	1,250(23.2)	836(15.5)	514(9.5)	5,393
중학교	1,637(51.3)	2,067(64.8)	1,296(40.7)	2,241(70.3)	718(22.5)	619(19.4)	650(20.4)	841(26.4)	305(9.6)	3,188
고등학교	1,039(43.6)	1,597(67.0)	833(34.9)	1,700(71.3)	639(26.8)	425(17.8)	476(20.0)	565(23.7)	237(9.9)	2,384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46.7%, 교사는 80.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의 제·개정하는 경험은 학생보다 교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38.4%, 중학교는 53.3%, 고등학교는 54.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교규칙 제·개정경험 많았으며, 교사의 경우 중학교가 88.6%로, 교사의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 경험은 중학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3〉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3,635(46.7)	3,496(12.0)	12,049(41.3)	29,180(100)	784.941***
학 초등학교	5,113(38.4)	1,649(12.4)	6,542(49.2)	13,304(100)	
생 중학교	5,063(53.3)	979(10.3)	3,463(36.4)	9,505(100)	
고등학교	3,459(54.3)	868(13.6)	2,044(32.1)	6,371(100)	
전체	9,250(80.9)	2,184(19.1)	-	11,434(100)	21.788***
교 초등학교	4,535(79.3)	1,185(20.7)	-	5,720(100)	
사 중학교	2,718(83.2)	548(16.8)	-	3,266(100)	
고등학교	1,997(81.6)	451(18.4)	-	2,448(100)	

***p<.001 **p<.01 *p<.0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84.6%, 교사는 8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85.9%, 중학교는 85.1%, 고등학교는 81.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의 학교규칙 제·개정참여율이 낮았으며, 교사의 경우 중학교가 88.6%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표 Ⅲ-34〉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11,534(84.6)	2,101(15.4)	13,635(100)	26.698***
학 초등학교	4,390(85.9)	723(14.1)	5,113(100)	
생 중학교	4,311(85.1)	752(14.9)	5,063(100)	
고등학교	2,833(81.9)	626(18.1)	3,459(100)	
전체	7,615(82.3)	1,635(17.7)	9,250(100)	243.976***
교 초등학교	3,447(76.0)	1,088(24.0)	4,535(100)	
사 중학교	2,407(88.6)	311(11.4)	2,718(100)	
고등학교	1,761(88.2)	236(11.8)	1,997(100)	

***p<.001 **p<.01 *p<.0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57.6%, 교사는 87.3%가 그렇다고 응

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부모의 학교규칙 제·개정 참여율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35〉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부모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7,894(57.9)	1,185(8.7)	4,556(33.4)	13,635(100)	165.866***
학 초등학교	3,178(62.2)	435(8.5)	1,500(29.3)	5,223(100)	
생 중학교	3,013(59.5)	364(7.2)	1,686(33.3)	5,063(100)	
고등학교	1,703(49.2)	386(11.2)	1,370(39.6)	3,459(100)	
전체	8,074(87.3)	1,176(12.7)	-	9,250(100)	40.902***
교 초등학교	4,017(88.6)	518(11.4)	-	4,535(100)	
사 중학교	2,398(88.2)	320(11.8)	-	2,718(100)	
고등학교	1,659(83.1)	338(16.9)	-	1,997(100)	

***p<.001 **p<.01 *p<.05

교사들만 응답대상이었던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98.0%의 교사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사가 학교규칙 제·개정 주체로 참여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표 III-36〉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교사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9,067(98.0)	183(0.2)	9,250(100)	5.544
교 초등학교	4,442(97.9)	93(2.1)	4,535(100)	
사 중학교	2,677(98.5)	41(1.5)	2,718(100)	
고등학교	1,948(97.5)	49(2.5)	1,997(100)	

***p<.001 **p<.01 *p<.0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토론회, 공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54.7%, 교사는 69.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교사보다는 학생의 의견수렴의 통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은 초등학교 64.7%, 중학교 52.6%, 고등학교 43.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교사는 초등학교 71.3%, 중학교 69.6%, 고등학교 63.0%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의견수렴의 통로가 다양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III-37〉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371(2.7)	897(6.6)	3,328(24.4)	4,789(35.1)	2,669(19.6)	1,581(11.6)	13,635(100)	
학생	초등학교	65(1.3)	112(2.2)	936(18.3)	1,860(36.4)	1,446(28.3)	694(13.6)	923.632***
	중학교	135(2.7)	376(7.4)	1,349(26.6)	1,839(36.3)	825(16.3)	539(10.6)	
	고등학교	171(4.9)	409(11.8)	1,043(30.2)	1,090(31.5)	398(11.5)	348(10.1)	
교사	초등학교	73(0.8)	392(4.2)	2,403(26.0)	4,363(47.2)	2,019(21.8)	- 9,250(100)	115.717***
	중학교	33(0.7)	189(4.2)	1,079(23.8)	2,068(45.6)	1,166(25.7)	- 4,535(100)	
	고등학교	22(0.8)	105(3.9)	701(25.8)	1,334(49.1)	556(20.5)	- 2,718(100)	
고등학교	18(0.9)	98(4.9)	623(31.2)	961(48.1)	297(14.9)	- 1,997(100)		

***p<.001 **p<.01 *p<.05

‘우리학교는 학교규칙의 준수·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46.8%, 교사는 59.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대해서도 학생이 교사보다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1.2%, 중학교 44.8%, 고등학교 40.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규칙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교사의 경우 중학교가 62.1%로 가장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한 반면, 초등학교가 57.1로 가장 낮은 비율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여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교사간 학교규칙 홍보활동에 대한 인식의 차가 큼을 시사하였다.

〈표 III-38〉 학교규칙의 준수·실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실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874(3.0)	3,260(11.2)	11,397(39.1)	9,663(33.1)	3,986(13.7)	29,180(100)	490.884***
학 생	385(2.9)	1,154(8.7)	4,959(37.3)	4,457(33.5)	2,349(17.7)	13,304(100)	
중학교	246(2.6)	1,220(12.8)	3,784(39.8)	3,181(33.5)	1,074(11.3)	9,505(100)	
고등학교	243(3.8)	886(13.9)	2,654(41.7)	2,025(31.8)	563(8.8)	6,371(100)	
전체	71(0.6)	686(6.0)	3,896(34.1)	5,576(48.8)	1,205(10.5)	11,434(100)	114.969***
교 사	41(0.7)	431(7.5)	1,982(34.7)	2,589(45.3)	677(11.8)	5,720(100)	
중학교	16(0.5)	123(3.8)	1,101(33.7)	1,681(51.5)	345(10.6)	3,266(100)	
고등학교	14(0.6)	132(5.4)	813(33.2)	1,306(53.3)	183(7.5)	2,448(100)	

***p<.001 **p<.01 *p<.05

‘우리학교는 학교규칙과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53.4%, 교사는 31.1%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교규칙의 준수노력에 대한 부분은 학생이 교사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53.0%, 중학교 39.0%, 고등학교 29.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 34.0%, 중학교 29.4%, 고등학교 26.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학교규칙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III-39〉 학교규칙 관련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노력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002(3.4)	3,665(12.6)	11,857(40.6)	8,959(30.7)	3,697(12.7)	29,180(100)	1590.936***
학 생	286(2.1)	1,068(8.0)	4,894(36.8)	4,609(34.6)	2,447(18.4)	13,304(100)	
중학교	330(3.5)	1,364(14.4)	4,107(43.2)	2,833(29.8)	871(9.2)	9,505(100)	
고등학교	386(6.1)	1,233(19.4)	2,856(44.8)	1,517(23.8)	379(5.9)	6,371(100)	
전체	253(2.2)	2,393(20.9)	5,239(45.8)	2,981(26.1)	568(5.0)	11,434(100)	105.710***
교 사	116(2.0)	1,071(18.7)	2,588(45.2)	1,575(27.5)	370(6.5)	5,720(100)	
중학교	69(2.1)	729(22.3)	1,507(46.1)	823(25.2)	138(4.2)	3,266(100)	
고등학교	68(2.8)	593(24.2)	1,144(46.7)	583(23.8)	60(2.5)	2,448(100)	

***p<.001 **p<.01 *p<.05

라.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운영 실태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설문문항 중 ‘동아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69.5%, 교사는 67.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70.8%, 중학교는 70.6%, 고등학교는 64.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64.9%, 중학교는 67.8%, 고등학교는 72.4%로 학생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교사는 학교급이 높을수록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0〉 동아리활동 활성화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84(2.7)	1,764(6.0)	6,374(21.8)	11,223(38.5)	9,035(31.0)	29,180(100)	455.720***
학생							
초등학교	361(2.7)	654(4.9)	2,876(21.6)	4,584(34.5)	4,829(36.3)	13,304(100)	
중학교	255(2.7)	603(6.3)	1,938(20.4)	4,001(42.1)	2,708(28.5)	9,505(100)	
고등학교	168(2.6)	507(8.0)	1,560(24.5)	2,638(41.4)	1,498(23.5)	6,371(100)	
교사							103.189***
전체	77(0.7)	622(5.4)	3,035(26.5)	5,618(49.1)	2,082(18.2)	11,434(100)	
초등학교	43(0.8)	399(7.0)	1,566(27.4)	2,671(46.7)	1,041(18.2)	5,720(100)	
중학교	20(0.6)	132(4.0)	898(27.5)	1,702(52.1)	514(15.7)	3,266(100)	
고등학교	14(0.6)	91(3.7)	571(23.3)	1,245(50.9)	527(21.5)	2,448(100)	

***p<.001 **p<.01 *p<.05

‘동아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은 60.5%, 교사는 66.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에 비해 교사의 응답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65.6%, 중학교는 61.1%, 고등학교는 4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64.9%, 중학교는 68.4%, 고등학교는 69.5%로 학생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교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41〉 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919(3.1)	2,239(7.7)	8,353(28.6)	10,540(36.1)	7,129(24.4)	29,180(100)	925.721***
학 생	370(2.8)	668(5.0)	3,535(26.6)	4,739(35.6)	3,992(30.0)	13,304(100)	
중학교	280(2.9)	701(7.4)	2,713(28.5)	3,681(38.7)	2,130(22.4)	9,505(100)	
고등학교	269(4.2)	870(13.7)	2,105(33.0)	2,120(33.3)	1,007(15.8)	6,371(100)	
전체	89(0.8)	580(5.1)	3,116(27.3)	5,484(48.0)	2,165(18.9)	11,434(100)	70.819**
교 사	44(0.8)	356(6.2)	1,608(28.1)	2,581(45.1)	1,131(19.8)	5,720(100)	
중학교	22(0.7)	116(3.6)	892(27.3)	1,689(51.7)	547(16.7)	3,266(100)	
고등학교	23(0.9)	108(4.4)	616(25.2)	1,214(49.6)	487(19.9)	2,448(100)	

***p<.001 **p<.01 *p<.05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 단위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은 30.8%, 교사는 22.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31.9%, 중학교는 31.1%, 고등학교는 27.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23.4%, 중학교는 23.0%, 고등학교는 21.6%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동일한 동아리활동을 하는 비율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표 III-42〉 학교에서 학급, 학년 단위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동아리 실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799(16.4)	8,322(28.5)	7,080(24.3)	5,737(19.7)	3,242(11.1)	29,180(100)	188.668***
학 생	2,112(15.9)	3,538(26.6)	3,404(25.6)	2,532(19.0)	1,718(12.9)	13,304(100)	
중학교	1,673(17.6)	2,791(29.4)	2,086(21.9)	1,926(20.3)	1,029(10.8)	9,505(100)	
고등학교	1,014(15.9)	1,993(31.3)	1,590(25.0)	1,279(20.1)	495(7.8)	6,371(100)	
전체	208(17.8)	4,765(41.7)	2,015(17.6)	2,094(18.3)	524(4.6)	11,434(100)	34.393***
교 사	960(16.8)	2,356(41.2)	1,065(18.6)	1,046(18.3)	293(5.1)	5,720(100)	
중학교	568(17.4)	1,376(42.1)	571(17.5)	615(18.8)	136(4.2)	3,266(100)	
고등학교	508(20.8)	1,033(42.2)	379(15.5)	433(17.7)	95(3.9)	2,448(100)	

***p<.001 **p<.01 *p<.05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

한 비율은 학생은 38.6%, 교사는 47.1%로 학생보다 교사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31.2%, 중학교는 36.8%, 고등학교는 5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31.7%, 중학교는 54.8%, 고등학교는 72.9%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교사의 경우 학교급별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43〉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신설 가능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2,690(9.2)	6,026(20.7)	9,200(31.5)	7,245(24.8)	4,019(13.8)	29,180(100)	1416.267***
학 초등학교	1,558(11.7)	3,242(24.4)	4,353(32.7)	2,550(19.2)	1,601(12.0)	13,304(100)	
생 중학교	864(9.1)	2,028(21.3)	3,120(32.8)	2,362(24.9)	1,131(11.9)	9,505(100)	
고등학교	268(4.2)	756(11.9)	1,727(27.1)	2,333(36.6)	1,287(20.2)	6,371(100)	
전체	293(2.6)	2,163(18.9)	3,590(31.4)	4,282(37.4)	1,106(9.7)	11,434(100)	1477.606***
교 초등학교	225(3.9)	1,591(27.8)	2,089(36.5)	1,477(25.8)	338(5.9)	5,720(100)	
사 중학교	55(1.7)	415(12.7)	1,007(30.8)	1,478(45.3)	311(9.5)	3,266(100)	
고등학교	13(0.5)	157(6.4)	494(20.2)	1,327(54.2)	457(18.7)	2,448(100)	

***p<.001 **p<.01 *p<.05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동아리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은 49.4%, 교사는 81.6%로 교사의 응답비율이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49.1%, 중학교는 45.9%, 고등학교는 55.0%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78.7%, 중학교는 82.4%, 고등학교는 87.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졌다.

〈표 III-44〉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동아리활동 기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549(1.9)	865(3.0)	4849(16.6)	8454(29.0)	5943(20.4)	8520(29.2)	29180(100)	1138.591***
학 생								
초등학교	299(2.2)	350(2.6)	1774(13.3)	3203(24.1)	3322(25.0)	4356(32.7)	13304(100)	
중학교	159(1.7)	271(2.9)	1690(17.8)	2824(29.7)	1542(16.2)	3019(31.8)	9505(100)	
고등학교	91(1.4)	244(3.8)	1385(21.7)	2427(38.1)	1079(16.9)	1,145(18.0)	6,371(100)	
교 사								221.941***
전체	41(0.4)	222(1.9)	1837(16.1)	6372(55.7)	2962(25.9)	-	11,434(100)	
초등학교	25(0.4)	184(3.2)	1,014(17.7)	2898(50.7)	1,599(28.0)	-	5,720(100)	
중학교	9(0.3)	28(0.9)	538(16.5)	1,976(60.5)	715(21.9)	-	3,266(100)	
고등학교	7(0.3)	10(0.4)	285(11.6)	1,498(61.2)	648(26.5)	-	2,448(100)	

***p<.001 **p<.01 *p<.05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은 62.0%, 교사는 64.9%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64.3%, 중학교는 64.5%, 고등학교는 53.6%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59.1%, 중학교는 70.6%, 고등학교는 70.7%로 학생은 초등학교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교사는 고등학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45〉 봉사활동 활성화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86(1.7)	1,491(5.1)	9,116(31.2)	11,257(38.6)	6,830(23.4)	29,180(100)	621.239***
학 생							
초등학교	240(1.8)	635(4.8)	3,885(29.2)	4,745(35.7)	3,799(28.6)	13,304(100)	
중학교	123(1.3)	363(3.8)	2,891(30.4)	4,107(43.2)	2,021(21.3)	9,505(100)	
고등학교	123(1.9)	493(7.7)	2,340(36.7)	2,405(37.7)	1,010(15.9)	6,371(100)	
교 사							208.677***
전체	42(0.4)	473(4.1)	3,499(30.6)	5,516(48.2)	1,904(16.7)	11,434(100)	
초등학교	23(0.4)	328(5.7)	1,988(34.8)	2,455(42.9)	926(16.2)	5,720(100)	
중학교	10(0.3)	69(2.1)	879(26.9)	1,758(53.8)	550(16.8)	3,266(100)	
고등학교	9(0.4)	76(3.1)	632(25.8)	1,303(53.2)	428(17.5)	2,448(100)	

***p<.001 **p<.01 *p<.05

‘봉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은 56.0%, 교사는 65.8%로 학생에 비해 교사의 응답비율이 1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59.2%, 중학교는 58.0%, 고등학교는 46.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59.9%, 중학교는 72.9%, 고등학교는 70.3%로 학생의 경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낮아졌고, 교사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아졌다.

〈표 III-46〉 학교의 봉사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09(2.1)	1,898(6.5)	10,307(35.3)	10,107(34.6)	6,259(21.4)	29,180(100)	561.796***
학 생	261(2.0)	668(5.0)	4,488(33.7)	4,502(33.8)	3,385(25.4)	13,304(100)	
중학교	166(1.7)	564(5.9)	3,261(34.3)	3,577(37.6)	1,937(20.4)	9,505(100)	
고등학교	182(2.9)	666(10.5)	2,558(40.2)	2,028(31.8)	937(14.7)	6,371(100)	
전체	46(0.4)	437(3.8)	3,424(29.9)	5,454(47.7)	2,073(18.1)	11,434(100)	222.412***
교 사	24(0.4)	305(5.3)	1,966(34.4)	2,420(42.3)	1,005(17.6)	5,720(100)	
중학교	10(0.3)	65(2.0)	810(24.8)	1,777(54.4)	604(18.5)	3,266(100)	
고등학교	12(0.5)	67(2.7)	648(26.5)	1,257(51.3)	464(19.0)	2,448(100)	

***p<.001 **p<.01 *p<.05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봉사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생은 59.2%, 교사는 89.9%로 학생에 비해 교사의 응답비율이 30% 이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53.7%, 중학교는 64.3%, 고등학교는 63.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교사의 경우 초등학교는 87.2%, 중학교는 92.8%, 고등학교는 92.3%로 학생과 교사 모두 중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47〉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기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324(1.1)	465(1.6)	4314(14.8)	9201(31.5)	8091(27.7)	6785(23.3)	29180(100)	1316.610***
학 생	187(1.4)	223(1.7)	1,715(12.9)	3,253(24.5)	3,881(29.2)	4,045(30.4)	13,304(100)	
초등학교	81(0.9)	114(1.2)	1,294(13.6)	3,371(35.5)	2,740(28.8)	1,905(20.0)	9,505(100)	
고등학교	56(0.9)	128(2.0)	1,305(20.5)	2,577(40.4)	1,470(23.1)	835(13.1)	6,371(100)	
전체	12(0.1)	76(0.7)	1,066(9.3)	5,960(52.1)	4,320(37.8)	-	11,434(100)	120.025***
교 사	4(0.1)	60(1.0)	667(11.7)	2,940(51.4)	2,049(35.8)	-	5,720(100)	
초등학교	3(0.1)	12(0.4)	220(6.7)	1,674(51.3)	1,357(41.5)	-	3,266(100)	
고등학교	5(0.2)	4(0.2)	179(7.3)	1,346(55.0)	914(37.3)	-	2,448(100)	

***p<.001 **p<.01 *p<.05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으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스포츠활동(30.1%), 학술활동(28.4%), 문화예술(19.0%), 청소년 단체활동(10.5%), 실습노작활동(3.7%), 기타(8.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 학술활동(27.6%), 스포츠활동(26.4%), 중학교는 스포츠활동(41.1), 학술활동(23.4), 고등학교는 학술활동(37.4), 문화예술활동(22.0%)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학술활동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반면에 중학교에서는 스포츠활동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48〉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구분	학술	문화 예술	스포츠	실습 노작	청소년 단체	기타	전체	χ^2
전체	8275(28.4)	5544(19.0)	8787(30.1)	1,087(3.7)	3,054(10.5)	2,433(8.3)	29180(100)	1950.239***
학 생	3,669(27.6)	2,260(17.0)	3,512(26.4)	435(3.3)	2,237(16.8)	1,191(9.0)	13,304(100)	
초등학교	2,223(23.4)	1,885(19.8)	3,906(41.1)	432(4.5)	393(4.1)	666(7.0)	9,505(100)	
고등학교	2,383(37.4)	1,399(22.0)	1,369(21.5)	220(3.5)	424(6.7)	576(9.0)	6,371(100)	

***p<.001 **p<.01 *p<.05

‘현재 속한 교육과정 내 동아리반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37.2%),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28.9%),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0.3%)의 이유가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49〉 교육과정 내 동아리반 선택 이유

구분	진학에 도움	진로와 관계	친구와 함께 활동	희망 동아리 인원 제한	어떤 동아리나 상관없음	기타	전체	χ^2
전체	3,016(10.3)	8,445(28.9)	10,864(37.2)	1,638(5.6)	1,818(6.2)	3,399(11.6)	29,180(100)	619.797***
학 생								
초등학교	1,378(10.4)	3,748(28.2)	5,138(38.6)	636(4.8)	793(6.0)	1,611(12.1)	13,304(100)	
중학교	858(9.0)	2,243(23.6)	3,952(41.6)	641(6.7)	622(6.5)	1,189(12.5)	9,505(100)	
고등학교	780(12.2)	2,454(38.5)	1,774(27.8)	361(5.7)	403(6.3)	599(9.4)	6,371(100)	

***p<.001 **p<.01 *p<.05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 외에 본인이 속한 개별적인 동아리가 또 있다면 어떤 동아리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초등학교(27.7%), 중학교(38.0%), 고등학교(36.5%)로 모든 급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개별적인 동아리를 하는 경우는 초등학교에서는 스포츠 활동 동아리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고등학교의 경우 학술활동 동아리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50〉 교육과정 동아리 외 개별 동아리

구분	학술 활동	문화 예술 활동	스포츠 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	개별적 동아리 활동 안 함	기타	전체	χ^2
전체	4,514(15.5)	3,494(12.0)	6,667(22.8)	862(3.0)	2,837(9.7)	9,617(33.0)	1,189(4.1)	29,180(100)	1099.425***
학 생									
초등학교	2,272(17.1)	1,421(10.7)	3,083(23.2)	409(3.1)	1,862(14.0)	3,681(27.7)	576(4.3)	13,304(100)	
중학교	1,087(11.4)	1,225(12.9)	2,532(26.6)	286(3.0)	463(4.9)	3,608(38.0)	304(3.2)	9,505(100)	
고등학교	1,155(18.1)	848(13.3)	1,052(16.5)	167(2.6)	512(8.0)	2,328(36.5)	309(4.9)	6,371(100)	

***p<.001 **p<.01 *p<.05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취미 생활을 위해서(28.1%),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25.6%),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24.3%),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0.7%),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6.3%)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취미생활을 위해서가 초등학교 28.5%, 중학교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가 초등학교 27.3%, 중학교 26.8%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고등학교는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가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취미 생활을 위해서가 22.5%로 나타났다.

〈표 III-51〉 개별 동아리 선택 동기

구분	진학에 도움	진로와 관계	친구와 함께 활동	취미 생활	학업 스트레스	기타	전체	χ^2
전체	2,095(10.7)	4,763(24.3)	5,007(25.6)	5,497(28.1)	1,239(6.3)	962(4.9)	19,563(100)	
학 생								442.954***
초등학교	969(10.1)	2,298(23.9)	2,625(27.3)	2,744(28.5)	471(4.9)	516(5.4)	9,623(100)	
중학교	563(9.5)	1,140(19.3)	1,582(26.8)	1,844(31.3)	489(8.3)	279(4.7)	5,897(100)	
고등학교	563(13.9)	1,325(32.8)	800(19.8)	909(22.5)	279(6.9)	167(4.1)	4,043(100)	

***p<.001 **p<.01 *p<.05

‘학기 중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평균 2.65시간이라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2.63시간, 중학교 2.68시간, 고등학교 2.65 시간으로 학교급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II-52〉 학기 중 개별 동아리활동 참여 시간

구분	평균	사례수	표준편차
전체	2.65	19,563	3.389
학 생			
초등학교	2.63	9,623	3.642
중학교	2.68	5,897	2.983
고등학교	2.65	4,043	3.324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초등학교(35.0%), 중학교(38.6%), 고등학교(34.5%) 모든 급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그 밖의 이유로는 초등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외 동아리가 없어서가 29.7%, 고등학교에서는 32.4%로 높게 나타났고, 중학교에서는 시간이 없어서가 29.9%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3〉 개별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구분	시간이 없어서	부모님의 반대로	교육과정 외 동아리가 없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기타	전체	χ^2
전체	2,752(28.6)	135(1.4)	2,861(29.7)	3,483(36.2)	386(4.0)	9,617(100)	
학							88.141 ***
생 초등학교	1,043(28.3)	89(2.4)	1,113(30.2)	1,288(35.0)	148(4.0)	3,681(100)	
중학교	1,077(29.9)	33(0.9)	994(27.5)	1,392(38.6)	112(3.1)	3,608(100)	
고등학교	632(27.1)	13(0.6)	754(32.4)	803(34.5)	126(5.4)	2,328(100)	

***p<.001 **p<.01 *p<.05

‘학교일과 중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급 단위로 담임선생님과 함께(41.9%), 학년 전체가 똑같은 시간에(39.7%), 동아리 단위로 동아리 지도 선생님과 함께(18.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급 단위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하는 비율이 57.4%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년 전체가 똑같은 시간에 운영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교 52.5%, 고등학교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III-54〉 학교일과 중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 운영 방안

구분	학급 단위로 담임선생님과 함께	학년 전체가 똑같은 시간에	동아리 단위로 동아리 지도 선생님과 함께	전체	χ^2
전체	12,218(41.9)	11,597(39.7)	5,365(18.4)	29,180(100)	
학					2781.374 ***
생 초등학교	7,636(57.4)	3,389(25.5)	2,279(17.1)	13,304(100)	
중학교	2,906(30.6)	4,988(52.5)	1,611(16.9)	9,505(100)	
고등학교	1,676(26.3)	3,220(50.5)	1,475(23.2)	6,371(100)	

***p<.001 **p<.01 *p<.05

‘개인 봉사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54.5%의 학생들이 개인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17.3%의 학생이 학기중 방과후 평일 오후라고 응답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여름방학(46.2%, 28.0%), 학기 중 주말(17.7%, 24.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55〉 개인 봉사활동 실시 시기

구분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기 중 방과 후 평일 오후	학기 중 주말	개인 봉사활동 하지 않음	전체	χ^2
전체	8,206(28.1)	3,001(10.3)	3,472(11.9)	4,563(15.6)	9,938(34.1)	29,180(100)	
학생	초등학교	2,031(15.3)	403(3.0)	2,308(17.3)	1,313(9.9)	7,249(54.5)	7550.481***
	중학교	4,388(46.2)	1,604(16.9)	685(7.2)	1,678(17.7)	1,150(12.1)	
	고등학교	1,787(28.0)	994(15.6)	479(7.5)	1,572(24.7)	1,539(24.2)	

***p<.001 **p<.01 *p<.05

‘개인 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친구들과 기관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초등학교(42.8%), 중학교(71.2%), 고등학교(72.0%)로 모든 급에서 동일하게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7.9%의 학생들이 부모님과 기관을 방문한다고 응답하였고, 중학교 14.8%, 고등학교 17.6%의 학생들이 혼자서 기관을 방문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II-56〉 개인 봉사활동 실시 방법

구분	친구들과 기관 방문	부모님과 기관 방문	혼자서 기관 방문	사이버 봉사활동	기타	전체	χ^2
전체	12,022(62.5)	2,697(14.0)	2,636(13.7)	688(3.6)	1,199(6.2)	19,242(100)	
학생	초등학교	2,593(42.8)	1,689(27.9)	549(9.1)	446(7.4)	778(12.8)	2919.962***
	중학교	5,950(71.2)	745(8.9)	1,235(14.8)	150(1.8)	275(3.3)	
	고등학교	3,479(72.0)	263(5.4)	852(17.6)	92(1.9)	146(3.0)	

***p<.001 **p<.01 *p<.05

‘개인 봉사활동 경험은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알거나 직업의 특성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51.7%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57.7%, 중학교는 46.4%, 고등학교는 53.2%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57〉 개인 봉사활동 경험이 흥미나 직업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41(3.9)	1,793(9.3)	6,768(35.2)	7,255(37.7)	2,685(14.0)	19,242(100)	456.768***
학 초등학교	118(1.9)	289(4.8)	2,153(35.6)	2,418(39.9)	1,077(17.8)	6,055(100)	
생 중학교	447(5.4)	1,006(12.0)	3,027(36.2)	2,940(35.2)	935(11.2)	8,355(100)	
고등학교	176(3.6)	498(10.3)	1,588(32.9)	1,897(39.3)	673(13.9)	4,832(100)	

***p<.001 **p<.01 *p<.05

‘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한 봉사활동 경험은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알거나 직업의 특성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47.6%의 학생들이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는 56.6%, 중학교는 41.0%, 고등학교는 47.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개인 봉사활동 경험에 대한 응답과 동일하게 초등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58〉 동아리 봉사활동 경험이 흥미나 직업 특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참여한 봉사활동이 없다	전체	χ^2
전체	559(2.9)	1,412(7.3)	6,494(33.7)	6,107(31.7)	3,056(15.9)	1,614(8.4)	19,242(100)	552.832*
학 초등학교	81(1.3)	216(3.6)	1,950(32.2)	2,185(36.1)	1,241(20.5)	382(6.3)	6,055(100)	
생 중학교	343(4.1)	819(9.8)	2,961(35.4)	2,395(28.7)	1,027(12.3)	810(9.7)	8,355(100)	
고등학교	135(2.8)	377(7.8)	1,583(32.8)	1,527(31.6)	788(16.3)	422(8.7)	4,832(100)	

***p<.001 **p<.01 *p<.05

‘주로 어떤 봉사활동이 보람이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지역사회 봉사활동(40.6%), 교내 봉사활동(24.9%), 자연환경 보호활동(20.4%), 캠페인 활동

(10.4%)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내 봉사활동(36.7%)과 자연환경 보호활동(30.9%) 순으로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지역사회 봉사활동(47.0%, 56.4%), 교내 봉사활동(21.3%, 16.2%)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59〉 보람 있는 봉사활동

구분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환경 보호활동	캠페인 활동	기타	전체	χ^2
전체	4,786(24.9)	7,803(40.6)	3,933(20.4)	2,005(10.4)	715(3.7)	19,242(100)	2134.394***
학 초등학교	2,220(36.7)	1,156(19.1)	1,869(30.9)	604(10.0)	206(3.4)	6,055(100)	
중학교	1,782(21.3)	3,923(47.0)	1,495(17.9)	838(10.0)	317(3.8)	8,355(100)	
고등학교	784(16.2)	2,724(56.4)	569(11.8)	563(11.7)	192(4.0)	4,832(100)	

***p<.001 **p<.01 *p<.05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희망 정도는 어떠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58.0%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5.7%, 중학교 56.2%, 고등학교 65.3%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봉사활동 참여희망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III-60〉 향후 봉사활동 참여 희망 정도

구분	전혀 하고 싶지 않다	참여 싶지 않다	별로 참여 하고 싶지 않다	보통이다	참여하고 싶다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전체	χ^2
전체	791(2.7)	2,170(7.4)	9,308(31.9)	12,447(42.7)	4,464(15.3)	29,180(100)	221.715***	
학 초등학교	381(2.9)	997(7.5)	4,517(34.0)	5,385(40.5)	2,024(15.2)	13,304(100)		
중학교	278(2.9)	788(8.3)	3,097(32.6)	4,079(42.9)	1,263(13.3)	9,505(100)		
고등학교	132(2.1)	385(6.0)	1,694(26.6)	2,983(46.8)	1,177(18.5)	6,371(100)		

***p<.001 **p<.01 *p<.05

인성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에 대한 논의

1. 학생자치 실태
2. 학교규칙 실태
3.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실태

IV. 인성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에 대한 논의

1. 학생자치 실태

본 연구의 학생자치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2004년에 실시된 최순영 국회의원의 결과²⁾와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하여 44.2%의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23.2%이었다.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53.8%), 학교운영에 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응답도 과반수(59.7%)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의 보장과 관련해서는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과반수(58.5%)였다.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경우는 47.8%(부정적 응답은 18.6%)로 나타났다. 학급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과반수(51.8%)로 나타났다.

학생회 지원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보장과 관련하여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응답은 56.3%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회가 필요한 비용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31.8%(그렇지 않은 경우는 14.8%, 나머지는 무응답)이고,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22.5%(비공개 30.7%, 나머지 무응답)밖에 되지 않아 재정적 지원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오히려 2004년의 설문에서는 학생회 예산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는 58.5%였고,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경우도 71.5%로 많았다.

2) 2004년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서울, 전남, 울산, 경남, 강원지역의 중학교 79개교, 고등학교 176개교를 대상으로 학생자치현황에 대해 설문조사한 바 있다.

학교에 학생회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31.8%이고 미설치교는 42.5%(나머지는 무응답)였다. 2004년에 학생회실이 있는 경우는 59.2%였음을 볼 때 상황이 더 열악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생회실이 없는 경우 전교 학생회의 등 학생회 회의를 개최할 때는 주로 일반교실을 이용(30.7%)하고 있었으며, 나머지는 교과교실(22.7%), 도서관(16.7%), 다목적실(13.0%), 강당·시청각실(11.7%), 기타(5.2%)를 이용하고 있다.

학생회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응답도 48.2%(비참여는 14.3%, 나머지는 무응답)로 2004년도의 29.3%보다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학생자치활동은 그 여건이 매우 열악하다. 첫째로, 학교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토가 충분히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과반수가 약간 넘을 뿐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아직까지 학생을 미성숙자로만 보아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풍토가 자리잡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칙 제·개정시에는 학생참여가 80% 이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하다. 진영중 외(2007)의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학생회실, 동아리실 등 학생 자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자치활동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위 연구에서는 이 외에도 학생 자치를 위해 배정되어 있는 시간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학교당국에 면담을 요청해도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경우, 학부모단체나 회장단 어머니들에게 학교 행사에 꽃다발과 다과를 준비하게 하거나 금품, 행사 참석을 요구하는 등 학생 보호자를 제대로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일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설문결과에서도 학생회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이로 인해 일반교실을 회의실로 가장 많이 쓴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학생회 자치활동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아쉽다.

이 외에도 진영중 외(2007)의 연구에서는 학생대표기구의 자치권 제한과 동아리활동 규제 등의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자치권 제한의 사례로는 학급대표, 전

교 학생 대표 선출시 간선제를 운영하는 경우, 학생회 입후보 자격에 교사 추천, 징계경력 없음, 품행단정 등의 요건을 두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 학생회 선거 공약을 사전 검열하는 경우, 선거를 통해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 학교당국의 승인절차를 두는 경우, 일부 학생의 선거 참여가 아예 불가능한 날에 선거일을 잡는 경우, 대의원회의 소집 시 학교장이나 자문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회의 안건이나 활동 내용을 교사들이 정해주는 경우, 학생회 예산에 관한 권한, 회칙 개정권 등을 포함하여 자치 활동과 관련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아예 주지 않는 경우, 학생회 집행부를 학교가 대신 임명하는 경우,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이나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학생회실 열쇠를 교사가 갖고 있는 경우, 학생회의 1년 목표를 교사가 대신 정해주는 경우, 학생회에 각종 성금 모금, 캠페인, 선도활동 등을 학교당국이나 교사가 지시하는 경우, 학생회가 기획한 행사를 포함하여 회의 결정 사항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허하는 경우, 타 학교 학생회와의 연합 활동을 불허하는 경우, 학생대표의 방문이나 답변 요구를 이유없이 거절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가로막혀 있거나 회의록 공개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동아리활동 규제 사례로는 동아리 설립 허가제를 두거나 까다로운 설립 절차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경우, 학교가 인정하는 동아리 가입만 허용하거나 특정 동아리에 대한 선입견을 함부로 유포하는 경우, 특정 동아리의 축제 참여를 배제하거나 공연에 필요한 공간 이용을 불허하는 경우, 방송부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동아리만 지원하고 다른 동아리에 대해서는 활동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경우, 동아리의 활동 내용이 설립 취지와 관계없는 활동으로 때워지는 경우 등을 들고 있다.

2. 학교규칙 실태

학교규칙과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학교규칙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학교의 주체별 참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견 수렴과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발표에서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설문조사와 비교해 볼 때,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수준이 매우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1년 9월에 고등학생 교육정책 모니터단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³⁾를 보면,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시 학생의 의견 반영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이 25%이고, 부정적인 응답이 52.2%로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재학시에 학교규칙 개정이 있었던 경우, 학생들은 81.9%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양한 의견 수렴의 경우에도 긍정적인 답변이 47.8%로 2011년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학교규칙 관련 학생들의 의견 반영 및 참여 비교

(고등학생 인식 비교, %)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11년 학생 의견 반영	13.9	38.3	22.0	18.3	7.4
2012년 학생 참여 여부	18.1		81.9		
2012년 다양한 의견 수렴	5.5	13.1	33.5	35.0	12.8

둘째, 학교규칙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매우 중요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3) 2011년에 고등학생 교육정책 모니터단조사는 2011년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12일간 교육과학기술부의 정책고객서비스(PCRM)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1,030명의 대상자 중에서 463명(44.9%)가 응답하였다.

데, 전체적으로 학생 응답자의 89.7%가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교사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95.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교사가 인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인지하는 수준이 낮은 것은 향후 초등학교에서 더 많은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또한 학생회 임원은 93.3%가 인지하고 있는데 반해, 학급 임원은 90.3%, 일반학생은 87.6%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학교규칙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참여가 확대된 요인은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2012년 4월 20일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는 제정과 개정 절차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도록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켰다는 점이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와 교육청에서 학교규칙과 관련된 매뉴얼을 보급하고 다양한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등 정책적 노력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실질적으로 확대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교공동체의 주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수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참여가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들은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이 84.6%인 반면에 교사가 인식하는 학생참여는 82.3%로 나타나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체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교사들의 인식만으로 보면 교사, 학부모, 학생의 순으로 참여가 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역시 실질적인 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 수준을 높여야 함을 보여준다.

〈표 IV-2〉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교공동체 주체의 참여 여부 (%)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학생	학생	84.6	15.4	
	학부모	57.9	8.7	33.4
교사	학생	82.3	17.7	
	학부모	87.3	12.7	
	교사	98.0	2.0	

넷째, 학교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토론회, 공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이를 반영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Likert 5점 척도로 적용할 경우 평균 3.70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들은 평균 3.85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학생들은 평균 3.43으로 나타난 반면에 교사들은 평균 3.63으로 높게 나타났다.

학교규칙과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학생들은 3.37로 긍정적인 반면에 교사들은 3.11로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교규칙 제·개정 시에 다양한 의견 수렴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 노력,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 등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은 학생들의 인식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학교규칙이 실천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표 IV-3〉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여부

구분	평균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학생	다양한 의견 수렴	3.70*	371(2.7)	897(6.6)	3,328(24.4)	4,789(35.1)	2,669(19.6)	1,581(11.6)
	다양한 캠페인, 홍보	3.43	874(3.0)	3,260(11.2)	11,397(39.1)	9,663(33.1)	3,986(13.7)	-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	3.37	1,002(3.4)	3,665(12.6)	11,857(40.6)	8,959(30.7)	3,697(12.7)	-
교사	다양한 의견 수렴	3.85	73(0.8)	392(4.2)	2,403(26.0)	4,363(47.2)	2,019(21.8)	-
	다양한 캠페인, 홍보	3.63	71(0.6)	686(6.0)	3,896(34.1)	5,576(48.8)	1,205(10.5)	-
	수업에서의 실천 노력	3.11	253(2.2)	2,393(20.9)	5,239(45.8)	2,981(26.1)	568(5.0)	-

*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에 대한 평균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을 제외한 것임.

3.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실태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운영 실태 조사의 내용을 보면 교사의 인식과 학생의 인식이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동아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초등학교는 학생의 65.6%, 교사의 64.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인식 수준에 큰 차이가 없으나 중학교는 학생의 61.1%, 교사의 68.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고등학교는 학생의 경우는 49.1%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사의 경우는 69.5%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가 무려 20.4%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학생 31.2%, 교사 31.7%으로 비슷한 응답을 하였으나, 중학교는 학생의 36.8%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교사는 54.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가 나고 있고, 고등학교는 학생의 56.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교사의 경우는 72.9%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인식의 현저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통해 미루어 볼 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생 중심의 동아리활동 및 봉

사활동에 대한 학생의 욕구는 성장하였으나 교사는 학생의 욕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교육과정의 개정을 통해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이 양적으로 크게 활성화 된 것은 사실이며 이제는 교사 중심적 활동이 아니라 학생 중심적 활동으로 질적인 발전을 모색할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한편, ‘동아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생은 69.5%, 교사는 67.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학생과 교사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학생의 62.0%, 교사의 64.9%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들이 수행한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을 교사들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느냐 하는 설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동아리활동의 기록에 대해 학생은 49.4%, 교사는 81.6%, 봉사활동 기록에 대해서는 학생은 59.2%, 교사는 89.9% 긍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학생과 교사간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기록의 수준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동아리활동의 다양성에 대해서 학교급별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스포츠활동 동아리에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이 무려 41.1%로 중학생 단계의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는 신체활동의 욕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2학년도부터 추진한 학교체육시간 확대와 학교스포츠클럽 동아리 활성화 정책은 매우 유효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경우는 학술활동(37.4%) 및 문화예술활동(22.0%)에 대한 욕구가 더 높다는 것을 참작하여 중학생과 같은 수준으로 스포츠활동을 강요하는 무리한 정책은 재고가 필요하다.

학생들이 특정한 동아리활동을 선택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인 반

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라는 항목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점도 고등학생의 동아리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학생의 진로 설정 및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 기능을 습득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동아리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외 동아리활동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그러나 초등학생의 약 30%, 중학생의 약 40%, 고등학생의 약 35%가 교육과정 외에는 동아리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며 동아리활동의 욕구는 있으나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의 가장 큰 이유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육과정 외 동아리가 없어서’, 중학생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응답하였다. 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동아리활동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봉사활동의 경우 초등학생들은 교내 봉사활동과 자연보호 활동을 가장 보람 있는 활동으로 응답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47.0%, 56.4%)을 가장 보람있는 활동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중학생 이상에서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신을 자각하고 공동체에 일조하고자 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기관을 확대하여야 하며, 또한 동아리활동으로 계발한 역량을 봉사활동을 통해 발현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봉사활동 연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2. 결론

V. 정책적 제언 및 결론

1. 정책적 제언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학교규칙의 준수,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가 중요하다. 학생들 상호간에 배려하고, 공감하고,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은 21세기의 민주시민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내용들이다. 사회적 약속을 이해하고, 그 약속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가. 학생 참여 활성화 방안

학생자치활동은 사실상 학생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학생회와 같은 학생자치기구를 학칙 등에 공식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학생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법정 기구는 아니지만 단위학교에서부터 학생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학칙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생회를 공식적인 학생대표기구로 규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나 학칙 또는 학생회 관련규정을 제·개정함에 있어 학생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그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측에서는 학생회의 활동과정과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교사의 지도는 자문 수준에 그치도록 하고, 학생회의 활동내용이나 결정에 대해 사전, 사후 승인 절차 등을 두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회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생회실 확보가 시급한 문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실을 활용하여 학생회실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회실이 있는 경우라도 책장과 서류함, 작업용 컴퓨터 등 기본시설이 부족하다. 학교에서는 예산편성시부터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예결산에 대해 공개함으로써 학생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재정 지원 외에 학생들이 바자회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재원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 호응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고 사회적 원리가 통용되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것과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다르다면 학생들은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 성적 등에 의해 선거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지 않듯이 학교에서도 그러한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교사의 추천, 성적, 징계 경력, 품행, 종교 등이 자격기준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떤 학생이 대표로서 적절한지는 유권자인 학생들이 판단할 일이다. 또한 후보자들의 공약에 대해 학교당국이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선거관리도 학생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학생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일반 사회에서의 투표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 원칙에 의해 직접 선출되어야 한다. 선거로 선출된 학생대표에 대해서 학교가 사후승인을 하는 등 학생회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생회가 학교에서 공식적 학생대표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권한이 보장되고 실질적으로 행사될 때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게 될 것이다.

- 학생회 임원 선임권
- 학생회칙, 학생생활규정 등 학생관련규정에 대한 제·개정안 발의권

- 학생으로부터의 금전 징수·모금 등에 있어 학생회의 의견을 제시할 권리
- 학생회 운영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 학생회 활동에 대해 간섭받지 않을 권리
- 교외 학생회나 단체와 교류할 권리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의견을 개진할 권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학생생활 관련 안건 심의 시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정 위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생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합법적인 권리 행사이다.

학생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들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임원)들과의 간담회 형식의 모임을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임은 학교장과 학생회의 의사소통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가진다.

학생회가 학교나 외부의 도움만을 받아 운영된다면 나중에는 오히려 자치가 아니라 타율적인 기구가 될 수 있다. 자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존립의 토대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측의 개입은 최소화하고 학생회가 스스로 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서 학칙이나 학생생활 규정 등과 관련된 문제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생회 주관의 공개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내에만 한정하지 말고 인근 학교의 학생회와 연계·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추진하면 학생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학생회 활동이나 사업이 주기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 스스로 그 활동 등을 평가하고 이를 차년도 운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우선 그러한 평가를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를 수립한 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학교규칙을 통한 민주 시민 교육 강화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중요성만큼 학교규칙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학교규칙의 개념과 의의, 현황과 실제, 외국의 사례 및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학교규칙 운영의 실태를 짚어 보았다.

향후 우리나라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학교규칙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학교문화를 선진화해 나아가 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년 초에 학교규칙을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반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면 이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방법도 단순히 학년 초에 유인물을 나누어 주는 등에 그쳐서는 안된다.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유인물,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교규칙을 안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학교규칙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은 주로 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규칙을 알게 되고, 교사들은 홈페이지와 유인물을 통해 학교규칙을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많은 학교들은 학교규칙 등 학교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들은 홈페이지에 학교규칙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교육수요자들이 언제든지 학교규칙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놓을 책무성이 있다.

둘째, 매학년 초에 학교규칙과 관련된 수업을 반드시 실시하여 학생들이 학교 규칙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해야 하며, 교사-학생간 및 학생 상호간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제·개정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학교참여를 증대시켜 주인의식을 가지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학생들의 자치활동 능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한편, 교사들에게도 학교규칙을 반드시 숙지하게 하고 학생들에게 이를 공지하도록 하여 교사-학생간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사들을 위한 학교규칙 연수 과정을 개설하여 모든 교사들이 이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가 학교규칙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학생들의 경우 학교규칙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0%가 넘었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학교규칙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는데, 학교규칙에 대해 잘 알고 실천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일은 학교급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하다. 최근 정부와 단위학교들의 노력으로 학교규칙에 대한 홍보와 안내가 잘 되고 있지만 앞으로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의 학교규칙을 살펴본 결과 기본적인 구조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지켜야 할 것과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조금주, 2008). 하지만 외국의 경우 학생인권을 둘러싼 교사-학생간 대립이 우리보다 적은 이유는 학교규칙의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화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잘못을 하였을 경우 처벌의 종류와 장소뿐만 아니라 징계시 소명 절차에 대한 규정과 향후 교육방식(예의범절교육 등)까지 다루고 있어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시시콜콜한 내용까지 담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교사-학생간 문제의 소지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모호한 표현을 구체적인 용어로 바꾸고,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한 조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더 중요한 것은 규제를 위주로 하기 보다는 학생들의 자율성을 좀 더 확대하는 방식(문용린 외, 2008)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학교규칙 특히 학생생활규정들

도 비교적 상세화되고 매우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들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학생생활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규칙의 제·개정 과정에 학생,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하여야 하고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기본적 인권 중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문용린 외, 2008). 최근 개정된 법령에 의하면 학칙의 제·개정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학교는 이러한 과정을 형식적인 설문조사나 가정통신문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령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다”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반영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단위학교는 학교규칙 특히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시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하고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실제 단위학교에서는 여전히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약 15% 내외의 학생들은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학교규칙의 제·개정이 주로 교직원에게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학생에 비해 학부모들의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의 참여는 더욱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활성화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의 현황 및 우수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학교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운영에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시켜 민주시민으로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의식과 삶의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생 스스로 운영하는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아리활동은 학생이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민주시민 의식을 기르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긍정적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첫째, 교과교육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축소하여 교과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교과교육과정 필수이수시간은 중학교의 경우 주당 28시간, 고등학교는 30시간으로 현재 약 80%의 중·고등학교가 주5일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학교 시간표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방과후 교육활동, 학원 수강 등으로 교육과정 외의 자율적인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매우 부족하다.

둘째, 교사 중심의 동아리활동이 아닌 학생의 욕구를 반영한 동아리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동아리활동에 대한 지도책임을 교사에게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문가와 사회단체, 청소년 지도시설이 협력해야 한다. 현재도 학생들의 동아리활동 지원을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가의 재능기부 등 노력이 있으나 이는 ‘기부’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상설적인 협력기반이 아니다. 정부는 지역사회 기관과 사회단체들에게 학교교육에 협력을 의무화 하여야 하며, 사회시설의 지역적인 편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우수 동아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취미 중심의 동

아리뿐만 아니라 교과학습과 연계한 학술동아리, 창업동아리 등 우수한 동아리를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충청북도교육청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창업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50개 우수동아리를 선정, 운영비를 지원하고 성공사례 발표회를 열기도 하였으며 시 차원에서 우수 동아리를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경우(고양시)도 있었다. 이러한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리활동과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다. 봉사활동은 학생의 사회적 책임감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 등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적 성장과 발달,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봉사활동의 시간, 횟수 등 양적인 부분보다 봉사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더 높은 효과가 있었다(김지혜, 2012). 따라서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양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기관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는 2006년 ‘한국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 통합하여 봉사활동을 포함한 청소년활동 전반에 대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 지식, 기술, 교육적 관심이 부족하고 일부 기관에서는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청소년들의 봉사활동을 꺼리는 등 청소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다.

둘째, 교육과정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봉사활동이 다양화되어야 한다. 학년별 특정한 날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이 아니라 동아리별, 또는 학급단위 등 소단위별 특색있는 꾸준한 봉사활동이 실행되도록 계획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가족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인성교육의 실천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밥상머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연계하여 “가족봉사활동의 날” 제정 등, 가족이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동아리활동으로 개발한 역량을 봉사활동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봉사활동 연계 운영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교육 과정 운영 계획 시 동아리활동-봉사활동을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 입학 등 입시에서 활동의 질적 평가에 따른 이점을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

2. 결론

‘유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89.11.20)’은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협약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는 아동이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환경적 조건에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그들의 잠재력이 최대로 발휘되도록 지원·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협약의 내용에 따라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의 권리와 공동체의 규칙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보편적 인권을 바탕으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자치활동은 학교문화를 바꾸는 노력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과성적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입시문화의 기존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최근 고등학교 진학에서는 ‘자기주도 학습전형’, 대학 진학에서는 ‘입학사정관제’ 등이 도입되었고, 입학전형에서 학생들의 자율적 비교과 활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전형제도의 변화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온 학생자치활동을 일시에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생자치활동의 구체적 실행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유사사례 확산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의 핵심적인 부분은 학생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학생회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하여 대표성을 갖게 되면 학급의 자치활동과 연계되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학생회의 자율적

운영과 평가를 통해 자정 능력을 갖춘 학생회가 운영되면 자치법정,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연계될 수 있다.

학생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교차원의 다양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회 운영위원을 배석하게 하는 것이다. 법령상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생생활과 관련된 안건 심의 시에 학생대표 등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되어 있고, 학생대표는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령상 학생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안건에 대해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합법적 권한이 있으나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둘째,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담회를 상설 운영해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는 전체 교직원 회의를 주 1회 또는 월 2회 개최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도 평균 월 1회 개최하고 있다. 학교장과 학생회 운영위원 간의 공식적 만남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고충과 불만, 건의사항 등을 공식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회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학생회 운영위원들이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각종 학교행사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학교자체 예산 편성, 동창회 기금 지원, 학교발전기금 지원, 학생회의 자구적 노력 등을 통해 학생회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학생회 주관 공개포럼과 공청회 개최를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의 생활협약이나 시설사용 규칙 등 학생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과정으로서 포럼과 공청회 개최를 활용해야 한다.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체득해나가면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중요한 학습과정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인근 학교 학생회 간의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학생회 활동은 교원들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인근 학교간 연계를 통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 지역 학생회 모임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되는 학교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학생회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다. 핀란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역 단위

학생회가 공동의 관심사나 건의사항을 교육위원회에 제안하면, 교육위원회는 간담회 등을 통해 이를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사례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학생들이 학교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 참여하여 ‘학급규칙’을 만들고, 학교공동체의 ‘자율적 학생생활협약’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지켜야 할 핵심적인 약속을 만들고, 이를 학교수준으로 확대하여 만들어 가는 것이 학생생활협약이라고 할 수 있다. 스스로 만든 약속을 스스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준법정신과 민주시민 의식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학교별로 학생이 스스로 참여하여 운영하는 ‘학교 자치법정’ 운영을 활성화하여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 자율적 문제해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 자치법정은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습의 과정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사법절차에 대해 학습할 수 있다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 많은 학교가 시행하고 있는 상벌점 제도와 연계하여 학생의 자율적 문제인식 능력을 높이고, 문제해결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간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학생 스스로 참여하는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관심 있는 분야의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성, 타인에 대한 배려 등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의 필수적 요소인 긍정적 자아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다. 동아리활동 활성화와 더불어 학생들의 봉사활동에의 참여도 장려되어야 한다. 봉사활동은 학생의 사회적 책임감과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향상 등 인성교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적 성장과 발달,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동아리활동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양질의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우수동아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을 통해 우수동아리 발굴 및 동아리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욕구와 적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 기관을 확대하여야 하며, 동아리활동으로 계발한 역량을 봉사활동을 통해 발휘시킬 수 있도록 동아리-봉사활동 연계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나 학교자율화 정책 등에 의해 교육자치와 학교자치의 외연은 많이 발전되었지만 학생자치는 많이 진전되지 못했다.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객체로, 능동적 주체가 아닌 수동적 대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도덕적 주체로서보다는 통제하고 지도해야 하는 타율적 존재로 보아온 인식의 문제가 그 배경에 자리잡고 있다.

교원들은 국가에서 공인된 교원자격증소지자로서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 교직원회의나 교원노조, 교원단체와 같은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장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제한적이거나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그 의견을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생들은 법률로 보장된 자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다. 학생회는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행·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학생이 소외된 학교공동체란 있을 수 없다.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이를 학교운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참고문헌

- 강영혜 외(2011). 민주 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강원도교육청(2011). 학생생활지도 길라잡이.
- 강인수(1999). 초·중등교육관계법의 주요과제 - 학생·교원·학부모의 교육권 보장과 조화. 교육법학연구, 11.
- 경기도교육청(2011).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존중과 배려의 인성교육 길라잡이.
- 경기도교육청(2012). ‘폭력없는 인권친화적 학교’ 만든다. 경기도교육청 보도자료.
- 고형일·이두휴(1997). 장거리 통근교사의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7(2), 23-53.
- 관계부처합동(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 교육과학기술부(2007). 학교폭력예방 정책개발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교육과학기술부(200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계획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0). 학생 교육력 강화와 학생 권리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회 자료집.
- 교육과학기술부(2011). 인성 및 공공의식 함양을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중간발표.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2012). 학교폭력 근본 대책으로 인성교육 실천 본격 추진. 보도자료.
- 교육과학기술부·법제처·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서로를 위한 약속, 학교 규칙 운영매뉴얼.

- 교육과학기술부 · 충청북도교육청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100대 학교문화 우수사례집.
- 구본용, 박제일, 이은경, 문경숙(2010). 학생상담 및 생활지도 매뉴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구수경(1997). 청소년 저항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국가청소년위원회 ·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006). 중 · 고등학생 인권 상황 실태 조사.
- 김내학(2005). 초등 학교장의 역할에 관한 해석적 연구.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위논문.
- 김미숙(2007).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128호.
- 김병찬(2006). 교장의 직무 수행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44(3), 1-30.
- 김석연(2002).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선애(2003).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실태와 경향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2권.
- 김성기(2005). 초 · 중등학교의 법적 지위와 학교자치, 「교육법학연구」17-1, 대한교육법학회.
- 김성기, 조석훈(2009). 초등학교 학생행정 가이드. 서울: 학지사.
- 김성규(2010). 동아리활동이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경운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식(2000). 학교부적응 실태조사 및 적응 프로그램 개발.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
- 김소희(1991).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과 성적의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소희(2004). 학부모 교육열의 내러티브적 접근. 교육학연구, 42(2), 271-313.

- 김영숙(1995).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대한 해석적 접근.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용호(1992). 공업계 고등학교 수업의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주 외(2003).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동아리활동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희(2004). 초등학교 동학년 교사문화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종미(1997). 초등학교 학교 폭력 실태 분석. 초등교육연구, 11권.
- 김준호(2003). 사회문제: 심포지움; 한국 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행동: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사회학적 고찰.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대회 논문집.
- 김지수(2002). 대안학교 학부모의 교육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4(1).
- 김해대청고등학교(2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인성교육부.
- 김해대청고등학교(2012). 학생생활규정. 인성교육부.
- 김해동광초등학교(2012). 2012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
- 김현진(2011). 고등학교 학생대표자 선출 방식 : 경기도 사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철(2010a).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시론적 고찰. 법교육연구, 5(1).
- 김현철(2010b).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학교폭력연구, 1(1).
- 김희복(1991). 학부모 문화 연구-부산지역 중산층의 교육열.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 논문.

나재주(1999). 교사의 생활세계와 교사문화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남경희(2004). 대학의 선발정책 변화와 학부모 문화와의 관계. 동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남상임(2008). 청소년 학교폭력 실태 및 대처방안, 21세기사회복지연구.

도종수(20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3(4).

류방란·이혜영(2002). 초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류성창 외(2011). 스마트 세대를 위한 KEDI 교육 미래비전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문성호·문호영(2009).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실태 및 효과에 관한 비교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1(1).

문용린, 최지영, 박종효, 신순갑, 장맹배, 이지혜(2008). 공공의식 배양교육의 제도적 방안연구: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및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보고서

박종흡·이관규(1997). 초등학교 교사들의 교직문화에 관한 연구. 지방교육경영, 2호, 229-255.

박효정·연은경(2003). 한국 중등학교의 생활 및 문화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삼락중학교(2012). 2012학년도 학교운영규정집.

서울국사봉중학교 홈페이지(2012.8.17).

서울선사고등학교 홈페이지(2012.8.17). 학생회 회칙.

서울특별시교육청(2009). 손에 꼬옥 잡히는 생활지도.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2011학년도 학생생활지도 우수사례집,

서정화 외(2012). 학교경영 길라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 세계일보(2005). “회의실도 없어요. 이름뿐인 학생회”
- 송수지 외(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2(23).
- 안귀덕(1990). 학교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기능. ‘고등학생의 생활과 문화(II): 사회조사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안승문(2008). 핀란드헬싱키의 ‘청소년의목소리’, <http://educa21.tistory.com/76>
- 안종미(2004). 중학생의 동아리활동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재(2000). 고등학생들의 문제행동 속에 담긴 문화적 의미. 충북교육학연구, 3(1), 51-66.
- 오영재(2001). 교단일기를 통해 본 중등교사들의 삶과 문화. 교육학연구, 39(4), 207-230.
- 오영재·박주용(2005). 학교장의 지도성 행도와 단위학교 교사문화 간의 관계에 관한 사례연구. 교육학연구, 43(2), 259-287.
- 오영재·정지선(2006).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24(1), 69-96.
- 유은정(2008). 외국인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유한구 외(1997). 초등학교 교직문화 연구(I). 초등교육연구, 11, 277-297.
- 윤정일 외(2002). 교육행정학 원론. 학지사.
- 이기연(1992). 농촌 고교교육의 사회적 기능-두륜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문화기술적 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대성(2011).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법과 인권교육의 방향. 법과 인권 교육연구, 4(1).
- 이민원(2007). 중등 중견 남교사들의 승진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고려대

- 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환(201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이슈페이퍼, 2012(6). 한국교육개발원.
- 이영아·정원철(2007). 부모위험요인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이르는 발달경로. 청소년학연구.14(3).
- 이옥자(2000).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관한 사례 연구. 대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인효(1990). 인문계 고등학교 교직원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현·고선영·이윤정(2012). 고등학생들의 학교 외모규제 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4(1), 49-59.
- 이종재·이차영·김용·송경오(2012). 한국교육행정론. 서울: 교육과학사.
- 이창진(1992). 고교생의 반 학교 문화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인문계 여자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향숙(2008). 전문직 학부모의 교육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혜영(2007). 교육비전 중장기 계획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류방란·윤여각(2001). 중등학교교사의 생활과 문화. 한국교육개발원.
- 장규일(1997). 초등학교 교사문화에 관한 사례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하소(2004). 교사문화와 교사 직무만족과의 관계 분석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범모(2010). 교육은 왜 하는가?: 일송기념사업회(편) 「한국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pp.15-44). 서울: 푸른역사.
- 정병호(2006). 공·사립계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문화 비교. 경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제영(2004). 초·중등학교의 지식경영 수준과 유형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제주표선고 홈페이지(2012.8.17). 2012 학교규칙, 2012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 조금주(2008). 외국의 중·고등학교 규칙 내용 분석의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8(1). 한국비교교육학회.
- 조미경(2006).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연구: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조용환(1994). 고등학교 학생문화의 종합적 이해와 비판. 정신문화연구, 17(4), 117-149.
- 조용환(1999). 질적 연구: 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진영중 외(2007).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지침서. 국가인권위원회.
- 최돈민 외(2001). 학부모 학력주의 교육과 타과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소영(1996). 인문계고등학교 학생문화의 이중성 연구: 입시문화와 대중문화의 갈등적 공존.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순영(2004). 학생자치활동 현황 보고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최인재·김경준(2007).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최지현(2005). 일반학교와 대약교의 학교 내 학생문화에 대한 비교 분석.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하연섭 외(2010). 교육정보와 정책 성과진단체제 개발 연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국교육개발원(20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포럼 자료집.
- 현 주 외(2009). 학교 인성교육의 실태분석 연구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 황기우(1992). 한국 초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해석적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황석도(2002). 교육활동을 통해 본 고등학교 교사들의 교사문화에 대한 질적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Carrington, S.(1999). Inclusion needs a different school cul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3(3), 257-268.
- Erickson, F.(1987). Conception of School Culture: An Overview.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3(4), 11-24.
- Glickman, C. D., Gordon, S. P., & Ross-Gordon, J. M. (2010). *SuperVision and Instructiunal Leadership*. Boston: MA, Pearson.
- Griffin, P., McGaw, B., & Care, E. (2012). *Assessment and teaching of 21 stcentury skills*. Springer.
- Hargreaves, D. H.(1995). School Culture,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6(1), 23-46.
- Lumby, J., & Foskett, N.(2011). Power, Risk, and Utility: Interpreting the Landscape of Culture in Educational Leadership.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47(3), 446-461.
- OECD. (2005). *Formative assessment: Improving learning in secondary classrooms*. Paris: OECD Publishing.
- Raby, Rebecca(2012). *School rules: obedience, discipline, and elusive democracy*. University of Toronto Press: Canada.



부 록

부 록

□ 미국 뉴욕주의 학생 징계 규정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제1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A0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A-D 조치에 한함) A02 규정된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 착용 방침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미착용 허가를 부모가 미리 받지 않은 학생에게만 적용) (A 그리고/또는 D 조치에 한함) A03 지각한 경우 A04 금지된 기기나 물건을 허가 없이 학교에 가져온 경우 (예, 휴대 전화, 호출기, 통신 및 오락기기) A05 교내 지정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A06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교실, 도서관 또는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운 경우) A07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 A08 ¹⁾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복장, 머리 장식물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한 경우 A09 문서화된 교육청 방침 및 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자료를 학교 내에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A10 학교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나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1) 특정 복장이나 머리 장식물이 종교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면 학교는 청소년 개발 선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A. 교사의 훈계 B. 학생과 교사 면담 C. 적절한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 <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 <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 <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 <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위탁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

-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제2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A11 흡연 A12 도박 A13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A14 교직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도한 경우 A15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경우 A16 학교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A17 담당 교직원의 허락 없이 교실이나 학교를 이탈한 경우 A18 부적절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에 한함. 4-5학년의 경우는 위반 사항 A28 참조) A19 교육청의 인터넷 사용 방침을 위반한 경우(예: 교육청의 시스템을 비교육적 목적이나 보안 및 사생활 침해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A20 다음 행위 혹은 이와 유사한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 a. 시험 부정행위 (예: 다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베끼는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 출제자나 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 시험 중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답을 의논한 경우, 장차 치를 시험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훔치거나, 옮기거나, 구한 경우, 타인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학생이 자신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경우, 시험지를 미리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시험을 치</p>	<p>A. 교사의 훈계 B. 학생과 교사 면담 C. 적절한 교직원(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 G. 교장의 정학 처분</p>	<p><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 <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 <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 <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 <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위탁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르기 전에 시험지나 답안지를 얻은 경우) b. 표절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글을 원저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인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기타 출처에 게시된 문서 도용) (4-5학년에만 해당) c. 공모 (점수를 받기 위해 작문 준비를 하는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하게 협력한 경우) A21 제1수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1수준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제2수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제1수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제2수준 징계 조치다.) (이 위반 사항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제1수준 위반 행위 A04-A10에만 적용된다.)</p>		<p>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제3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A22 반항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복종한 경우 A23 인종, 민족적 배경,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 사항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A24 밀기, 찢히기나 이에 유사한 행동 (예: 소란 피우기) 또는 물건 집어 던지기 (예: 분필) A25 문서화된 학교 규정에 반하여 승인 받지</p>	<p>A. 교사의 훈계 B. 학생과 교사 면담 C. 적절한 교직원 (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p>	<p><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 <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 <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 <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지도 중재 조치
<p>많은 방문객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들어오도록 허락한 경우</p> <p>A26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고의로 소유한 경우</p> <p>A27 컴퓨터나 인터넷, 혹은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 기록이나 서류를 고치거나 변경 또는 위조한 경우</p> <p>A28¹⁾부적절하거나 타인이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4-5학년에 한함. 유치원에서 3학년까지의 경우는 위반 사항 A18 참조)</p> <p>A29²⁾조직 폭력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예: 조폭 복장 및 장신구, 몸짓, 신호를 하거나 벽에 낙서를 한 경우) (4-5학년에 한함. D-I조치에 한함)</p> <p>A30 학교 재산, 직원, 학생 및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또는 물품에 낙서를 한 경우 (C-I조치에 한함)</p> <p>A31 남을 중상하는 자료나 문서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그러한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포함)</p> <p>A323)제2수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2수준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제3수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제2수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제3수준 징계 조치다.) (D-I조치에 한함)</p> <p>1)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p> <p>2) 특정 행동이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p>	<p>외)</p> <p>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p> <p>G. 교장의 정학 처분</p> <p>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경과 보고서</p> <p><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지도 중재 조치
<p>를 결정할 때, 담당 교직원은 학교 중재 및 개발실의 폭력 조직 전담 부서로부터 조언을 얻을 수 있다.</p> <p>3) 이 위반 사항은 유치원에서 5학년까지의 제2수준 위반 사항 A11-A21에만 적용된다.</p>		

-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제4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지도 중재 조치
<p>A33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상하는 자료나 글, 또는 폭력, 상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게재하거나 배포한 경우 (그러한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포함) (D-I 조치에 한함)</p> <p>A34 언쟁 그리고/또는 경상해를 초래하거나 할 위험이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p> <p>A35 위압하거나, 타인에게 폭력, 상해 혹은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한 경우</p> <p>A36 스쿨버스에서 상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하거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 (G-J 조치에 한함)</p> <p>A37 위협을 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힌 경우, 즉, 학생이나 교직원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거나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 인종, 민족적 배경,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종교적 관습,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 사항과 관련하여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육체적, 언어적 모욕 및 협박</p>	<p>D. 학부모 면담</p> <p>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p> <p>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p> <p>G. 교장의 정학 처분</p> <p>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p> <p><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p> <p><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p> <p><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p> <p><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p> <p><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p> <p><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p> <p><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p> <p><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p> <p><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을 하는 행위 등 A38¹⁾ 성적 암시가 담긴 말이나 제안을 하거나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성적 행위를 한 경우 (예: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공공 장소에서의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행위) (4-5학년에 한함) A39²⁾ 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마약 사용을 위한 물품 그리고/또는 술을 소지한 경우</p> <p>1), 2)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 J. 수업 일수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처분과 수업 일수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p>	<p>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습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제4수준 (계속)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A40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절취하는 경우 A41 허위로 화재 경보 또는 기타 재해 경보를 울린 경우나, 혹은 폭파 위협을 한 경우 (D-I 조치에 한함) A42 난폭한 행동 및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을 조성하는 경우 (예: 라이터, 벨트 버클, 우산 등) A43 난폭한 행동 및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중상해를 초래하는 경우</p>	<p>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게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p>	<p><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 <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 <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 <input type="checkbox"/> 멘토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예:ライター, 벨트 버클, 우산 등) A44 방화한 경우 (G-J 조치에 한함) A45 폭동을 부추기거나 야기한 경우 (G-J 조치에 한함) A46¹⁾범주 II에 명시된 흉기를 소지한 경우 (G-J 조치에 한함) A47²⁾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 술을 사용한 경우 (G-J 조치에 한함) A48 제3수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3수준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제4수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제3수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제4수준 징계 조치다.)</p> <p>1) 범주II에 열거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을 가는 줄)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 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p> <p>2)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p>	<p>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p> <p>G. 교장의 정학 처분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 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 J. 수업 일수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처분과 수업 일수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p>	<p>경과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 <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위탁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 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 유치원부터 5학년까지: 제5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A49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p> <p>A50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I-J 조치에 한함)</p> <p>A51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I-J 조치에 한함)</p> <p>A52 집단 폭력 사건에 가담한 경우</p> <p>A53¹⁾ 폭력 조직과 관련된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p> <p>A54²⁾ 신체적인 성적 공격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성적인 행동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경우 (4-5학년에 해당, I-J 조치에 한함)</p> <p>A55²⁾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 술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 (I-J에 한함)</p> <p>A56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I에 정의된 흉기를 소지한 경우 (I-J 조치에 한함)</p> <p>A57 범주II에 명시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I-J 조치에 한함)</p> <p>A58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I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p> <p>A59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II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p> <p>A60³⁾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K 조치에 한함)</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J. 수업 일수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처분과 수업 일수 30-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p> <p>K. 조기 복교를 위한 청원의 기회가 없는 1년간 정학과, 6-12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 2의 기회학교에, 그리고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 부모의 외부 조력</p> <p>☐ 상담원의 중재</p> <p>☐ 생활 지도 회의</p> <p>☐ 개인 및 집단 상담</p> <p>☐ 또래 중재</p> <p>☐ 멘터링 프로그램</p> <p>☐ 갈등 해소</p> <p>☐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p> <p>☐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p> <p>☐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1) 특정 행동이 폭력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은 학교 중재 및 개발실의 폭력 조직 전담 부서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2)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3) 이에 대한 징계 조치는 위반 사항에 따라 수정될 수 있다.		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1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B01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 (A-D 조치에 한함) B02 착용해야 하는 교복을 입지 않은 경우 (교복 착용 방침을 채택한 학교에 다니면서 교복 미착용 허가를 부모가 미리 받지 않은 6-8학년 학생에게만 적용) (A-D 조치에 한함) B03 수업에 불참한 경우 (등교 후 한 과목 이상의 수업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 B04 학교에 지각한 경우 B05 반입 금지된 기기나 물건을 허가 없이 학교에 가져온 경우 (예, 휴대폰, 호출기, 전자 통신/오락기기) B06 학교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이탈한 경우 B07 학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교실, 도서관 또는 복도에서 지나치게 소란을 피운 경우) B08 무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언행을 한 경우 B09 ¹⁾ 학업에 방해가 되거나 복장, 머리 장식	A. 교사의 훈계 B. 학생과 교사 면담 C. 적절한 교직원(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 <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 <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 <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 <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위탁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물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한 경우 B10 서면으로 된 교육청 방침 및 학교 규정에 위반되는 자료를 학교 내에서 게시 또는 배포한 경우 B11 교직원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B12 학교 컴퓨터, 팩스기, 전화기 또는 기타 전자 장비나 기기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1) 특정 복장이나 머리 장식품이 종교적인 상징을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교는 청소년 개발 선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한다.	어야 함)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2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B13 흡연 B14 도박 B15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상스럽거나, 음란하거나 폭력적인 언행을 한 경우 B16 교직원에게 거짓말,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호도한 경우 B17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다룬 경우 B18 학교 버스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란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B19 ¹⁾ 제1수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들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1수준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제2수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제1수준 위반 행위를 반	A. 교사의 훈계 B. 학생과 교사 면담 C. 적절한 교직원(예: 교감, 교장)의 문책 D. 학부모 면담 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 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게 의해 2학기제의	<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 <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 <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 <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 <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제2수준 징계 조치다.)</p> <p>1) 이것은 제1수준, 6-12학년의 B05-12의 위반 행위에만 적용된다.</p>	<p>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p> <p>G. 교장의 정학 처분</p>	<p>모의 동의 필요)</p> <p>☐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3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B20 담당 교직원의 허락 없이 교실이나 학교를 이탈한 경우</p> <p>B21 반항적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의 적법한 권위를 무시하거나 불복종한 경우</p>	<p>A. 교사의 훈계</p> <p>B. 학생과 교사 면담</p> <p>C. 적절한 교직원(예: 교감, 교장)의 문책</p>	<p>☐ 부모의 외부 조력</p> <p>☐ 상담원의 중재</p> <p>☐ 생활 지도 회의</p> <p>☐ 개인 및 집단 상담</p> <p>☐ 또래 중재</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B22 허가 없이 학교 건물에 들어가거나 들어 가려고 시도한 경우</p> <p>B23 인종, 민족적 배경, 피부색, 출신 국가, 종교,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 사실에 근거해 모욕적인 말을 한 경우 (C-1 조치에 한함)</p> <p>B24 밀기, 제치기나 이에 유사한 행동 (예: 소란 피우기) 또는 물건 집어 던지기 (예: 분필) (C-1 조치에 한함)</p> <p>B25 문서화된 학교 규정에 반하여 승인 받지 않은 방문객을 학교에 데려오거나 들어오도록 허락한 경우</p> <p>B26¹⁾ 폭력 조직과 관련된 행위를 한 경우 (예: 폭력 조직 복장 및 장신구, 몸짓, 신호를 하거나 벽에 낙서를 한 경우) (D-1 조치에 한함)</p> <p>B27 컴퓨터나 인터넷, 혹은 그 밖의 방법을 사용하여 학교 기록이나 서류를 고치거나 변경한 경우</p> <p>B28 학교 자산, 직원, 학생 또는 다른 사람의 물품을 파손하거나 의도적으로 손상시키거나 물품에 낙서를 한 경우 (D-1 조치에 한함)</p> <p>B29 허락 없이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소유할 경우</p> <p>B30²⁾ 성적 암시가 담긴 말이나 제안을 하거나 성적인 언어 또는 비언어적인 행위를 한 경우 (예: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꼬집는 행위, 공공 장소에서 음란하거나 부적절한 행위)</p> <p>1) 특정 행동이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할 때, 담당 교직원은 학교 중재 및</p>	<p>D. 학부모 면담</p> <p>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p> <p>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p> <p>G. 교장의 정학 처분</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 멘터링 프로그램</p> <p>□ 갈등 해소</p> <p>□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p> <p>□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p> <p>□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개발실의 폭력 조직 전담 부서로부터 조인을 얻을 수 있다. 2)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3수준 (계속)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B31 학교 구내 혹은 학교와 관련된 행사에서 성적인 행위를 한 경우</p> <p>B32 교육청의 인터넷 사용 방침을 위반한 경우 (예: 교육청의 시스템을 비교육적 목적이거나 보안 및 사생활 침해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p> <p>B33 다음 행위 혹은 이와 유사한 학업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경우.</p> <p>a. 시험 부정행위 (예: 다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베낀 경우, 시험을 치르는 동안 시험 출제자나 감독관에 의해 승인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한 경우, 시험 중 허락 없이 다른 학생과 답을 의논한 경우, 장차 치를 시험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고의로 사용하거나, 사거나, 팔거나, 훔치거나, 옮기거나, 구한 경우, 타인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거나 다른 학생이 자신을 대신해 대리 시험을 치르도록 한 경우, 시험지를 미리 얻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준 경우, 또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지나 답안지를 얻은 경우)</p> <p>b. 표절 (점수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p>	<p>A. 교사의 훈계</p> <p>B. 학생과 교사 면담</p> <p>C. 적절한 교직원(예: 교감, 교장)의 문책</p> <p>D. 학부모 면담</p> <p>E. 학교 내 징계 조치 (예: 과외 활동, 휴식 시간 또는 단체 점심 시간에서 제외)</p> <p>F. 교사에 의한 퇴실 조치 (학생이 교사에 의해 2학기제의 한 학기 중 3번, 3학기제의 한 학기 중 2번 퇴실 조치를 당한 후, 또다시 퇴실 행동을 한 경우 반드시 교장의 정학 처분이 요청되어야 함)</p> <p>G. 교장의 정학 처분</p>	<p><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p> <p><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p> <p><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p> <p><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p> <p><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p> <p><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p> <p><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p> <p><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p> <p><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p> <p><input type="checkbox"/>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input type="checkbox"/>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글을 원저자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이 쓴 것처럼 속인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이나 기타 출처에 게시된 문서 도용)</p> <p>c. 공모 (점수를 받기 위해 작문 준비를 하는 중 다른 사람과 부정하게 협력한 경우)</p> <p>B34 남을 중상하는 자료나 문서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그러한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포함)</p> <p>B35 제2수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2수준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제3수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제2수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제3수준 징계 조치다.)</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4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B36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상하는 자료나 글, 또는 폭력, 상해,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게재하거나 배포한 경우 (그러한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포함) (D-I 조치에 한함)</p> <p>B37 언쟁 그리고/또는 경상해를 초래하거나 할 위험이 있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G-J 조치에 한함)</p> <p>B38 위협하거나, 타인에게 폭력, 상해 혹은 위해를 가하겠다는 위협을 한 경우</p>	<p>G. 교장의 정학 처분 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J. 수업 일수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p>	<p><input type="checkbox"/> 부모의 외부 조력 <input type="checkbox"/> 상담원의 중재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도 회의 <input type="checkbox"/> 개인 및 집단 상담 <input type="checkbox"/> 또래 중재 <input type="checkbox"/> 멘터링 프로그램 <input type="checkbox"/> 갈등 해소 <input type="checkbox"/>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단기 행동 발달</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B39 학교 버스에서 상해 위험이 큰 행동을 하거나 상해를 일으킨 경우</p> <p>B40 위협을 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힌 경우, 즉, 학생이나 교직원을 협박하거나 스토킹하거나 강압적으로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행위, 인종, 민족적 배경, 출신 국가, 피부색, 종교, 종교적 관습, 성별, 성 표현, 성적 성향, 또는 장애 사항과 관련하여 욕설이나 비방을 포함하여 위해를 가하겠다는 육체적, 언어적 모욕 및 협박을 하는 행위 등</p> <p>B41¹⁾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마약 사용을 위한 물품 그리고/또는 술을 소지한 경우</p> <p>B42 허위로 화재경보 또는 기타 재해 경보를 울린 경우나, 혹은 폭파 위협을 한 경우 (G-J 조치에 한함)</p> <p>B43 허락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경우 (G-J 조치에 한함)</p> <p>1)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p>	<p>장된 교육장의 정학 처분과 수업 일수 30일에서 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p> <p>K. 조기 복교를 위한 청원의 기회가 없는 1년간의 정학과, 6-12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2기회학교에, 그리고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L.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과정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p>	<p>경과 보고서</p> <p>☐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습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4수준 (계속)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B44 난폭한 행동 및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심각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을 조성하는 경우 (예: 라이터, 벨트 버클, 우산 등)</p> <p>B45 난폭한 행동 및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사물을 사용하여 심각한 상해를 초래하는 경우 (예: 라이터, 벨트 버클, 우산 등)</p> <p>B46 방화한 경우</p> <p>B46 폭동을 부추기거나 야기한 경우</p> <p>B47¹⁾범주 II에 명시된 흉기를 소지한 경우</p> <p>B48²⁾적절한 허가 없이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 술을 사용한 경우</p> <p>B49³⁾제3수준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한 경우 (담당 교직원은 가능한 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제3수준 징계 조치를 모두 내린 다음, 제4수준 징계 조치를 내려야 한다. 또한 제3수준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할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징계 조치의 상한선은 제4수준 징계 조치다.) (G-J에 한함)</p> <p>1) 범주II에 열거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을 가는 줄)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 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p> <p>2)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p>	<p>G. 교장의 정학 처분</p> <p>H. 즉각 복학 조치가 수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J. 수업 일수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처분과 수업 일수 30일에서 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p> <p>K. 조기 복교를 위한 청원의 기회가 없는 1년간의 정학과, 6-12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2기회학교에, 그리고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L.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과정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p>	<p>☐ 부모의 외부 조력</p> <p>☐ 상담원의 중재</p> <p>☐ 생활 지도 회의</p> <p>☐ 개인 및 집단 상담</p> <p>☐ 또래 중재</p> <p>☐ 멘터링 프로그램</p> <p>☐ 갈등 해소</p> <p>☐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p> <p>☐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p> <p>☐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3) 이 위반 사항은 6학년에서 12학년까지의 제3수준 위반사항 B21-B33에만 적용된다.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

- 6학년부터 12학년까지: 제5수준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B51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p> <p>B52 교직원이나 학교 안전 요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p> <p>B53 학생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p> <p>B54 집단 폭력 사건에 가담한 경우</p> <p>B55¹⁾ 폭력 조직과 관련된 위험하고 위협적이며 폭력적인 행동을 한 경우</p> <p>B56²⁾ 신체적인 성적 공격에 가담하거나 다른 사람을 성적인 행동에 가담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경우</p> <p>B57²⁾ 규제 물질, 불법 약물 및 술을 판매 또는 공급하는 경우</p> <p>B58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에 정의된 흉기를 소지한 경우</p> <p>B59 범주II에 명시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p> <p>B60²⁾ 총기류를 제외한 범주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려고 시도한 경우 (L. 학년도 시작 전에 17세 미만인 학생 M. 학</p>	<p>I. 수업 일수 6~10일의 일정 기간 동안 정학에 처해지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J. 수업 일수 30일에서 90일 사이의 연장된 교육장의 정학 처분과 수업 일수 30일에서 60일 이후 조기 복교 조치에 대한 검토</p> <p>K. 조기 복교를 위한 청원의 기회가 없는 1년간의 정학과, 6-12학년 학생의 경우는 제2기회학교에, 그리고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대체 프로그램에 배치되는 교육장의 정학 처분</p>	<p>□ 부모의 외부 조력</p> <p>□ 상담원의 중재</p> <p>□ 생활 지도 회의</p> <p>□ 개인 및 집단 상담</p> <p>□ 또래 중재</p> <p>□ 멘터링 프로그램</p> <p>□ 갈등 해소</p> <p>□ 개인 행동 계약서 작성</p> <p>□ 단기 행동 발달 경과 보고서</p> <p>□ 학생 문제 관리 위원회 의뢰</p> <p>□ 사회 봉사 (학부모의 동의 필요)</p> <p>□ 지역사회 기관 위탁</p> <p>□ 적절한 약물 오용 상담 서비스 위탁</p> <p>정학 기간 후 복교하는 학생을 위한 지원</p> <p>정학 기간 후 복교</p>

위반 행위: 반항 행위	징계 조치의 범위	징계 조치와 함께 이행해야 하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p>년도 시작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과정 학생)</p> <p>B61²⁾총기류를 제외한 범주I이나 II에 정의된 흉기를 사용하여 교직원이나 학생,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L. 학년도 시작 전에 17세 미만인 학생 M. 학년도 시작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과정 학생)</p> <p>B61²⁾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경우 (L. 학년도 시작 전에 17세 미만인 학생 M. 학년도 시작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과정 학생)</p> <p>1) 특정 행동이 폭력 조직과 관련이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담당 교직원은 학교 중재 및 개발실의 폭력 조직 전담 부서에서 조언을 얻을 수 있다.</p> <p>2) 학교 당국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p>	<p>L.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과정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p> <p>M. 퇴학 (해당 학년도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에 17세가 된 일반 과정 학생들의 경우에 한함)</p>	<p>하는 학생에게는 학교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준 및 학업상의 기준에 부응하는 능력을 최대화하기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지원 서비스에는 생활 지도 중재 조치 범위 중 어느 단계 혹은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가장 적합한 여러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다.</p>

- 금지된 흉기류

금지된 흉기류: 범주 I	금지된 흉기류: 범주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스틀과 권총, 소음총, 전자 투창, 마취총 등을 포함하는 총기류 □ 엽총, 소총, 기관총, 또는 기관총과 유사하거나 개조하여 기관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무기류 □ 공기총, 용수철 총, 또는 용수철이나 공기로 발사하는 기타 장비 및 무기, 충전된 탄약통이나 공포탄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류 일체 (BB총, 페인트볼 총 등) □ 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 그래비티 나이프, 필럼 발리스틱 나이프, 지팡이 검 (칼이나 검이 안에 들어 있는 막대)* □ 단도, 송곳칼, 비수, 면도칼, 박스 커터, 케이스 커터, 다용도 칼, 기타 모든 칼 □ 경찰봉, 가죽 곤봉, 짧은 곤봉, 처커스틱* 및 금속제 관절 □ 모래주머니 및 모래 곤봉 □ 슬링샷이나 슬렁샷 □ 쿵푸 표창, 쌍절곤, 수리검 등과 같은 무술 도구들 □ 폭탄, 폭죽, 포탄 등과 같은 폭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 또는 치명적이거나 위험한 화학물질 □ 가짜 총 또는 가짜 흉기* □ 충전되거나 빈 탄약통 및 기타 탄약 □ 악취 폭탄 □ 마취용 펜이나 마취용 무기 □ 레이저 광선 포인터 □ 흉기로 사용될 수 있거나 흉기로 사용하기 위한 모든 종류의 치명적이거나 위험하거나 끝이 뾰족한 도구 (예: 가위, 손톱을 가는 줄, 깨진 유리, 쇠사슬, 철사) <p>* 범주 II에 열거된 품목 중,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예: 손톱을 가는 줄)을 소지한 혐의로 정학을 요청하기 전에, 교장은 경감 요인의 여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교장은 가짜 총이 진짜 총처럼 보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색깔, 크기, 모양, 외관 및 무게 등의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p>

[역주]

- 스위치블레이드 나이프(Switchblade knife): 단추나 스프링을 누르면 날이 펼쳐지는 칼
- 그래비티 나이프(Gravity knife): 원심력을 이용해 휘두르면 손잡이에서 날이 빠져나오는 칼
- 필럼 발리스틱 나이프(Pilum ballistic knife): 단추나 스프링을 누르면 손잡이에서 날이 빠져나오는 칼
- 슬링샷(Slingshot): 작고 무거운 추가 가죽 끈에 붙어 있는 흉기.
- 슬렁샷(Slungshot): 무거운 쇠몽치가 가죽 끈의 끝에 매달린 흉기
- 처커스틱(Chukka stick): 가죽 끈이나 쇠사슬 양끝에 두 개 이상의 딱딱한 물체를 매단 흉기

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

[학생용]

“당신의 참여가 올바른 인성을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눔과 배려, 예의, 책임감과 타인을 존중하는 인성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날 한국교육은 학교폭력과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생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학교·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한 내용은 기초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교육과학기술부 ‘인성교육 총론 정책연구팀’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 학 교 급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 학교 소재지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I 인성교육의 현주소

◎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태 ◎

1. 앞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뢰와 협력, 참여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높다 ④ 매우 높다

3. 현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4.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고르세요.

- ①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 ② 폭력적인 또래 문화 ③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
 ④ 경쟁적 사회 풍토 ⑤ 유해한 매체(성인 폭력물, 동영상, 인터넷, 게임 등)
 ⑥ 사회적으로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

5. 학교 교실 또는 화장실에서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그만 두도록 적극 행동한다 ② 친구들에게 알린다
 ③ 선생님께 말씀드린다 ④ 모른 척 지나간다

◎ 학생에 대한 이해 ◎

6. 다음은 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6-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6-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4.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5. 지난 일주일 동안 나도 견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6-6. 평소 부모님께서 나를 잘 알고 이해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6-7. 평소 부모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잘 사주시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8. 학교에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	①	②	③	④

7. 고민이 생겼을 때에 누구와 가장 먼저 상의합니까?

- ① 학교 선생님 ② 친구 ③ 부모님 ④ 형제자매
 ⑤ 전문상담기관 ⑥ 인터넷 ⑦ 혼자 고민한다

7-1.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까?

- ① 만나서 대화하기 ② 전화하기 ③ 이메일 주고받기
 ④ SNS(문자,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주고받기

◎ 인성교육 핵심요소 ◎

8. 학생 자신은 아래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8-1. 친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대화가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8-2.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3. 친구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8-4.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8-5.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8-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8-7.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8.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II

인성교육 실천과제

◎ 체육·예술 활동 활성화 ◎

◎ 독서활동 활성화 ◎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18. 학생의 두발, 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19. 학급회의,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0.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학생의 학급에서는 학급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 ① 매주 1회 이상 ② 2주에 한번 정도 ③ 한달에 한번 정도 ④ 없다

21.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1-1. 학생회 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21-2. 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①	②	③	④
21-3. 동아리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21-4.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①	②	③	④

◎ 언어문화 및 대입제도 개선 ◎

◎ 학교·가정·사회의 역할 확대 ◎

◎ 위기학생 대책 ◎

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

[교사용]

“당신의 참여가 올바른 인성을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눔과 배려, 예의, 책임감과 타인을 존중하는 인성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날 한국교육은 학교폭력과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학교·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한 내용은 기초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교육과학기술부 ‘인성교육 총론 정책연구팀’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 교직경력 : ① 5년 이하 ② 6년~10년 ③ 11년~15년 ④ 16년~20년 ⑤ 21년 이상
- 학 교 급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 학교 소재지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 학교규모 : ① 5학급 이하 ② 6~11학급 ③ 12~17학급 ④ 18~35학급 ⑤ 36~41학급
⑥ 42학급 이상

I 인성교육의 현주소

◎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태 ◎

1. 앞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뢰와 협력, 참여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높다 ④ 매우 높다

3. 현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4.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고르세요.

- ①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 ② 폭력적인 또래 문화 ③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
④ 경쟁적 사회 풍토 ⑤ 유해한 매체(성인 폭력물, 동영상, 인터넷, 게임 등)
⑥ 사회적으로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

5. 학교나 등굣길에서 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그만 두도록 적극 제지한다 ②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신고한다 ④ 모른 척 지나간다

6. 바람직한 인성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기(0-3세) ② 유아기(4-5세)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 교사에 대한 이해 ◎

7. 다음은 선생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7-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7-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4.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5. 지난 일주일 동안 나도 걸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6. 평소 학생들이 내 말을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7. 학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선생님과 협력한다.	①	②	③	④
7-8. 학생지도를 위해 학부모와 편하게 상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학생이 고민이 생겼을 때에 누구와 가장 먼저 상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선생님 ② 친구 ③ 부모님 ④ 형제 자매
⑤ 전문상담기관 ⑥ 인터넷 ⑦ 혼자 고민한다

9. 선생님께서 학생과 가장 많이 쓰는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만나서 대화하기 ② 전화하기 ③ 이메일 주고받기
④ SNS(문자,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주고받기

◎ 인성교육 핵심요소 ◎

10. 요즘 학생들이 아래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친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친구와 대화가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10-2.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3. 친구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4.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10-5.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10-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7.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8.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	①	②	③	④

II 인성교육 실천과제

◎ 체육·예술 활동 활성화 ◎

◎ 독서활동 활성화 ◎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20. 학생의 두발, 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21. 학생들이 학급회의,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2.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1. 학생회 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22-2. 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①	②	③	④
22-3. 동아리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22-4.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①	②	③	④

◎ 언어문화 및 대입제도 개선 ◎

◎ 학교·가정·사회의 역할 확대 ◎

◎ 위기학생 대책 ◎

2012

인성교육 실태조사

[학부모용]

“당신의 참여가 올바른 인성을 만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나눔과 배려, 예의, 책임감과 타인을 존중하는 인성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날 한국교육은 학교폭력과 자살, 청소년 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학교·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평소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한 내용은 기초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 7

교육과학기술부 ‘인성교육 정책연구팀’

다음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 별 : ① 남자 ② 여자
- 자녀 학교급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 학교 소재지 : ①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I 인성교육의 현주소

◎ 인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태 ◎

1. 앞으로 올바른 인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생활에서 지금보다 더 중요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학생들의 신뢰와 협력, 참여 등 더불어 사는 능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낮다 ② 낮다 ③ 높다 ④ 매우 높다

3. 현재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수준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다 ③ 만족한다 ④ 매우 만족한다

4. 인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가지만 고르세요.

- ① 부모님의 잘못된 교육관 ② 폭력적인 또래 문화
 ③ 성적 위주의 학교 교육 ④ 경쟁적 사회 풍토
 ⑤ 유해한 매체(성인 폭력물, 동영상, 인터넷, 게임 등) ⑥ 사회적으로 잘못된 어른들의 모습

5. 만약 귀하가 길을 가다가 어떤 학생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그만 두도록 적극 제지한다 ②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신고한다 ④ 모른 척 지나간다

6. 바람직한 인성 형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영아기(0-3세) ② 유아기(4-5세) ③ 초등학교
 ④ 중학교 ⑤ 고등학교

◎ 학부모에 대한 이해 ◎

7.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7-1.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7-2. 내가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①	②	③	④
7-3.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7-4. 평소 내 자녀가 내 말을 잘 듣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5. 지난 일주일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6. 지난 일주일 동안 나도 걸잡을 수 없이 화가 치민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7-7. 평소 내 자녀가 필요한 것을 잘 사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7-8. 자녀교육을 위해 학교 선생님과 편하게 상의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8. 귀하는 자녀가 고민이 생겼을 때에 누구와 가장 먼저 상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선생님 ② 친구 ③ 부모님 ④ 형제자매
 ⑤ 전문상담기관 ⑥ 인터넷 ⑦ 혼자 고민한다

9. 귀하가 자녀와 가장 많이 쓰는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① 만나서 대화하기 ② 전화하기 ③ 이메일 주고받기
 ④ SNS(문자, 카카오톡, 마이피플 등) 주고받기

◎ 인성교육 핵심요소 ◎

10. 귀하의 자녀가 아래에 대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10-1. 친구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친구와 대화가 잘 통한다.	①	②	③	④
10-2. 어려운 사람을 잘 도와주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3. 친구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10-4.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양보한다.	①	②	③	④
10-5. 교통신호를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10-6.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0-7.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잘 용서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10-8. 자신이 맡은 일을 끝까지 완수한다 .	①	②	③	④

II 인성교육 실천과제

◎ 체육·예술 활동 활성화 ◎

◎ 독서활동 활성화 ◎

◎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

20. 학생의 두발, 복장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모른다 ② 알고 있다

21. 학생들이 학급회의, 학생회 활동, 봉사활동 등 학생 자치활동에 충분히 참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22. 학생회 자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사항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1. 학생회 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22-2. 학생의 학교규칙 제정 참여	①	②	③	④
22-3. 동아리활동 활성화	①	②	③	④
22-4. 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①	②	③	④

◎ 언어문화 및 대입제도 개선 ◎

◎ 학교·가정·사회의 역할 확대 ◎

◎ 위기학생 대책 ◎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설문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의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향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인성교육비전 연구팀

설문관련 문의 : 선미숙 (이화여대 교육학과, schoolsurvey@hanmail.net)

1.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다음은 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1-1. 학교의 설립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② 사립

1-2. 현재 재학중인 학교급과 학년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4학년
 ② 초등학교 5학년
 ③ 초등학교 6학년
 ④ 중학교 1학년
 ⑤ 중학교 2학년
 ⑥ 중학교 3학년
 ⑦ 고등학교 1학년

⑧ 고등학교 2학년

⑨ 고등학교 3학년

1-2-1. 어떤 유형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습니까?

① 일반고 ② 특성화고 ③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④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⑤ 기타

1-3.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1-4.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중소도시 ② 읍면지역

1-5. 학생이 다니고 있는 문1-2에서 학년만 학년은 몇 개의 학급이 있나요?

(예: 학생이 다니고 있는 2 학년은 몇 개의 학급이 있나요?)

① 1학급 ② 2학급 ③ 3학급 ④ 4학급 ⑤ 5학급 ⑥ 6학급 ⑦ 7학급

⑧ 8학급 ⑨ 9학급 ⑩ 10학급 ⑪ 11학급 ⑫ 12학급 ⑬ 13학급 이상

1-6. 설문에 응답하는 학생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 ② 여

1-7. 설문에 응답하는 학생은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전교학생회장/부회장

② 학급반장/부반장

③ 일반학생(전교학생회장/부회장이나 학급반장/부반장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

2.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참여와 학생자치

- 다음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생 참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2-1 학생으로서 학교운영에 대해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급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 다
2-8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2-9 학생회는 필요한 비용을 학교에 요청할 수 있다.	①	②	③
2-10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①	②	③
2-11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시 성적 등에 의해 자격을 제한한다.	①	②	③

2-12. 학교에 학생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
- ③ 잘 모르겠다.

2-12-1. 학생회실이 없다면, 학생회실이 필요한 경우(전교 학생회의(어린이 회의) 등)에 주로 활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일반교실 ② 컴퓨터실/음악실/미술실/과학실 등 교과교실 ③ 도서관
- ④ 다목적실(학교운영위원회실, 학교회의실 포함) ⑤ 강당, 시청각실 ⑥ 기타

2-12-2. 다음 중 학생회실에 구비된 물품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책상 ② 의자 ③ 회의테이블 ④ PC ⑤ 프린터
- ⑥ 복사기/복합기 ⑦ 종이, 문구류 ⑧ 칠판 ⑨ 빔 프로젝터 ⑩ 마이크(음향시설)
- ⑪ 의사봉 ⑫ 잘 모르겠다

3. 학교규칙

- 다음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학교규칙(학칙, 학생생활규정, 학교생활규칙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3-1.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1-1. 학교규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① 가정통신문 발송 ② 학교홈페이지 ③ 설명회 ④ 유인물 ⑤ 게시판
- ⑥ 교내방송 ⑦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⑧ 전교생 조회시
- ⑨ 기타 방법 (_____)

3-2.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 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3-3.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4. 학교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어떤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① 학생회 임원 ② 학년대표 ③ 학급대표 ④ 일반학생 ⑤ 기타

3-5.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③ 잘 모르겠다

3-6. 학교규칙의 제정 및 개정 시에 학부모들이 참여한다면 어떤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① 학생회 임원의 학부모 ② 학년대표의 학부모 ③ 학급대표의 학부모
- ④ 일반학생의 학부모 ⑤ 기타 ⑥ 잘 모르겠다

3-7.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 **토론회, 공개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이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 ⑤ 매우 그렇다 ⑥ 잘 모르겠다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3-8 우리학교는 학교학생들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다양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9 우리학교는 학교규칙과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 다음은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4-1 동아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동아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단위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동아리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6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봉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8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봉사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9.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학교 시간표 상의 동아리활동)으로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① 학술 활동(영어회화, 과학탐구, 컴퓨터, 독서토론 등)
- ② 문화예술 활동(문예창작, 사진반, 합창반, 밴드반 등)
- ③ 스포츠 활동(축구반, 야영반, 배드민턴반 등)
- ④ 실습노작 활동(요리반, 꽃꽂이반, 로봇제작반 등)
- ⑤ 청소년단체 활동(스카우트, 누리단, 청소년적십자단 등)
- ⑥ 기타 (_____)

4-10. 현재 속한 교육과정 내 동아리반(학교 시간표 상의 동아리활동)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② 앞으로 내가 선택할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 ③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
- ④ 희망하는 동아리에 들어가지 못하여 대안으로 선택
- ⑤ 어떤 동아리나 상관없다고 생각하여
- ⑥ 기타 (_____)

4-11.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학교 시간표 상의 동아리활동)외에 본인이 속한 ‘**개별적인 동아리(개별적인 동아리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 외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동아리를 말함)**’가 또 있다면 어떤 동아리입니까? 두 개 이상인 경우 **주로 활동하는 동아리를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술 활동(영어회화, 과학탐구, 컴퓨터, 독서토론 등)
- ② 문화예술 활동(문예창작, 사진반, 합창반, 밴드반 등)
- ③ 스포츠 활동(축구반, 야영반, 배드민턴반 등)
- ④ 실습노작 활동(요리반, 꽃꽂이반, 로봇제작반 등)
- ⑤ 청소년단체 활동(스카우트, 누리단, 청소년적십자단 등)
- ⑥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은 하지 않음
- ⑦ 기타 (_____)

4-12.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을 선택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 ② 앞으로 내가 선택할 진로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 ③ 친구와 함께 활동하고 싶어서
- ④ 취미생활을 위해서
- ⑤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 ⑥ 기타 (_____)

4-13. 학기 중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_____ 시간

4-14. 개별적인 동아리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시간이 없어서
- ② 부모님의 반대로
- ③ 학교에 교육과정 내 동아리활동(학교 시간표 상의 동아리활동) 외의 동아리가 없기 때문에
- ④ 하고 싶지 않아서
- ⑤ 기타 (_____)

4-15. 학교일과중(수업시간) 선생님과 함께 참여하는 봉사활동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① 학급단위로 담임 선생님과 함께 봉사활동(학급마다 봉사활동 내용이 다름)
- ② 학년 전체가 똑같은 시간에 봉사활동(봉사활동 내용이 모두 같음)
- ③ 동아리 단위로 동아리 지도 선생님과 함께 봉사활동(동아리에 따라 봉사활동 내용이 다름)

4-16. 개인 봉사활동은 어느 시기에 하고 있습니까?

- ① 여름방학 중 ② 겨울방학 중 ③ 학기 중 방과후 평일 오후
- ④ 학기 중 주말 ⑤ 개인 봉사활동은 하지 않음

4-17. 개인 봉사활동은 **주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① 친구들과 함께 기관 방문 ② 부모님과 함께 기관 방문
- ③ 혼자서 기관 방문 ④ 사이버 봉사활동
- ⑤ 기타 (_____)

4-18. **개인 봉사활동 경험**은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알거나 직업의 특성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봉사활동을 두가지 이상 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4-19. **동아리활동으로 참여한 봉사활동 경험**은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것을 알거나 직업의 특성을 배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봉사활동을 두가지 이상 하는 경우 가장 많이 하는 봉사활동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보통이다
- ④ 도움이 되었다 ⑤ 매우 도움이 되었다.
- ⑥ 참여한 봉사활동이 없다

4-20. **주로** 어떤 봉사활동이 보람이 있었습니까?

- ① 교내 봉사활동 ② 지역사회 봉사활동 ③ 자연환경 보호활동
- ④ 캠페인활동 ⑤ 기타 (_____)

4-21.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기회가 있다면 참여희망 정도는 어떠합니까?

- ① 전혀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② 별로 참여하고 싶지 않다 ③ 보통이다
- ④ 참여하고 싶다 ⑤ 반드시 참여하고 싶다.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설문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의 실태분석을 위한 설문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향후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분석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이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8월

인성교육비전 연구팀

설문관련 문의 : 선미숙 (이화여대 교육학과, schoolsurvey@hanmail.net)

1. 통계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 다음은 통계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1-1.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설립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국·공립 ② 사립

1-2.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학교급은 무엇입니까?

- 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

1-2-1. 고등학교인 경우, 어떤 유형의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 ① 일반고 ② 특성화고 ③ 특목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마이스터고)
④ 자율고(자율형 사립고, 자율형 공립고) ⑤ 기타

1-3. 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세종시
⑨ 경기 ⑩ 강원 ⑪ 충북 ⑫ 충남 ⑬ 전북 ⑭ 전남 ⑮ 경북 ⑯ 경남 ⑰ 제주

1-4.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중소도시 ② 읍면지역

1-5. 학교규모(학교전체 학급 수(특수학급 포함))는 몇 학급입니까?_____ 학급

1-6. 설문에 응답하는 선생님은 아래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학생(생활지도)부장 또는 학생(생활지도)부 소속 교사
② 학생(생활지도)부에 속하지 않은 일반 담임교사

1-7. 응답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② 여

1-8. 응답자의 연령은 몇 세입니까? 만 _____세

1-9. 응답자의 교사 경력은 몇 년입니까? (만 1년이 안되시는 분들은 '1년'으로 기록해 주십시오)

만 _____년

2.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참여와 학생자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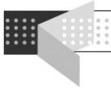
- 다음은 선생님께서 재직하시는 학교의 **학생참여 실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매우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2-1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건의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학교가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6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급회의가 잘 운영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항	그렇 지 않다	그렇 다	잘 모르 겠다
2-8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2-9 학생회가 예산 청구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2-10 학생회 예결산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①	②	③
2-11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시 성적 등에 의해 자격을 제한한다.	①	②	③

2-12. 학교에 학생회실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 ① 그렇지 않다.
- ② 그렇다.
- ③ 잘 모르겠다.



2-12-1. 학생회실이 없다면, 학생회실이 필요한 경우(전교 학생회의(어린이 회의) 등)에 **주로** 활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① 일반교실 ② 컴퓨터실/음악실/미술실/과학실 등 교과교실 ③ 도서관
- ④ 다목적실(학교운영위원회실, 학교회의실 포함) ⑤ 강당, 시청각실 ⑥ 기타.

2-12-2. 다음 중 학생회실에 구비된 물품을 **모두**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 책상 ② 의자 ③ 회의테이블 ④ PC ⑤ 프린터
- ⑥ 복사기/복합기 ⑦ 종이, 문구류 ⑧ 칠판 ⑨ 빔 프로젝터 ⑩ 마이크(음향시설)
- ⑪ 의사봉

3. 학교규칙

- 다음은 선생님께서 재직하시는 학교의 **학교규칙(학칙, 학생생활규정, 학교생활규칙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3-1. 우리 학교의 학교규칙을 알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1-1. 학교규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① 가정통신문 발송 ② 학교홈페이지 ③ 설명회 ④ 유인물 ⑤ 게시판
- ⑥ 교내방송 ⑦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⑧ 전교생 조회시 ⑨ 기타 방법

3-2.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선생님이 재직하실 때 학교 규칙 제·개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3.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3-4. 학교규칙의 제정 및 개정 시에 학생들이 참여한다면 어떤 학생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 ① 학생회 임원 ② 학년대표 ③ 학급대표 ④ 일반학생 ⑤ 기타

- 3-5.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학부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3-6. 학교규칙의 제정 및 개정 시에 학부모들이 참여한다면 어떤 학부모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모두** 고르세요.
 ① 학생회 임원의 학부모 ② 학년대표의 학부모
 ③ 학급대표의 학부모 ④ 일반학생의 학부모 ⑤ 기타
- 3-7.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교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3-8. 현재 재직중인 학교에서 학교규칙을 제·개정할 때 **토론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 다음의 질문을 잘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 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9 우리학교는 학교규칙의 준수·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10 우리학교는 학교규칙과 관련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을 준수·실천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

- 다음은 선생님께서 재직하시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활동 및 봉사활동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질문을 읽고 해당란에 체크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4-1 동아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2 동아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3 학교에서 학급 또는 학년단위로 모든 학생이 똑같은 동아리활동을 하도록 한다.	①	②	③	④	⑤
4-4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를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5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동아리 활동을 학교생활 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6 봉사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7 봉사활동에 대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4-8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수행한 봉사 활동을 학교생활기록부에 잘 기록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 총론연구팀의 인성교육 실태조사 결과

가. 성 별

〈표 1〉 민주적절차를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규칙 결정

구분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χ^2
학 생	전체	11456(36.5)	19908(63.5)	31364(100)	12.900***
	남	5431(35.5)	9857(64.5)	15288(100)	
	여	6025(37.5)	10051(62.5)	16076(100)	
학 부 모	전체	4002(26.2)	11256(73.8)	15258(100)	15261.166***
	남	1076(26.5)	2989(73.5)	4065(100)	
	여	2926(26.1)	8267(73.9)	11193(100)	
교 사	전체	813(7.2)	10467(92.8)	11280(100)	50.446***
	남	208(5.0)	3986(95.0)	4194(100)	
	여	605(8.5)	6481(91.5)	7086(100)	

***p<.001

〈표 2〉 학생의 충분한 학생자치활동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 생	전체	2577(8.2)	9065(28.9)	15994(51.0)	3728(11.9)	31364(100)	96.532***
	남	1359(8.9)	4167(27.3)	7727(50.5)	2035(13.3)	15288(100)	
	여	1218(7.6)	4898(30.5)	8267(51.4)	1693(10.5)	16076(100)	
학 부 모	전체	686(4.5)	4800(31.5)	8420(55.2)	1352(8.9)	15258(100)	15298.747***
	남	191(4.7)	1179(29.0)	2251(55.4)	444(10.9)	4065(100)	
	여	495(4.4)	3621(32.4)	6169(55.1)	908(8.1)	11193(100)	
교 사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9.853*
	남	250(6.0)	1817(43.3)	1921(45.8)	206(4.9)	4194(100)	
	여	370(5.2)	3219(45.4)	3210(45.3)	287(4.1)	7086(100)	

***p<.001

〈표 3〉 학급회의 개최 횟수

구분	매주 1회	2주 1회	1달 1회	없다	전체	χ^2
학생 전체	1942(6.2)	4097(13.1)	12470(39.8)	12855(41.0)	31364(100)	177.843***
남	1131(7.4)	2256(14.8)	5993(39.2)	5908(38.6)	15288(100)	
여	811(5.0)	1841(11.5)	6477(40.3)	6947(43.2)	16076(100)	

***p<.001

〈표 4〉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 학생회 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1534(4.9)	4439(14.2)	18165(57.9)	7226(23.0)	31364(100)	267.808***
남	1008(6.6)	2179(14.3)	8338(54.5)	3763(24.6)	15288(100)	
여	526(3.3)	2260(14.1)	9827(61.1)	3463(21.5)	16076(100)	
학부모 전체	221(1.4)	1330(8.7)	10646(69.8)	3061(20.1)	15258(100)	15311.857***
남	82(2.0)	348(8.6)	2690(66.2)	945(23.2)	4065(100)	
여	139(1.2)	982(8.8)	7956(71.1)	2116(18.9)	11193(100)	
교사 전체	56(0.5)	840(7.4)	8155(72.3)	2229(19.8)	11280(100)	113.606***
남	27(0.6)	234(5.6)	2911(69.4)	1022(24.4)	4194(100)	
여	29(0.4)	606(8.6)	5244(74.0)	1207(17.0)	7086(100)	

***p<.001

〈표 5〉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1268(4.0)	3539(11.3)	16780(53.5)	9777(31.2)	31364(100)	155.262***
남	800(5.2)	1885(12.3)	8044(52.6)	4559(29.8)	15288(100)	
여	468(2.9)	1654(10.3)	8736(54.3)	5218(32.5)	16076(100)	
학부모 전체	196(1.3)	1475(9.7)	10135(66.4)	3452(22.6)	15258(100)	15296.481***
남	73(1.8)	444(10.9)	2565(63.1)	983(24.2)	4065(100)	
여	123(1.1)	1031(9.2)	7570(67.6)	2469(22.1)	11193(100)	
교사 전체	158(1.4)	1463(13.0)	7715(68.4)	1944(17.2)	11280(100)	59.703***
남	64(1.5)	436(10.4)	2865(68.3)	829(19.8)	4194(100)	
여	94(1.3)	1027(14.5)	4850(68.4)	1115(15.7)	7086(100)	

***p<.001

〈표 6〉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동아리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1086(3.5)	3064(9.8)	16106(51.4)	11108(35.4)	31364(100)	149.562***
남	705(4.6)	1606(10.5)	7572(49.5)	5405(35.4)	15288(100)	
여	381(2.4)	1458(9.1)	8534(53.1)	5703(35.5)	16076(100)	
학부모 전체	152(1.0)	923(6.0)	9888(64.8)	4295(28.1)	15258(100)	15284.281***
남	59(1.5)	250(6.2)	2537(62.4)	1219(30.0)	4065(100)	
여	93(0.8)	673(6.0)	7351(65.7)	3076(27.5)	11193(100)	
교사 전체	53(0.5)	535(4.7)	7449(66.0)	3243(28.8)	11280(100)	57.410***
남	25(0.6)	159(3.8)	2645(63.1)	1365(32.5)	4194(100)	
여	28(0.4)	376(5.3)	4804(67.8)	1878(26.5)	7086(100)	

***p<.001

〈표 7〉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학생 전체	1310(4.2)	3717(11.9)	17325(55.2)	9012(28.7)	31364(100)	267.589***
남	873(5.7)	2056(13.4)	8100(53.0)	4259(27.9)	15288(100)	
여	437(2.7)	1661(10.3)	9225(57.4)	4753(29.6)	16076(100)	
학부모 전체	185(1.2)	1237(8.1)	9626(63.1)	4210(27.6)	15258(100)	15299.091***
남	76(1.9)	386(9.5)	2468(60.7)	1135(27.9)	4065(100)	
여	109(1.0)	851(7.6)	7158(64.0)	3075(27.5)	11193(100)	
교사 전체	93(0.8)	1124(10.0)	7556(67.0)	2507(22.2)	11280(100)	20.435***
남	52(1.2)	418(10.0)	2849(67.9)	875(20.9)	4194(100)	
여	41(0.6)	706(10.0)	4707(66.4)	1632(23.0)	7086(100)	

***p<.001

나. 소재지별

〈표 8〉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학생의 학교생활규칙 결정

구분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χ^2
전체	11,456(36.5)	19,908(63.5)	31,364(100)	
학				2.716***
대도시	4,250(36.1)	7,531(63.9)	1,781(100)	
중소도시	4,582(37.1)	7,779(62.9)	12,361(100)	
농어촌	2,624(36.3)	4,598(63.7)	7,222(100)	
학				10.385***
전체	4,002(26.2)	11,256(73.8)	15,258(100)	
대도시	1,775(27.6)	4,663(72.4)	6,438(100)	
중소도시	1,383(25.2)	4,106(74.8)	5,489(100)	
농어촌	844(25.3)	2,487(74.7)	3,331(100)	
교				1.555***
전체	813(7.2)	10,467(92.8)	11,280(100)	
대도시	367(7.5)	4,495(92.5)	4,862(100)	
중소도시	307(7.0)	4,074(93.0)	4,381(100)	
농어촌	139(6.8)	1,898(93.2)	2,037(100)	

***p<.001

〈표 9〉 학생의 충분한 학생자치활동 참여

구분	전혀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χ^2
전체	2,577(8.2)	9,065(28.9)	15,994(51.0)	3,728(11.9)	31,364(100)	
학						83.306***
대도시	1,016(8.6)	3,296(28.0)	5,999(50.9)	1,470(12.5)	1,781(100)	
중소도시	1,025(8.3)	3,866(31.3)	6,069(49.1)	1,401(11.3)	12,361(100)	
농어촌	536(7.4)	1,903(26.4)	3,926(54.4)	857(11.9)	7,222(100)	
학						83.431***
전체	686(4.5)	4,800(31.5)	8,420(55.2)	1,352(8.9)	15,258(100)	
대도시	313(4.9)	2,072(32.2)	3,489(54.2)	564(8.8)	6,438(100)	
중소도시	234(4.3)	1,838(33.5)	3,016(54.9)	401(7.3)	5,489(100)	
농어촌	139(4.2)	890(26.7)	1,915(57.5)	387(11.6)	3,331(100)	
교						26.137***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대도시	269(5.5)	2,262(46.5)	2,144(44.1)	187(3.8)	4,862(100)	
중소도시	240(5.5)	1,946(44.4)	2,001(45.7)	194(4.4)	4,381(100)	
농어촌	111(5.4)	828(40.6)	986(48.4)	112(5.5)	2,037(100)	

***p<.001

〈표 10〉 학급회의 개최 횟수

구분	매주 1회	2주 1회	1달 1회	없다	전체	χ^2
전체	1,942(6.2)	4,097(13.1)	12,470(39.8)	12,855(41.0)	31,364(100)	110.222***
학 대도시	657(5.6)	1,443(12.2)	4,699(39.9)	4,982(42.3)	11,781(100)	
생 중도시	851(6.9)	1,829(14.8)	4,656(37.7)	5,025(40.7)	12,361(100)	
농어촌	434(6.0)	825(11.4)	3,115(43.1)	2,848(39.4)	7,222(100)	

***p<.001

〈표 11〉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학생회 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χ^2
전체	1,534(4.9)	4,439(14.2)	18,165(57.9)	7,226(23.0)	31,364(100)	73.527***
학 대도시	592(5.0)	1,629(13.8)	6,629(56.3)	2,931(24.9)	1,781(100)	
생 중도시	599(4.8)	1,908(15.4)	7,217(58.4)	2,637(21.3)	12,361(100)	
농어촌	343(4.7)	902(12.5)	4,319(59.8)	1,658(23.0)	7,222(100)	
학 부모	221(1.4)	1,330(8.7)	10,646(69.8)	3,061(20.1)	15,258(100)	48.846***
대도시	96(1.5)	610(9.5)	4,442(69.0)	1,290(20.0)	6,438(100)	
중도시	73(1.3)	468(8.5)	3,959(72.1)	989(18.0)	5,489(100)	
농어촌	52(1.6)	252(7.6)	2,245(67.4)	782(23.5)	3,331(100)	
교 사	56(.5)	840(7.4)	8,155(72.3)	2,229(19.8)	11,280(100)	44.833***
대도시	27(.6)	426(8.8)	3,538(72.8)	871(17.9)	4,862(100)	
중도시	19(.4)	307(7.0)	3,159(72.1)	896(20.5)	4,381(100)	
농어촌	10(.5)	107(5.3)	1,458(71.6)	462(22.7)	2,037(100)	

***p<.001

〈표 12〉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구분	전혀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전체	χ^2
전체	1,268(4.0)	3,539(11.3)	16,780(53.5)	9,777(31.2)	31,364(100)	117.188***
학 대도시	507(4.3)	1,197(10.2)	6,026(51.2)	4,051(34.4)	1,781(100)	
생 중도시	484(3.9)	1,547(12.5)	6,725(54.4)	3,605(29.2)	12,361(100)	
농어촌	277(3.8)	795(11.0)	4,029(55.8)	2,121(29.4)	7,222(100)	
학 부모	196(1.3)	1,475(9.7)	10,135(66.4)	3,452(22.6)	15,258(100)	33.756***
대도시	90(1.4)	634(9.8)	4,206(65.3)	1,508(23.4)	6,438(100)	
중도시	65(1.2)	562(10.2)	3,743(68.2)	1,119(20.4)	5,489(100)	
농어촌	41(1.2)	279(8.4)	2,186(65.6)	825(24.8)	3,331(100)	
교 사	158(1.4)	1,463(13.0)	7,715(68.4)	1,944(17.2)	11,280(100)	23.197***
대도시	80(1.6)	688(14.2)	3,307(68.0)	787(16.2)	4,862(100)	
중도시	58(1.3)	552(12.6)	2,988(68.2)	783(17.9)	4,381(100)	
농어촌	20(1.0)	223(10.9)	1,420(69.7)	374(18.4)	2,037(100)	

***p<.001

〈표 13〉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동아리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086(3.5)	3,064(9.8)	16,106(51.4)	11,108(35.4)	31,364(100)	47.332***
학	415(3.5)	1,101(9.3)	5,858(49.7)	4,407(37.4)	1,781(100)	
생	410(3.3)	1,308(10.6)	6,422(52.0)	4,221(34.1)	12,361(100)	
농어촌	261(3.6)	655(9.1)	3,826(53.0)	2,480(34.3)	7,222(100)	
전체	152(1.0)	923(6.0)	9,888(64.8)	4,295(28.1)	15,258(100)	41.23***
학	68(1.1)	417(6.5)	4,121(64.0)	1,832(28.5)	6,438(100)	
부	51(9)	316(5.8)	3,710(67.6)	1,412(25.7)	5,489(100)	
모	33(1.0)	190(5.7)	2,057(61.8)	1,051(31.6)	3,331(100)	
전체	53(5)	535(4.7)	7,449(66.0)	3,243(28.8)	11,280(100)	25.185***
교	27(6)	253(5.2)	3,290(67.7)	1,292(26.6)	4,862(100)	
사	21(5)	193(4.4)	2,852(65.1)	1,315(30.0)	4,381(100)	
농어촌	5(2)	89(4.4)	1,307(64.2)	636(31.2)	2,037(100)	

***p<.001

〈표 14〉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310(4.2)	3,717(11.9)	17,325(55.2)	9,012(28.7)	31,364(100)	48.611***
학	499(4.2)	1,340(11.4)	6,309(53.6)	3,633(30.8)	1,781(100)	
생	510(4.1)	1,552(12.6)	6,901(55.8)	3,398(27.5)	12,361(100)	
농어촌	301(4.2)	825(11.4)	4,115(57.0)	1,981(27.4)	7,222(100)	
전체	185(1.2)	1,237(8.1)	9,626(63.1)	4,210(27.6)	15,258(100)	21.848***
학	78(1.2)	539(8.4)	4,042(62.8)	1,779(27.6)	6,438(100)	
부	67(1.2)	455(8.3)	3,545(64.6)	1,422(25.9)	5,489(100)	
모	40(1.2)	243(7.3)	2,039(61.2)	1,009(30.3)	3,331(100)	
전체	93(8)	1,124(10.0)	7,556(67.0)	2,507(22.2)	11,280(100)	9.835***
교	45(9)	500(10.3)	3,288(67.6)	1,029(21.2)	4,862(100)	
사	38(9)	429(9.8)	2,896(66.1)	1,018(23.2)	4,381(100)	
농어촌	10(5)	195(9.6)	1,372(67.4)	460(22.6)	2,037(100)	

***p<.001

다. 교직경력별

〈표 15〉 민주적 절차를 통한 학생의 학교 생활규칙 결정

구분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χ^2
전체	813(7.2)	10,467(92.8)	11,280(100)	56.939***
교 5년이하	219(9.3)	2142(90.7)	2361(100)	
직 6-10년	175(9.2)	1733(90.8)	1908(100)	
경 11-15년	124(8.2)	1386(91.8)	1510(100)	
력 16-20년	56(4.9)	1097(95.1)	1153(100)	
21년이상	239(5.5)	4109(94.5)	4348(100)	

***p<.001

〈표 16〉 학생의 충분한 학생자치활동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128.834***
교 5년이하	96(4.1)	874(37.0)	1250(52.9)	141(6.0)	2361(100)	
직 6-10년	125(6.6)	808(42.3)	879(46.1)	96(5.0)	1908(100)	
경 11-15년	85(5.6)	707(46.8)	655(43.4)	63(4.2)	1510(100)	
력 16-20년	69(6.0)	554(48.0)	485(42.1)	45(3.9)	1153(100)	
21년이상	245(5.6)	2093(48.1)	1862(42.8)	148(3.4)	4348(100)	

***p<.001

〈표 17〉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학생회 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56(5)	840(7.4)	8,155(72.3)	2,229(19.8)	11,280(100)	25.314*
교 5년이하	10(0.4)	160(6.8)	1702(72.1)	489(20.7)	2361(100)	
직 6-10년	18(0.9)	151(7.9)	1407(73.7)	332(17.4)	1908(100)	
경 11-15년	7(0.5)	132(8.7)	1080(71.5)	291(19.3)	1510(100)	
력 16-20년	3(0.3)	93(8.1)	825(71.6)	232(20.1)	1153(100)	
21년이상	18(0.4)	304(7.0)	3141(72.2)	885(20.4)	4348(100)	

***p<.001

〈표 18〉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58(1.4)	1,463(13.0)	7,715(68.4)	1,944(17.2)	11,280(100)	24.486*
교 5년이하	32(1.4)	293(12.4)	1591(67.4)	445(18.8)	2361(100)	
직 6-10년	30(1.6)	296(15.5)	1277(66.9)	305(16.0)	1908(100)	
경력 11-15년	19(1.3)	179(11.9)	1029(68.1)	283(18.7)	1510(100)	
16-20년	16(1.4)	138(12.0)	797(69.1)	202(17.5)	1153(100)	
21년이상	61(1.4)	557(12.8)	3021(69.5)	709(16.3)	4348(100)	

***p<.001

〈표 19〉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동아리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53(0.5)	535(4.7)	7,449(66.0)	3,243(28.8)	11,280(100)	25.698*
교 5년이하	12(0.5)	117(5.0)	1511(64.0)	721(30.5)	2361(100)	
직 6-10년	14(0.7)	113(5.9)	1273(66.7)	508(26.6)	1908(100)	
경력 11-15년	9(0.6)	76(5.0)	975(64.6)	450(29.8)	1510(100)	
16-20년	5(0.4)	46(4.0)	777(67.4)	325(28.2)	1153(100)	
21년이상	13(0.3)	183(4.2)	2913(67.0)	1239(28.5)	4348(100)	

***p<.001

〈표 20〉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93(.8)	1,124(10.0)	7,556(67.0)	2,507(22.2)	11,280(100)	98.812***
교 5년이하	14(0.6)	172(7.3)	1502(63.6)	673(28.5)	2361(100)	
직 6-10년	22(1.2)	190(10.0)	1274(66.8)	422(22.1)	1908(100)	
경력 11-15년	11(0.7)	154(10.2)	1004(66.5)	341(22.6)	1510(100)	
16-20년	9(0.8)	139(12.1)	765(66.3)	240(20.8)	1153(100)	
21년이상	37(0.9)	469(10.8)	3011(69.3)	831(19.1)	4348(100)	

***p<.001

라. 학교규모별

〈표 21〉 민주적절차를 통한 학생의 학교 생활규칙 결정

구분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χ^2
전체	813(7.2)	10,467(92.8)	11,280(100)	14.349*
학				
5학년이하	24(6.3)	359(93.7)	383(100)	
6-11학년	101(7.5)	1249(92.5)	1350(100)	
12-17학년	67(6.3)	1000(93.7)	1067(100)	
18-35학년	397(6.7)	5516(93.3)	5913(100)	
모				
36-41학년	122(8.2)	1361(91.8)	1483(100)	
42학년이상	102(9.4)	982(90.6)	1084(100)	

***p<.001

〈표 22〉 학생의 충분한 학생자치활동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71.292***
학						
5학년이하	17(4.4)	140(36.6)	193(50.4)	33(8.6)	383(100)	
6-11학년	66(4.9)	547(40.5)	652(48.3)	85(6.3)	1350(100)	
12-17학년	52(4.9)	457(42.8)	512(48.0)	46(4.3)	1067(100)	
18-35학년	345(5.8)	2677(45.3)	2680(45.3)	211(3.6)	5913(100)	
모						
36-41학년	70(4.7)	705(47.5)	644(43.4)	64(4.3)	1483(100)	
42학년이상	70(6.5)	510(47.0)	450(41.5)	54(5.0)	1084(100)	

***p<.001

〈표 23〉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 학생회 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69.889***
학						
5학년이하	2(0.5)	15(3.9)	277(72.3)	89(23.2)	383(100)	
6-11학년	12(0.9)	97(7.2)	954(70.7)	287(21.3)	1350(100)	
12-17학년	3(0.3)	64(6.0)	759(71.1)	241(22.6)	1067(100)	
18-35학년	26(0.4)	408(6.9)	4328(73.2)	1151(19.5)	5913(100)	
모						
36-41학년	9(0.6)	122(8.2)	1078(72.7)	274(18.5)	1483(100)	
42학년이상	4(0.4)	134(12.4)	759(70.0)	187(17.3)	1084(100)	

***p<.001

〈표 24〉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학생의 학교규칙 제정에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학	5학년이하	1(0.3)	39(10.2)	280(73.1)	63(16.4)	383(100)	52.939***
교	6-11학년	16(1.2)	180(13.3)	919(68.1)	235(17.4)	1350(100)	
규	12-17학년	15(1.4)	128(12.0)	712(66.7)	212(19.9)	1067(100)	
모	18-35학년	83(1.4)	694(11.7)	4116(69.6)	1020(17.3)	5913(100)	
	36-41학년	24(1.6)	234(15.8)	979(66.0)	246(16.6)	1483(100)	
	42학년이상	19(1.8)	188(17.3)	709(65.4)	168(15.5)	1084(100)	

***p<.001

〈표 25〉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동아리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학	5학년이하	1(0.3)	18(4.7)	256(66.8)	108(28.2)	383(100)	19.120
교	6-11학년	7(0.5)	61(4.5)	872(64.6)	410(30.4)	1350(100)	
규	12-17학년	2(0.2)	44(4.1)	693(64.9)	328(30.7)	1067(100)	
모	18-35학년	31(0.5)	263(4.4)	3929(66.4)	1690(28.6)	5913(100)	
	36-41학년	6(0.4)	77(5.2)	993(67.0)	407(27.4)	1483(100)	
	42학년이상	6(0.6)	72(6.6)	706(65.1)	300(27.7)	1084(100)	

***p<.001

〈표 26〉 학생회 자치활동 강화_또래상담, 또래중재, 학생자치법정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20(5.5)	5,036(44.6)	5,131(45.5)	493(4.4)	11,280(100)		
학	5학년이하	2(0.5)	36(9.4)	266(69.5)	79(20.6)	383(100)	16.347
교	6-11학년	10(0.7)	124(9.2)	900(66.7)	316(23.4)	1350(100)	
규	12-17학년	11(1.0)	104(9.7)	700(65.6)	252(23.6)	1067(100)	
모	18-35학년	47(0.8)	582(9.8)	4026(68.1)	1258(21.3)	5913(100)	
	36-41학년	10(0.7)	160(10.8)	964(65.0)	349(23.5)	1483(100)	
	42학년이상	13(1.2)	118(10.9)	700(64.6)	253(23.3)	1084(100)	

***p<.001

2. 학교문화 및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 결과

가. 소재지별

〈표 1〉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 희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2437(8.4)	4313(14.8)	9,520(32.6)	9,570(32.8)	3,340(11.4)	29,180(100)	88.227***
학 대도시	1,022(8.9)	1,657(14.4)	3,549(30.8)	3,884(33.7)	1,404(12.2)	11,516(100)	
생 중소도시	587(7.1)	1,259(15.2)	2,691(32.4)	2,844(34.3)	922(11.1)	8,303(100)	
읍면지역	828(8.8)	1,397(14.9)	3,280(35.0)	2,842(30.4)	1,014(10.8)	9,361(100)	
전체	17(0.1)	277(2.4)	2,304(20.2)	7,833(68.5)	1,003(8.8)	11,434(100)	26.344**
교 대도시	8(0.2)	99(2.3)	842(19.4)	2,980(68.7)	411(9.5)	4,340(100)	
사 중소도시	2(0.1)	76(2.2)	656(19.0)	2,410(69.7)	313(9.1)	3,457(100)	
읍면지역	7(0.2)	102(2.8)	806(22.2)	2,443(67.2)	279(7.7)	3,637(100)	

***p<.001 **p<.01 *p<.05

〈표 2〉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88(2.7)	2,845(9.7)	9,869(33.8)	11,078(38.0)	4,600(15.8)	29,180(100)	148.109***
학 대도시	288(2.5)	1,110(9.6)	3,679(31.9)	4,465(38.8)	1,974(17.1)	11,516(100)	
생 중소도시	227(2.7)	918(11.1)	3,084(37.1)	3,025(36.4)	1,049(12.6)	8,303(100)	
읍면지역	273(2.9)	817(8.7)	3,106(33.2)	3,588(38.3)	1,577(16.8)	9,361(100)	
전체	180(1.6)	1,751(15.3)	4,707(41.2)	4,448(38.9)	348(3.0)	11,434(100)	9.519
교 대도시	69(1.6)	629(14.5)	1,809(41.7)	1,699(39.1)	134(3.1)	4,340(100)	
사 중소도시	61(1.8)	533(15.4)	1,387(40.1)	1,377(39.8)	99(2.9)	3,457(100)	
읍면지역	50(1.4)	589(16.2)	1,511(41.5)	1,372(37.7)	115(3.2)	3,637(100)	

***p<.001 **p<.01 *p<.05

〈표 3〉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93(2.4)	2,645(9.1)	8,413(28.8)	11,762(40.3)	5,667(19.4)	29,180(100)	140.749***
학	250(2.2)	980(8.5)	3,086(26.8)	4,696(40.8)	2,504(21.7)	11,516(100)	
생	202(2.4)	881(10.6)	2,533(30.5)	3,344(40.3)	1,343(16.2)	8,303(100)	
읍면지역	241(2.6)	784(8.4)	2,794(29.8)	3,722(39.8)	1,820(19.4)	9,361(100)	
전체	105(0.9)	898(7.9)	3,123(27.3)	6,607(57.8)	701(6.1)	11,434(100)	23.091**
교	40(0.9)	311(7.2)	1,124(25.9)	2,575(59.3)	290(6.7)	4,340(100)	
사	32(0.9)	262(7.6)	963(27.9)	2,010(58.1)	190(5.5)	3,457(100)	
읍면지역	33(0.9)	325(8.9)	1,036(28.5)	2,022(55.6)	221(6.1)	3,637(100)	

***p<.001 **p<.01 *p<.05

〈표 4〉 학생들의 자치활동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46(1.5)	1,973(6.8)	9,705(33.3)	11,372(39.0)	5,684(19.5)	29,180(100)	179.513***
학	150(1.3)	752(6.5)	3,466(30.1)	4,660(40.5)	2,488(21.6)	11,516(100)	
생	153(1.8)	655(7.9)	3,010(36.3)	3,144(37.9)	1,341(16.2)	8,303(100)	
읍면지역	143(1.5)	566(6.0)	3,229(34.5)	3,568(38.1)	1,855(19.8)	9,361(100)	
전체	126(1.1)	1,336(11.7)	4,761(41.6)	4,512(39.5)	699(6.1)	11,434(100)	19.498*
교	45(1.0)	467(10.8)	1,785(41.1)	1,776(40.9)	267(6.2)	4,340(100)	
사	32(0.9)	389(11.3)	1,466(42.4)	1,359(39.3)	211(6.1)	3,457(100)	
읍면지역	49(1.3)	480(13.2)	1,510(41.5)	1,377(37.9)	221(6.1)	3,637(100)	

***p<.001 **p<.01 *p<.05

〈표 5〉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540(1.9)	2,132(7.3)	10,083(34.6)	10,929(37.5)	5,496(18.8)	29,180(100)	128.637***
학	193(1.7)	836(7.3)	3,731(32.4)	4,394(38.2)	2,362(20.5)	11,516(100)	
생	168(2.0)	715(8.6)	3,069(37.0)	3,031(36.5)	1,320(15.9)	8,303(100)	
읍면지역	179(1.9)	581(6.2)	3,283(35.1)	3,504(37.4)	1,814(19.4)	9,361(100)	
전체	74(0.6)	703(6.1)	3,832(33.5)	5,911(51.7)	914(8.0)	11,434(100)	4.829
교	28(0.6)	255(5.9)	1,457(33.6)	2,231(51.4)	369(8.5)	4,340(100)	
사	21(0.6)	207(6.0)	1,159(33.5)	1,799(52.0)	271(7.8)	3,457(100)	
읍면지역	25(0.7)	241(6.6)	1,216(33.4)	1,881(51.7)	274(7.5)	3,637(100)	

***p<.001 **p<.01 *p<.05

〈표 6〉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 개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280(4.4)	4,137(14.2)	9,814(33.6)	8,975(30.8)	4,974(17.0)	29,180(100)	124.257***
학 대도시	500(4.3)	1,529(13.3)	3,612(31.4)	3,657(31.8)	2,218(19.3)	11,516(100)	
생 중소도시	355(4.3)	1,294(15.6)	2,957(35.6)	2,504(30.2)	1,193(14.4)	8,303(100)	
읍면지역	425(4.5)	1,314(14.0)	3,245(34.7)	2,814(30.1)	1,563(16.7)	9,361(100)	
전체	550(4.8)	3,439(30.1)	4,444(38.9)	2,632(23.0)	369(3.2)	11,434(100)	14.540
교 대도시	218(5.0)	1,297(29.9)	1,640(37.8)	1,040(24.0)	145(3.3)	4,340(100)	
사 중소도시	152(4.4)	1,013(29.3)	1,356(39.2)	819(23.7)	117(3.4)	3,457(100)	
읍면지역	180(4.9)	1,129(31.0)	1,448(39.8)	773(21.3)	107(2.9)	3,637(100)	

***p<.001 **p<.01 *p<.05

〈표 7〉 학급회의 운영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337(4.6)	3,596(12.3)	9,123(31.3)	9,165(31.4)	5,959(20.4)	29,180(100)	261.312***
학 대도시	521(4.5)	1,411(12.3)	3,196(27.8)	3,674(31.9)	2,714(23.6)	11,516(100)	
생 중소도시	455(5.5)	1,181(14.2)	2,765(33.3)	2,508(30.2)	1,394(16.8)	8,303(100)	
읍면지역	361(3.9)	1,004(10.7)	3,162(33.8)	2,983(31.9)	1,851(19.8)	9,361(100)	
전체	385(3.4)	2,352(20.6)	4,918(43.0)	3,284(28.7)	495(4.3)	11,434(100)	7.580
교 대도시	152(3.5)	900(20.7)	1,847(42.6)	1,245(28.7)	196(4.5)	4,340(100)	
사 중소도시	123(3.6)	716(20.7)	1,452(42.0)	1,010(29.2)	156(4.5)	3,457(100)	
읍면지역	110(3.0)	736(20.2)	1,619(44.5)	1,029(28.3)	143(3.9)	3,637(100)	

***p<.001 **p<.01 *p<.05

〈표 8〉 학생회 대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4,186(14.3)	14,075(48.2)	10,919(37.4)	29,180(100)	100.041***
학 대도시	1,462(12.7)	5,662(49.2)	4,392(38.1)	11,516(100)	
생 중소도시	1,107(13.3)	4,098(49.4)	3,098(37.3)	8,303(100)	
읍면지역	1,617(17.3)	4,315(46.1)	3,429(36.6)	9,361(100)	
전체	7,727(67.6)	2,492(21.8)	1,215(10.6)	11,434(100)	44.902***
교 대도시	2,978(68.6)	863(19.9)	499(11.5)	4,340(100)	
사 중소도시	2,225(64.4)	825(23.9)	407(11.8)	3,457(100)	
읍면지역	2,524(69.4)	804(22.1)	309(8.5)	3,637(100)	

***p<.001 **p<.01 *p<.05

〈표 9〉 학생회 필요한 비용 학교에 요청 가능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4,315(14.8)	9,280(31.8)	15,585(53.4)	29,180(100)	129.989***
학 대도시	1,591(13.8)	3,381(29.4)	6,544(56.8)	11,516(100)	
생 중소도시	1,223(14.7)	2,620(31.6)	4,460(53.7)	8,303(100)	
읍면지역	1,501(16.0)	3,279(35.0)	4,581(48.9)	9,361(100)	
전체	8,604(75.2)	1,026(9.0)	1,804(15.8)	11,434(100)	34.630***
교 대도시	3,263(75.2)	352(8.1)	725(16.7)	4,340(100)	
사 중소도시	2,518(72.8)	341(9.9)	598(17.3)	3,457(100)	
읍면지역	2,823(77.6)	333(9.2)	481(13.2)	3,637(100)	

***p<.001 **p<.01 *p<.05

〈표 10〉 학생회 예결산 학생 공개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8,963(30.7)	6,574(22.5)	13,643(46.8)	29,180(100)	70.384***
학 대도시	3,476(30.2)	2,480(21.5)	5,560(48.3)	11,516(100)	
생 중소도시	2,679(32.3)	1,728(20.8)	3,896(46.9)	8,303(100)	
읍면지역	2,808(30.0)	2,366(25.3)	4,187(44.7)	9,361(100)	
전체	5,794(50.7)	3,669(32.1)	1,971(17.2)	11,434(100)	54.141***
교 대도시	2,222(51.2)	1,293(29.8)	825(19.0)	4,340(100)	
사 중소도시	1,710(49.5)	1,104(31.9)	643(18.6)	3,457(100)	
읍면지역	1,862(51.2)	1,272(35.0)	503(13.8)	3,637(100)	

***p<.001 **p<.01 *p<.05

〈표 11〉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 시 자격 제한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6,020(54.9)	6,084(20.8)	7,076(24.2)	29,180(100)	23.297***
학 대도시	6,268(54.4)	2,479(21.5)	2,769(24.0)	11,516(100)	
생 중소도시	4,719(56.8)	1,607(19.4)	1,977(23.8)	8,303(100)	
읍면지역	5,033(53.8)	1,998(21.3)	2,330(24.9)	9,361(100)	
전체	9,726(85.1)	1,361(11.9)	347(3.0)	11,434(100)	14.665**
교 대도시	3,652(84.1)	555(12.8)	133(3.1)	4,340(100)	
사 중소도시	2,916(84.4)	422(12.2)	119(3.4)	3,457(100)	
읍면지역	3,158(86.8)	384(10.6)	95(2.6)	3,637(100)	

***p<.001 **p<.01 *p<.05

〈표 12〉 학생회실 설치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2,393(42.5)	9,272(31.8)	7,515(25.8)	29,180(100)	606.697***
학 대도시	4,414(38.3)	3,791(32.9)	3,311(28.8)	11,516(100)	
생 중소도시	3,056(36.8)	3,026(36.4)	2,221(26.7)	8,303(100)	
읍면지역	4,923(52.6)	2,455(26.2)	1,983(21.2)	9,361(100)	
전체	7,628(66.7)	3,376(29.5)	430(3.8)	11,434(100)	250.432***
교 대도시	2,935(67.6)	1,225(28.2)	180(4.1)	4,340(100)	
사 중소도시	1,978(57.2)	1,326(38.4)	153(4.4)	3,457(100)	
읍면지역	2,715(74.6)	825(22.7)	97(2.7)	3,637(100)	

***p<.001 **p<.01 *p<.05

〈표 13〉 학교 규칙 인지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26,185(89.7)	2,995(10.3)	29,180(100)	158.445***
학 대도시	10,624(92.3)	892(7.7)	11,516(100)	
생 중소도시	7,420(89.4)	883(10.6)	8,303(100)	
읍면지역	8,141(87.0)	1,220(13.0)	9,361(100)	
전체	10,965(95.9)	469(4.1)	11,434(100)	8.930*
교 대도시	4,192(96.6)	148(3.4)	4,340(100)	
사 중소도시	3,306(95.6)	151(4.4)	3,457(100)	
읍면지역	3,467(95.3)	170(4.7)	3,637(100)	

***p<.001 **p<.01 *p<.05

〈표 14〉 학교규칙을 알게 된 방식

구분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설명회	유인물	게시판	교내방송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전교생 조회시	기타	전체
전체	14,922(50.7)	12,568(48.0)	4,667(17.8)	10,284(39.3)	8,102(30.9)	8,420(32.2)	4,509(17.2)	8,784(33.5)	1,609(6.1)	26,185
학 대도시	6,789(63.9)	5,289(49.8)	1,808(17.0)	4,352(41.0)	3,477(32.7)	4,127(38.8)	1,866(17.6)	3,068(28.9)	630(5.9)	10,624
생 중소도시	4,130(55.7)	3,474(46.8)	1,321(17.8)	3,073(41.1)	2,378(32.0)	2,644(35.6)	1,232(16.6)	2,547(34.3)	492(6.6)	7,420
읍면지역	4,003(49.2)	3,805(46.7)	1,538(18.9)	2,859(35.1)	2,247(27.6)	1,649(20.3)	1,411(17.3)	3,169(38.9)	487(6.0)	8,141
전체	5,291(48.3)	7,445(67.9)	3,847(35.1)	6,656(60.7)	2,107(19.2)	1,485(13.5)	2,376(21.7)	2,242(20.4)	1,056(9.6)	10,965
교 대도시	2,297(54.8)	2,833(67.6)	1,455(34.7)	2,681(64.0)	888(21.2)	748(17.8)	929(22.2)	806(19.2)	434(10.4)	4,192
사 중소도시	1,545(46.7)	2,298(69.5)	1,133(34.3)	2,011(60.8)	662(20.0)	475(14.4)	656(19.8)	675(20.4)	308(9.3)	3,306
읍면지역	1,449(41.8)	2,314(66.7)	1,259(36.3)	1,964(56.6)	557(16.1)	262(7.6)	791(22.8)	761(21.9)	314(9.1)	3,467

〈표 15〉 재학중인 학교의 학교규칙 제·개정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3,635(46.7)	3,496(12.0)	12,049(41.3)	29,180(100)	73.806***
학 대도시	5,722(49.7)	1,327(11.5)	4,467(38.8)	11,516(100)	
생 중소도시	3,643(43.9)	1,021(12.3)	3,639(43.8)	8,303(100)	
읍면지역	4,270(45.6)	1,148(12.3)	3,943(42.1)	9,361(100)	
전체	9,250(80.9)	2,184(19.1)	-	11,434(100)	118.788***
교 대도시	3,722(85.8)	618(14.2)	-	4,340(100)	
사 중소도시	2,637(76.3)	820(23.7)	-	3,457(100)	
읍면지역	2,891(79.5)	746(20.5)	-	3,637(100)	

***p<.001 **p<.01 *p<.05

〈표 16〉 재학 중인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11,534(84.6)	2,101(15.4)	13,635(100)	44.962***
학 대도시	4,841(84.6)	881(15.4)	5,722(100)	
생 중소도시	2,974(81.6)	669(18.4)	3,643(100)	
읍면지역	3,719(87.1)	551(12.9)	4,270(100)	
전체	7,615(82.3)	1,635(17.7)	9,250(100)	51.470***
교 대도시	3,193(85.8)	529(14.2)	3,722(100)	
사 중소도시	2,104(79.8)	533(20.2)	2,637(100)	
읍면지역	2,318(80.2)	573(19.8)	2,891(100)	

***p<.001 **p<.01 *p<.05

〈표 17〉 학교규칙 제·개정 시 참여하는 학생

구분	학생회임원	학년대표	학급대표	일반학생	기타	전체
전체	9,174(79.5)	5,036(43.7)	6,753(58.5)	4,579(39.7)	579(5.0)	11,534
학 대도시	3,783(78.1)	2,234(46.1)	2,964(61.2)	1,984(41.0)	240(5.0)	4,841
생 중소도시	2,479(83.4)	1,239(41.7)	1,767(59.4)	1,014(34.1)	134(4.5)	2,974
읍면지역	2,912(78.3)	1,563(42.0)	2,022(54.4)	1,581(42.5)	205(5.5)	3,719
전체	6,357(83.5)	2,513(33.0)	2,991(39.3)	2,708(35.6)	188(2.5)	7,615
교 대도시	2,574(80.6)	1,102(34.5)	1,313(41.1)	1,320(41.3)	85(2.7)	3,193
사 중소도시	1,848(87.8)	622(29.6)	763(36.3)	569(27.0)	46(2.2)	2,104
읍면지역	1,935(83.5)	789(34.0)	915(39.5)	819(35.3)	57(2.5)	2,318

〈표 18〉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부모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7,894(57.9)	1,185(8.7)	4,556(33.4)	13,635(100)	86.917***
학 대도시	3,459(60.5)	415(7.3)	1,848(32.3)	5,722(100)	
생 중소도시	1,923(52.8)	328(9.0)	1,392(38.2)	3,643(100)	
읍면지역	2,512(58.8)	442(10.4)	1,316(30.8)	4,270(100)	
전체	8,074(87.3)	1,176(12.7)	-	9,250(100)	78.724***
교 대도시	3,384(90.9)	338(9.1)	-	3,722(100)	
사 중소도시	2,264(85.9)	373(14.1)	-	2,637(100)	
읍면지역	2,426(83.9)	465(16.1)	-	2,891(100)	

***p<.001 **p<.01 *p<.05

〈표 19〉 학교규칙 제·개정 시 참여하는 학부모 유형

구분	학생회임원의 학부모	학년대표의 학부모	학급대표의 학부모	일반학생의 학부모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전체	4,276(54.2)	3,400(43.1)	2,756(34.9)	3,704(46.9)	621(7.9)	1,211(15.3)	7,894
학 대도시	1,971(57.0)	1,605(46.4)	1,291(37.3)	1,603(46.3)	236(6.8)	531(15.4)	3,459
생 중소도시	988(51.4)	842(43.8)	655(34.1)	809(42.1)	165(8.6)	328(17.1)	1,923
읍면지역	1,317(52.4)	953(37.9)	810(32.2)	1,292(51.4)	220(8.8)	352(14.0)	2,512
전체	3,557(44.1)	3,533(43.8)	1,903(23.6)	4,068(50.4)	1,323(16.4)	-	8,074
교 대도시	1,569(46.4)	1,557(46.0)	800(23.6)	1,844(54.5)	419(12.4)	-	3,384
사 중소도시	941(41.6)	1,034(45.7)	497(22.0)	970(42.8)	443(19.6)	-	2,264
읍면지역	1,047(43.2)	942(38.8)	606(25.0)	1,254(51.7)	461(19.0)	-	2,426

〈표 20〉 학교규칙 제·개정 시 교사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9,067(98.0)	183(0.2)	9,250(100)	10.937*
교 대도시	3,670(98.6)	52(1.4)	3,722(100)	
사 중소도시	2,573(97.6)	64(2.4)	2,637(100)	
읍면지역	2,824(97.7)	67(2.3)	2,891(100)	

***p<.001 **p<.01 *p<.05

〈표 21〉 학교규칙 제·개정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371(2.7)	897(6.6)	3,328(24.4)	4,789(35.1)	2,669(19.6)	1,581(11.6)	13,635(100)	87.796***
학	158(2.8)	359(6.3)	1,316(23.0)	2,019(35.3)	1,206(21.1)	664(11.6)	5,722(100)	
생	111(3.0)	301(8.3)	971(26.7)	1,301(35.7)	558(15.3)	401(11.0)	3,643(100)	
읍면지역	102(2.4)	237(5.6)	1,041(24.4)	1,469(34.4)	905(21.2)	516(12.1)	4,270(100)	
전체	73(0.8)	392(4.2)	2,403(26.0)	4,363(47.2)	2,019(21.8)	-	9,250(100)	141.618***
교	23(0.6)	113(3.0)	815(21.9)	1,781(47.9)	990(26.6)	-	3,722(100)	
사	22(0.8)	134(5.1)	807(30.6)	1,223(46.4)	451(17.1)	-	2,637(100)	
읍면지역	28(1.0)	145(5.0)	781(27.0)	1,359(47.0)	578(20.0)	-	2,891(100)	

***p<.001 **p<.01 *p<.05

〈표 22〉 학교규칙의 준수, 실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실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874(3.0)	3,260(11.2)	11,397(39.1)	9,663(33.1)	3,986(13.7)	29,180(100)	228.296***
학	306(2.7)	1,095(9.5)	4,190(36.4)	4,073(35.4)	1,852(16.1)	11,516(100)	
생	252(3.0)	965(11.6)	3,335(40.2)	2,785(33.5)	966(11.6)	8,303(100)	
읍면지역	316(3.4)	1,200(12.8)	3,872(41.4)	2,805(30.0)	1,168(12.5)	9,361(100)	
전체	71(0.6)	686(6.0)	3,896(34.1)	5,576(48.8)	1,205(10.5)	11,434(100)	137.352***
교	20(0.5)	190(4.4)	1,299(29.9)	2,262(52.1)	569(13.1)	4,340(100)	
사	20(0.6)	226(6.5)	1,248(36.1)	1,628(47.1)	335(9.7)	3,457(100)	
읍면지역	31(0.9)	270(7.4)	1,349(37.1)	1,686(46.4)	301(8.3)	3,637(100)	

***p<.001 **p<.01 *p<.05

〈표 23〉 학교규칙 관련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노력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002(3.4)	3,665(12.6)	11,857(40.6)	8,959(30.7)	3,697(12.7)	29,180(100)	209.537***
학	400(3.5)	1,358(11.8)	4,325(37.6)	3,706(32.2)	1,727(15.0)	11,516(100)	
생	317(3.8)	1,188(14.3)	3,591(43.2)	2,411(29.0)	796(9.6)	8,303(100)	
읍면지역	285(3.0)	1,119(12.0)	3,941(42.1)	2,842(30.4)	1,174(12.5)	9,361(100)	
전체	253(2.2)	2,393(20.9)	5,239(45.8)	2,981(26.1)	568(5.0)	11,434(100)	30.787***
교	96(2.2)	872(20.1)	1,930(44.5)	1,177(27.1)	265(6.1)	4,340(100)	
사	83(2.4)	751(21.7)	1,624(47.0)	845(24.4)	154(4.5)	3,457(100)	
읍면지역	74(2.0)	770(21.2)	1,685(46.3)	959(26.4)	149(4.1)	3,637(100)	

***p<.001 **p<.01 *p<.05

〈표 24〉 동아리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84(2.7)	1,764(6.0)	6,374(211.8)	11,223(38.5)	9,085(31.0)	29,180(100)	205.350***
학 대도시	278(2.4)	628(5.5)	2,232(19.4)	4,384(38.1)	3,994(34.7)	11,516(100)	
생 중소도시	254(3.1)	593(7.1)	2,010(24.2)	3,275(39.4)	2,171(26.1)	8,303(100)	
읍면지역	252(2.7)	543(5.8)	2,132(22.8)	3,564(38.1)	2,870(30.7)	9,361(100)	
전체	77(0.7)	622(5.4)	3,035(26.5)	5,618(49.1)	2,082(18.2)	11,434(100)	31.216***
교 대도시	31(0.7)	184(4.2)	1,124(25.9)	2,169(50.0)	832(19.2)	4,340(100)	
사 중소도시	16(0.5)	208(6.0)	958(27.7)	1,688(48.8)	587(17.0)	3,457(100)	
읍면지역	30(0.8)	230(6.3)	953(26.2)	1,761(48.4)	663(18.2)	3,637(100)	

***p<.001 **p<.01 *p<.05

〈표 25〉 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919(3.1)	2,239(7.7)	8,353(28.6)	10,540(36.1)	7,129(24.4)	29,180(100)	247.690***
학 대도시	354(3.1)	820(7.1)	3,110(27.0)	4,155(36.1)	3,077(26.7)	11,516(100)	
생 중소도시	297(3.6)	796(9.6)	2,663(32.1)	2,958(35.6)	1,589(19.1)	8,303(100)	
읍면지역	268(2.9)	623(6.7)	2,580(27.6)	3,427(36.6)	2,463(26.3)	9,361(100)	
전체	89(0.8)	580(5.1)	3,116(27.3)	5,484(48.0)	2,165(18.9)	11,434(100)	42.992***
교 대도시	34(0.8)	193(4.4)	1,196(27.6)	2,077(47.9)	840(19.4)	4,340(100)	
사 중소도시	24(0.7)	213(6.2)	1,026(29.7)	1,602(46.3)	592(17.1)	3,457(100)	
읍면지역	31(0.9)	174(4.8)	894(24.6)	1,805(49.6)	733(20.2)	3,637(100)	

***p<.001 **p<.01 *p<.05

〈표 26〉 학교에서 학급, 학년 단위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동아리 실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799(16.4)	8,322(28.5)	7,080(24.3)	5,737(19.7)	3,242(11.1)	29,180(100)	363.882***
학 대도시	2,203(19.1)	3,286(28.5)	2,560(22.2)	2,162(18.8)	1,305(11.3)	11,516(100)	
생 중소도시	1,419(17.1)	2,591(31.2)	2,090(25.2)	1,534(18.5)	669(8.1)	8,303(100)	
읍면지역	1,177(12.6)	2,445(26.1)	2,430(26.0)	2,041(21.8)	1,268(13.5)	9,361(100)	
전체	2,036(17.8)	4,765(41.7)	2,015(17.6)	2,094(18.3)	524(4.6)	11,434(100)	144.238***
교 대도시	919(21.2)	1,885(43.4)	687(15.8)	664(15.3)	185(4.3)	4,340(100)	
사 중소도시	584(16.9)	1,490(43.1)	629(18.2)	616(17.8)	138(4.0)	3,457(100)	
읍면지역	533(14.7)	1,390(38.2)	699(19.2)	814(22.4)	201(5.5)	3,637(100)	

***p<.001 **p<.01 *p<.05

〈표 27〉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신설 가능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2690(9.2)	6026(20.7)	9,200(31.5)	7,245(24.8)	4,019(13.8)	29,180(100)	81.680***
학	1,207(10.5)	2,454(21.3)	3,472(30.1)	2,757(23.9)	1,626(14.1)	11,516(100)	
생	721(8.7)	1,714(20.6)	2,552(30.7)	2,205(26.6)	1,111(13.4)	8,303(100)	
읍면지역	762(8.1)	1,858(19.8)	3,176(33.9)	2,283(24.4)	1,282(13.7)	9,361(100)	
전체	293(2.6)	2,163(18.9)	3,590(31.4)	4,282(37.4)	1,106(9.7)	11,434(100)	44.280***
교	132(3.0)	863(19.9)	1,382(31.8)	1,568(36.1)	395(9.1)	4,340(100)	
사	82(2.4)	653(18.9)	1,000(28.9)	1,322(38.2)	400(11.6)	3,457(100)	
읍면지역	79(2.2)	647(17.8)	1,208(33.2)	1,392(38.3)	311(8.6)	3,637(100)	

***p<.001 **p<.01 *p<.05

〈표 28〉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동아리활동 기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549(1.9)	865(3.0)	4,849(16.6)	8,454(29.0)	5,943(20.4)	8,520(29.2)	29,180(100)	149.822***
학	201(1.7)	309(2.7)	1,671(14.5)	3,429(29.8)	2,595(22.5)	3,311(28.8)	11,516(100)	
생	165(2.0)	267(3.2)	1,464(17.6)	2,552(30.7)	1,504(18.1)	2,351(28.3)	8,303(100)	
읍면지역	183(2.0)	289(3.1)	1,714(18.3)	2,473(26.4)	1,844(19.7)	2,858(30.5)	9,361(100)	
전체	41(0.4)	222(1.9)	1,837(16.1)	6,372(55.7)	2,962(25.9)	-	11,434(100)	93.975***
교	18(0.4)	63(1.5)	602(13.9)	2,346(54.1)	1,311(30.2)	-	4,340(100)	
사	12(0.3)	78(2.3)	575(16.6)	1,932(55.9)	860(24.9)	-	3,457(100)	
읍면지역	11(0.3)	81(2.2)	660(18.1)	2,094(57.6)	791(21.7)	-	3,637(100)	

***p<.001 **p<.01 *p<.05

〈표 29〉 봉사활동 활성화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86(1.7)	1,491(5.1)	9,116(31.2)	11,257(38.6)	6,830(23.4)	29,180(100)	216.525***
학	176(1.5)	538(4.7)	3,214(27.9)	4,487(39.0)	3,101(26.9)	11,516(100)	
생	138(1.7)	472(5.7)	2,879(34.7)	3,224(38.8)	1,590(19.1)	8,303(100)	
읍면지역	172(1.8)	481(5.1)	3,023(32.3)	3,546(37.9)	2,139(22.9)	9,361(100)	
전체	42(0.4)	473(4.1)	3,499(30.6)	5,516(48.2)	1,904(16.7)	11,434(100)	52.584***
교	10(0.2)	144(3.3)	1,232(28.4)	2,157(49.7)	797(18.4)	4,340(100)	
사	19(0.5)	146(4.2)	1,156(33.4)	1,614(46.7)	522(15.1)	3,457(100)	
읍면지역	13(0.4)	183(5.0)	1,111(30.5)	1,745(48.0)	585(16.1)	3,637(100)	

***p<.001 **p<.01 *p<.05

〈표 30〉 학교의 봉사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09(2.1)	1,898(6.5)	10,307(35.3)	10,107(34.6)	6,259(21.4)	29,180(100)	203.357***
학 대도시	248(2.2)	694(6.0)	3,784(32.9)	4,045(35.1)	2,745(23.8)	11,516(100)	
생 중소도시	179(2.2)	671(8.1)	3,234(38.9)	2,788(33.6)	1,431(17.2)	8,303(100)	
읍면지역	182(1.9)	533(5.7)	3,289(35.1)	3,274(35.0)	2,083(22.3)	9,361(100)	
전체	46(0.4)	437(3.8)	3,424(29.9)	5,454(47.7)	2,073(18.1)	11,434(100)	48.152***
교 대도시	15(0.3)	147(3.4)	1,215(28.0)	2,117(48.8)	846(19.5)	4,340(100)	
사 중소도시	17(0.5)	142(4.1)	1,172(33.9)	1,565(45.3)	561(16.2)	3,457(100)	
읍면지역	14(0.4)	148(4.1)	1,037(28.5)	1,772(48.7)	666(18.3)	3,637(100)	

***p<.001 **p<.01 *p<.05

〈표 31〉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기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324(1.1)	465(1.6)	4,314(14.8)	9,201(31.5)	8,091(27.7)	6,785(23.3)	29,180(100)	146.811***
학 대도시	128(1.1)	161(1.4)	1,458(12.7)	3,627(31.5)	3,463(30.1)	2,679(23.3)	11,516(100)	
생 중소도시	80(1.0)	139(1.7)	1,330(16.0)	2,805(33.8)	2,155(26.0)	1,794(21.6)	8,303(100)	
읍면지역	116(1.2)	165(1.8)	1,526(16.3)	2,769(29.6)	2,473(26.4)	2,312(24.7)	9,361(100)	
전체	12(0.1)	76(0.7)	1,066(9.3)	5,960(52.1)	4,320(37.8)	-	11,434(100)	51.409***
교 대도시	2(0.0)	27(0.6)	351(8.1)	2,164(49.9)	1,796(41.4)	-	4,340(100)	
사 중소도시	5(0.1)	23(0.7)	338(9.8)	1,809(52.3)	1,282(37.1)	-	3,457(100)	
읍면지역	5(0.1)	26(0.7)	377(10.4)	1,987(54.6)	1,242(34.1)	-	3,637(100)	

***p<.001 **p<.01 *p<.05

나. 소속별

〈표 32〉 학교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건의 희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2,437(8.4)	4,313(14.8)	9,520(32.6)	9,570(32.8)	3,340(11.4)	29,180(100)	661.432***
학	240(4.9)	537(10.9)	1,297(26.3)	2,070(42.0)	782(15.9)	4,926(100)	
생	976(7.9)	1,736(14.0)	4,054(32.7)	4,198(33.8)	1,439(11.6)	12,403(100)	
일반학생	1,221(10.3)	2,040(17.2)	4,169(35.2)	3,302(27.9)	1,119(9.4)	11,851(100)	
교	17(0.1)	277(2.4)	2,304(20.2)	7,833(68.5)	1,003(8.8)	11,434(100)	0.954
사	11(0.2)	150(2.4)	1,273(20.2)	4,314(68.4)	560(8.9)	6,308(100)	
일반교사	6(0.1)	127(2.5)	1,031(20.1)	3,519(68.7)	443(8.6)	5,126(100)	

***p<.001 **p<.01 *p<.05

〈표 33〉 학생들의 학교운영 참여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88(2.7)	2,845(9.7)	9,869(33.8)	11,078(38.0)	4,600(15.8)	29,180(100)	342.242***
학	120(2.4)	431(8.7)	1,380(28.0)	2,023(41.1)	972(19.7)	4,926(100)	
생	283(2.3)	1,126(9.1)	3,970(32.0)	4,957(40.0)	2,076(16.7)	12,403(100)	
일반학생	385(3.2)	1,288(10.9)	4,519(38.1)	4,098(34.6)	1,561(13.2)	11,851(100)	
교	180(1.6)	1,751(15.3)	4,707(41.2)	4,448(38.9)	348(3.0)	11,434(100)	48.177***
사	82(1.3)	885(14.0)	2,535(40.2)	2,613(41.4)	193(3.1)	6,308(100)	
일반교사	98(1.9)	866(16.9)	2,172(42.4)	1,835(35.8)	155(3.0)	5,126(100)	

***p<.001 **p<.01 *p<.05

〈표 34〉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93(2.4)	2,645(9.1)	8,413(28.8)	11,762(40.3)	5,667(19.4)	29,180(100)	671.042***
학	95(1.9)	362(7.3)	1,054(21.4)	2,114(42.9)	1,301(26.4)	4,926(100)	
생	259(2.1)	1,059(8.5)	3,210(25.9)	5,275(42.5)	2,600(21.0)	12,403(100)	
일반학생	339(2.9)	1,224(10.3)	4,149(35.0)	4,373(36.9)	1,766(14.9)	11,851(100)	
교	105(0.9)	898(7.9)	3,123(27.3)	6,607(57.8)	701(6.1)	11,434(100)	87.019***
사	45(0.7)	411(6.5)	1,597(25.3)	3,839(60.9)	416(6.6)	6,308(100)	
일반교사	60(1.2)	487(9.5)	1,526(29.8)	2,768(54.0)	285(5.6)	5,126(100)	

***p<.001 **p<.01 *p<.05

〈표 35〉 학생들의 자치활동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46(1.5)	1,973(6.8)	9,705(33.3)	11,372(39.0)	5,684(19.5)	29,180(100)	225.519***
학생	89(1.8)	368(7.5)	1,352(27.4)	1,946(39.5)	1,171(23.8)	4,926(100)	
학생	168(1.4)	830(6.7)	3,933(31.7)	4,967(40.0)	2,505(20.2)	12,403(100)	
학생	189(1.6)	775(6.5)	4,420(37.3)	4,459(37.6)	2,008(16.9)	11,851(100)	
교사	126(1.1)	1,336(11.7)	4,761(41.6)	4,512(39.5)	699(6.1)	11,434(100)	82.838***
교사	54(0.9)	635(10.1)	2,530(40.1)	2,671(42.3)	418(6.6)	6,308(100)	
교사	72(1.4)	701(13.7)	2,231(43.5)	1,841(35.9)	281(5.5)	5,126(100)	

***p<.001 **p<.01 *p<.05

〈표 36〉 학교의 학생 자치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540(1.9)	2,132(7.3)	10,083(34.6)	10,929(37.5)	5,496(18.8)	29,180(100)	304.874***
학생	109(2.2)	345(7.0)	1,365(27.7)	1,946(39.5)	1,161(23.6)	4,926(100)	
학생	206(1.7)	885(7.1)	4,064(32.8)	4,796(38.7)	2,452(19.8)	12,403(100)	
학생	225(1.9)	902(7.6)	4,654(39.3)	4,187(35.3)	1,883(15.9)	11,851(100)	
교사	74(0.6)	703(6.1)	3,832(33.5)	5,911(51.7)	914(8.0)	11,434(100)	126.175***
교사	29(0.5)	284(4.5)	1,982(31.4)	3,457(54.8)	556(8.8)	6,308(100)	
교사	45(0.9)	419(8.2)	1,850(36.1)	2,454(47.9)	358(7.0)	5,126(100)	

***p<.001 **p<.01 *p<.05

〈표 37〉 학생회가 자율적으로 학교행사 개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280(4.4)	4,137(14.2)	9,814(33.6)	8,975(30.8)	4,974(17.0)	29,180(100)	242.364***
학생	264(5.4)	818(16.6)	1,380(28.0)	1,470(29.8)	994(20.2)	4,926(100)	
학생	549(4.4)	1,751(14.1)	3,956(31.9)	3,903(31.5)	2,244(18.1)	12,403(100)	
학생	467(3.9)	1,568(13.2)	4,478(37.8)	3,602(30.4)	1,736(14.6)	11,851(100)	
교사	550(4.8)	3,439(30.1)	4,444(38.9)	2,632(23.0)	369(3.2)	11,434(100)	43.558***
교사	267(4.2)	1,797(28.5)	2,465(39.1)	1,550(24.6)	229(3.6)	6,308(100)	
교사	283(5.5)	1,642(32.0)	1,979(38.6)	1,082(21.1)	140(2.7)	5,126(100)	

***p<.001 **p<.01 *p<.050

〈표 38〉 학급회의 운영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337(4.6)	3,596(12.3)	9,123(31.3)	9,165(31.4)	5,959(20.4)	29,180(100)		
학							153.553***	
생	학생회임원	275(5.6)	677(13.7)	1,341(27.2)	1,541(31.1)	1,092(22.2)		4,926(100)
	학급임원	587(4.7)	1,509(12.2)	3,675(29.6)	3,938(31.8)	2,694(21.7)		12,403(100)
	일반학생	475(4.0)	1,410(11.9)	4,107(34.7)	3,686(31.1)	2,173(18.3)	11,851(100)	
교	전체	385(3.4)	2,352(20.6)	4,918(43.0)	3,284(28.7)	495(4.3)	11,434(100)	6.372
사	생활지도교사	191(3.0)	1,281(20.3)	2,720(43.1)	1,840(29.2)	276(4.4)	6,308(100)	
	일반교사	194(3.8)	1,071(20.9)	2,198(42.9)	1,444(28.2)	219(4.3)	5,126(100)	

***p<.001 **p<.01 *p<.05

〈표 39〉 학생회 대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4,186(14.3)	14,075(48.2)	10,919(37.4)	29,180(100)		
학					1840.008***	
생	학생회임원	1,501(30.5)	2,441(49.6)	984(20.0)		4,926(100)
	학급임원	1,464(11.8)	6,486(52.3)	4,453(35.9)		12,403(100)
	일반학생	1,221(10.3)	5,148(43.4)	5,482(46.3)	11,851(100)	
교	전체	7,727(67.6)	2,492(21.8)	1,215(10.6)	11,434(100)	234.630***
사	생활지도교사	4,513(71.5)	1,371(21.7)	424(6.7)	6,308(100)	
	일반교사	3,214(62.7)	1,121(21.9)	791(15.4)	5,126(100)	

***p<.001 **p<.01 *p<.05

〈표 40〉 학생회 필요한 비용 학교에 요청 가능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4,315(14.8)	9,280(31.8)	15,585(53.4)	29,180(100)		
학					861.894***	
생	학생회임원	1,200(24.4)	1,903(38.6)	1,823(37.0)		4,926(100)
	학급임원	1,776(14.3)	3,985(32.1)	6,642(53.6)		12,403(100)
	일반학생	1,339(11.3)	3,392(28.6)	7,120(60.1)	11,851(100)	
교	전체	8,604(75.2)	1,026(9.0)	1,804(15.8)	11,434(100)	238.881***
사	생활지도교사	4,961(78.6)	645(10.2)	702(11.1)	6,308(100)	
	일반교사	3,643(71.1)	381(7.4)	1,102(21.5)	5,126(100)	

***p<.001 **p<.01 *p<.05

〈표 41〉 학생회 예·결산 학생 공개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8,963(30.7)	6,574(22.5)	13,643(46.8)	29,180(100)	839.844***
학생	2,225(45.2)	1,173(23.8)	1,528(31.0)	4,926(100)	
학생회임원	3,799(30.6)	2,789(22.5)	5,815(46.9)	12,403(100)	
일반학생	2,939(24.8)	2,612(22.0)	6,300(53.2)	11,851(100)	
교사	5,794(50.7)	3,669(32.1)	1,971(17.2)	11,434(100)	270.158***
생활지도교사	3,275(51.9)	2,261(35.8)	772(12.2)	6,308(100)	
일반교사	2,519(49.1)	1,408(27.5)	1,199(23.4)	5,126(100)	

***p<.001 **p<.01 *p<.05

〈표 42〉 학생회장이나 학급회장 선출 시 자격 제한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6,020(54.9)	6,084(20.8)	7,076(24.2)	29,180(100)	1177.821***
학생	3,465(70.3)	919(18.7)	542(11.0)	4,926(100)	
학생회임원	7,152(57.7)	2,590(20.9)	2,661(21.5)	12,403(100)	
일반학생	5,403(45.6)	2,575(21.7)	3,873(32.7)	11,851(100)	
교사	9,726(85.1)	1,361(11.9)	347(3.0)	11,434(100)	81.660***
생활지도교사	5,438(86.2)	761(12.1)	109(1.7)	6,308(100)	
일반교사	4,288(83.7)	600(11.7)	238(4.6)	5,126(100)	

***p<.001 **p<.01 *p<.05

〈표 43〉 학생회실 설치 여부

구분	그렇지 않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2,393(42.5)	9,272(31.8)	7,515(25.8)	29,180(100)	1536.286***
학생	2,791(56.7)	1,669(33.9)	466(9.5)	4,926(100)	
학생회임원	5,496(44.3)	4,155(33.5)	2,752(22.2)	12,403(100)	
일반학생	4,106(34.6)	3,448(29.1)	4,297(36.3)	11,851(100)	
교사	7,628(66.7)	3,376(29.5)	430(3.8)	11,434(100)	175.933***
생활지도교사	4,195(66.5)	2,003(31.8)	110(1.7)	6,308(100)	
일반교사	3,433(67.0)	1,373(26.8)	320(6.2)	5,126(100)	

***p<.001 **p<.01 *p<.05

〈표 44〉 학교 규칙 인지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26,185(89.7)	2,995(10.3)	29,180(100)		
학생	학생회임원	4,598(93.3)	328(6.7)	4,926(100)	131.735***
	학급임원	11,203(90.3)	1,200(9.7)	12,403(100)	
	일반학생	10,384(87.6)	1,467(12.4)	11,851(100)	
교사	전체	10,965(95.9)	469(4.1)	11,434(100)	151.322***
	생활지도교사	6,179(98.0)	129(2.0)	6,308(100)	
	일반교사	4,786(93.4)	340(6.6)	5,126(100)	

***p<.001 **p<.01 *p<.05

〈표 45〉 학교규칙 알게 된 경로

구분	가정 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설명회	유인물	게시판	교내방송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전교생 조회시	기타	전체	
전체	14922(57.0)	12568(48.0)	4667(17.8)	10284(39.3)	8102(30.9)	8420(32.2)	4,509(17.2)	8,784(33.5)	1609(6.1)	26,185	
학생	학생회임원	2535(55.1)	2,316(50.4)	874(19.0)	1,938(42.1)	1,409(30.6)	1,320(28.7)	1,247(27.1)	1,736(37.8)	287(6.2)	4,598
	학급임원	6,495(58.0)	5,368(47.9)	2,097(18.7)	4,562(40.7)	3,512(31.1)	3,800(33.9)	2,252(20.1)	3,878(34.6)	680(6.1)	11,203
	일반학생	5,892(56.7)	4,884(47.0)	1,696(16.3)	3,784(36.4)	3,181(30.6)	3,300(31.8)	1,010(9.7)	3,170(30.5)	642(6.2)	10,384
교사	전체	5,291(48.3)	7,445(67.9)	3,847(35.1)	6,666(60.7)	2,107(19.2)	1,485(13.5)	2,376(21.7)	2,242(20.4)	1,056(9.6)	10,965
	생활지도교사	3,010(48.7)	4,417(71.5)	2,194(35.5)	3,631(58.8)	1,175(19.0)	837(13.5)	1,546(25.0)	1,344(21.8)	722(11.7)	6,179
	일반교사	2,281(47.7)	3,028(63.3)	1,653(34.5)	3,025(63.2)	932(19.5)	648(13.5)	830(17.3)	898(18.8)	334(7.0)	4,786

〈표 46〉 재학 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13,635(46.7)	3,496(12.0)	12,049(41.3)	29,180(100)		
학생	학생회임원	3,037(61.7)	683(13.0)	1,251(25.4)	4,926(100)	865.878***
	학급임원	5,964(48.1)	1,444(11.6)	4,995(40.3)	12,403(100)	
	일반학생	4,634(39.1)	1,414(11.9)	5,803(49.0)	11,851(100)	
교사	전체	9,250(80.9)	2,184(19.1)	-	11,434(100)	192.303***
	생활지도교사	5,393(85.5)	915(14.5)	-	6,308(100)	
	일반교사	3,857(75.2)	1,296(24.8)	-	5,126(100)	

***p<.001 **p<.01 *p<.05

〈표 47〉 재학중인 학교 규칙 제·개정 학생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전체	11,534(84.6)	2,101(15.4)	13,635(100)	60.630***
학생	2,683(88.3)	354(11.7)	3,037(100)	
학급임원	5,060(84.8)	904(15.2)	5,964(100)	
일반학생	3,791(81.8)	843(18.2)	4,634(100)	
교사	7,615(82.3)	1,635(17.7)	9,250(100)	194.454***
생활지도교사	4,692(87.0)	701(13.0)	5,393(100)	
일반교사	2,923(75.8)	934(24.2)	3,857(100)	

***p<.001 **p<.01 *p<.05

〈표 48〉 학교규칙의 제·개정 시 참여 학생 유형

구분	학생회임원	학년대표	학급대표	일반학생	기타	전체
전체	9,174(79.5)	5,036(43.7)	6,753(58.5)	4,579(39.7)	579(5.0)	11,534
학생	2,368(88.3)	1,162(43.3)	1,466(54.6)	831(31.0)	121(4.5)	2,683
학급임원	4,018(79.4)	2,241(44.3)	3,218(63.6)	1,916(37.9)	217(4.3)	5,060
일반학생	2,788(73.5)	1,633(43.1)	2,069(54.6)	1,832(48.3)	241(6.4)	3,791
교사	6,357(83.5)	2,513(33.0)	2,991(39.3)	2,708(35.6)	188(2.5)	7,615
생활지도교사	4,010(85.5)	1,630(34.7)	1,924(41.0)	1,676(35.7)	118(2.5)	4,692
일반교사	2,347(80.3)	883(30.2)	1,067(36.5)	1,032(35.3)	70(2.4)	2,923

〈표 49〉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부모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7,894(57.9)	1,185(8.7)	4,556(33.4)	13,635(100)	203.242***
학생	2,075(68.3)	251(8.3)	711(23.4)	3,037(100)	
학급임원	3,314(55.6)	559(9.4)	2,091(35.1)	5,964(100)	
일반학생	2,505(54.1)	375(8.1)	1,754(37.9)	4,634(100)	
교사	8,074(87.3)	1,176(12.7)	-	9,250(100)	86.169***
생활지도교사	4,854(90.0)	539(10.0)	-	5,393(100)	
일반교사	3,220(83.5)	637(16.5)	-	3,857(100)	

***p<.001 **p<.01 *p<.05

〈표 50〉 학교규칙 제·개정 시 참여하는 학부모 유형

구분	학생회임원의 학부모	학년대표의 학부모	학급대표의 학부모	일반학생의 학부모	기타	잘 모르겠다	전체
전체	4,276(54.2)	3,400(43.1)	2,756(34.9)	3,704(46.9)	621(7.9)	1,211(15.3)	7,894
학 생	학생회임원	1,189(57.3)	929(44.8)	597(28.8)	859(41.4)	224(10.8)	2,075
	학급임원	1,834(55.3)	1,461(44.1)	1,251(37.7)	1,567(47.3)	235(7.1)	3,314
	일반학생	1,253(50.0)	1,010(40.3)	908(36.2)	1,278(51.0)	162(6.5)	2,505
교 사	전체	3,557(44.1)	3,533(43.8)	1,903(23.6)	4,068(50.4)	1,323(16.4)	- 8,074
	생활지도교사	2,115(43.6)	2,263(46.6)	1,196(24.6)	2,528(52.1)	756(15.6)	- 4,854
	일반교사	1,442(44.8)	1,270(39.4)	707(22.0)	1,540(47.8)	567(17.6)	- 3,220

〈표 51〉 학교규칙 제·개정 시 교사 참여 여부

구분	예	아니오	전체	χ^2
교 사	전체	9,067(98.0)	183(0.2)	9,250(100)
	생활지도교사	5,302(98.3)	91(1.7)	5,393(100)
	일반교사	3,765(97.6)	92(2.4)	3,857(100)

***p<.001 **p<.01 *p<.05

〈표 52〉 학교규칙 제·개정 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371(2.7)	897(6.6)	3,328(24.4)	4,789(35.1)	2,669(19.6)	1,581(11.6)	13,635(100)		
학 생	학생회임원	78(2.6)	199(6.6)	718(23.6)	1,148(37.8)	716(23.6)	178(5.9)	3,037(100)	254.253***
	학급임원	149(2.5)	397(6.7)	1,467(24.6)	2,128(35.7)	1,186(19.9)	637(10.7)	5,964(100)	
	일반학생	144(3.1)	301(6.5)	1,143(24.7)	1,513(32.6)	767(16.6)	766(16.5)	4,634(100)	
교 사	전체	73(0.8)	392(4.2)	2,403(26.0)	4,363(47.2)	2,019(21.8)	- 9,250(100)		110.354***
	생활지도교사	39(0.7)	203(3.8)	1,213(22.5)	2,629(48.7)	1,309(24.3)	- 5,393(100)		
	일반교사	34(0.9)	189(4.9)	1,190(30.9)	1,734(45.0)	710(18.4)	- 3,857(100)		

***p<.001 **p<.01 *p<.05

〈표 53〉 학교규칙의 준수, 실천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 실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874(3.0)	3,260(11.2)	11,397(39.1)	9,663(33.1)	3,986(13.7)	29,180(100)	215.448***
학 생	158(3.2)	543(11.0)	1,617(32.8)	1,742(35.4)	866(17.6)	4,926(100)	
학급임원	320(2.6)	1,392(11.2)	4,732(38.2)	4,231(34.1)	1,728(13.9)	12,403(100)	
일반학생	396(3.3)	1,325(11.2)	5,048(42.6)	3,690(31.1)	1,392(11.7)	11,851(100)	
교 사	71(0.6)	686(6.0)	3,896(34.1)	5,576(48.8)	1,205(10.5)	11,434(100)	31.289***
생활지도교사	38(0.6)	313(5.0)	2,129(33.8)	3,132(49.7)	696(11.0)	6,308(100)	
일반교사	33(0.6)	373(7.3)	1,767(34.5)	2,444(47.7)	509(9.9)	5,126(100)	

***p<.001 **p<.01 *p<.05

〈표 54〉 학교규칙 관련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교규칙 준수 노력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1,002(3.4)	3,665(12.6)	11,857(40.6)	8,959(30.7)	3,697(12.7)	29,180(100)	141.158***
학 생	220(4.5)	746(15.1)	1,766(35.9)	1,536(31.2)	658(13.4)	4,926(100)	
학급임원	396(3.2)	1,573(12.7)	4,888(39.4)	3,902(31.5)	1,644(13.3)	12,403(100)	
일반학생	386(3.3)	1,346(11.4)	5,203(43.9)	3,521(29.7)	1,395(11.8)	11,851(100)	
교 사	253(2.2)	2,393(20.9)	5,239(45.8)	2,981(26.1)	568(5.0)	11,434(100)	0.727
생활지도교사	133(2.1)	1,322(21.0)	2,894(45.9)	1,644(26.1)	315(5.0)	6,308(100)	
일반교사	120(2.3)	1,071(20.9)	2,345(45.7)	1,337(26.1)	253(4.9)	5,126(100)	

***p<.001 **p<.01 *p<.05

〈표 55〉 동아리활동 활성화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784(2.7)	1,764(6.0)	6,374(21.8)	11,223(38.5)	9,035(31.0)	29,180(100)	153.501***
학 생	152(3.1)	340(6.9)	911(18.5)	1,875(38.1)	1,648(33.5)	4,926(100)	
학급임원	322(2.6)	734(5.9)	2,525(20.4)	4,753(38.3)	4,069(32.8)	12,403(100)	
일반학생	310(2.6)	690(5.8)	2,938(24.8)	4,595(38.8)	3,318(28.0)	11,851(100)	
교 사	77(0.7)	622(5.4)	3,035(26.5)	5,618(49.1)	2,082(18.2)	11,434(100)	9.025
생활지도교사	41(0.6)	320(5.1)	1,629(25.8)	3,144(49.8)	1,174(18.6)	6,308(100)	
일반교사	36(0.7)	302(5.9)	1,406(27.4)	2,474(48.3)	908(17.7)	5,126(100)	

***p<.001 **p<.01 *p<.05

〈표 56〉 학교의 동아리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919(3.1)	2,239(7.7)	8,353(28.6)	10,540(36.1)	7,129(24.4)	29,180(100)	
학 생	학생회임원 176(3.6)	4088(8.3)	1,207(24.5)	1,722(35.0)	1,413(28.7)	4,926(100)	156.652***
학급임원	390(3.1)	934(7.5)	3,463(27.9)	4,435(35.8)	3,181(25.6)	12,403(100)	
일반학생	353(3.0)	897(7.6)	3,683(31.1)	4,383(37.0)	2,535(21.4)	11,851(100)	
교 사	전체 89(0.8)	580(5.1)	3,116(27.3)	5,484(48.0)	2,165(18.9)	11,434(100)	
생활지도교사	48(0.8)	268(4.2)	1,650(26.2)	3,130(49.6)	1,212(19.2)	6,308(100)	
일반교사	41(0.8)	312(6.1)	1,466(28.6)	2,354(45.9)	953(18.6)	5,126(100)	

***p<.001 **p<.01 *p<.05

〈표 57〉 학교에서 학급, 학년 단위로 모든 학생이 동일한 동아리 실시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799(16.4)	8,322(28.5)	7,080(24.3)	5,737(19.7)	3,242(11.1)	29,180(100)	
학 생	학생회임원 920(18.7)	1,488(30.2)	965(19.6)	981(19.9)	572(11.6)	4,926(100)	202.737***
학급임원	2,154(17.4)	3,673(29.6)	2,818(22.7)	2,339(18.9)	1,419(11.4)	12,403(100)	
일반학생	1,725(14.6)	3,161(26.7)	3,297(27.8)	2,417(20.4)	1,251(10.6)	11,851(100)	
교 사	전체 2,036(17.8)	4,765(41.7)	2,015(17.6)	2,094(18.3)	524(4.6)	11,434(100)	
생활지도교사	1,112(17.6)	2,570(40.7)	1,117(17.7)	1,207(19.1)	302(4.8)	6,308(100)	
일반교사	924(18.0)	2,195(42.8)	898(17.5)	887(17.3)	222(4.3)	5,126(100)	

***p<.001 **p<.01 *p<.05

〈표 58〉 학생들이 원하는 동아리 신설 가능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2,690(9.2)	6,026(20.7)	9,200(31.5)	7,245(24.8)	4,019(13.8)	29,180(100)	
학 생	학생회임원 490(9.9)	1,017(20.6)	1,305(26.5)	1,301(26.4)	813(16.5)	4,926(100)	155.212***
학급임원	1,125(9.1)	2,677(21.6)	3,771(30.4)	3,069(24.7)	1,761(14.2)	12,403(100)	
일반학생	1,075(9.1)	2,332(19.7)	4,124(34.8)	2,875(24.3)	1,445(12.2)	11,851(100)	
교 사	전체 293(2.6)	2,163(18.9)	3,590(31.4)	4,282(37.4)	1,106(9.7)	11,434(100)	
생활지도교사	128(2.0)	1,083(17.2)	1,987(31.5)	2,494(39.5)	616(9.8)	6,308(100)	
일반교사	165(3.2)	1,080(21.1)	1,603(31.3)	1,788(34.9)	490(9.6)	5,126(100)	

***p<.001 **p<.01 *p<.05

〈표 59〉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동아리활동 기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549(1.9)	865(3.0)	4,849(16.6)	8,454(29.0)	5,943(20.4)	8,520(29.2)	29,180(100)	
학 생	학생회임원	108(2.2)	170(3.5)	708(14.4)	1,573(31.9)	1,186(24.1)	1,181(24.0)	237.412***
	학급임원	229(1.8)	363(2.9)	1,936(15.6)	3,618(29.2)	2,667(21.5)	3,590(28.9)	
	일반학생	212(1.8)	332(2.8)	2,205(18.6)	3,263(27.5)	2,090(17.6)	3,749(31.6)	
교 사	전체	41(0.4)	222(1.9)	1,837(16.1)	6,372(55.7)	2,962(25.9)	-	27.446***
	생활지도교사	21(0.3)	99(1.6)	938(14.9)	3,595(57.0)	1,655(26.2)	-	
	일반교사	20(0.4)	123(2.4)	899(17.5)	2,777(54.2)	1,307(25.5)	-	

***p<.001 **p<.01 *p<.05

〈표 60〉 봉사활동 활성화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486(1.7)	1,491(5.1)	9,116(31.2)	11,257(38.6)	6,830(23.4)	29,180(100)		
학 생	학생회임원	77(1.6)	251(5.1)	1,332(27.0)	1,977(40.1)	1,289(26.2)	4,926(100)	129.553***
	학급임원	204(1.6)	607(4.9)	3,732(30.1)	4,800(38.7)	3,060(24.7)	12,403(100)	
	일반학생	205(1.7)	633(5.3)	4,052(34.2)	4,480(37.8)	2,481(20.9)	11,851(100)	
교 사	전체	42(0.4)	473(4.1)	3,499(30.6)	5,516(48.2)	1,904(16.7)	11,434(100)	35.581***
	생활지도교사	21(0.3)	222(3.5)	1,831(29.0)	3,147(49.9)	1,087(17.2)	6,308(100)	
	일반교사	21(0.4)	251(4.9)	1,668(32.5)	2,369(46.2)	817(15.9)	5,126(100)	

***p<.001 **p<.01 *p<.05

〈표 61〉 학교의 봉사활동 지원 수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χ^2	
전체	609(2.1)	1,898(6.5)	10,307(35.3)	10,107(34.6)	6,259(21.4)	29,180(100)		
학 생	학생회임원	104(2.1)	301(6.1)	1,501(30.5)	1,814(36.8)	1,206(24.5)	4,926(100)	150.977***
	학급임원	236(1.9)	831(6.7)	4,240(34.2)	4,288(34.6)	2,808(22.6)	12,403(100)	
	일반학생	269(2.3)	766(6.5)	4,566(38.5)	4,005(33.8)	2,245(18.9)	11,851(100)	
교 사	전체	46(0.4)	437(3.8)	3,424(29.9)	5,454(47.7)	2,073(18.1)	11,434(100)	33.594***
	생활지도교사	21(0.3)	209(3.3)	1,788(28.3)	3,117(49.4)	1,173(18.6)	6,308(100)	
	일반교사	25(0.5)	228(4.4)	1,636(31.9)	2,337(45.6)	900(17.6)	5,126(100)	

***p<.001 **p<.01 *p<.05

〈표 62〉 학교생활기록부 학생 봉사활동 기록 여부

구분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	χ^2
전체	324(1.1)	465(1.6)	4,314(14.8)	9,201(31.5)	8,091(27.7)	6,785(23.3)	29,180(100)	
학	59(1.2)	82(1.7)	558(11.3)	1,699(34.5)	1,665(33.8)	863(17.5)	4,926(100)	359.191***
생	149(1.2)	195(1.6)	1,702(13.7)	3,902(31.5)	3,589(28.9)	2,866(23.1)	12,403(100)	
일반학생	116(1.0)	188(1.6)	2,054(17.3)	3,600(30.4)	2,837(23.9)	3,056(25.8)	11,851(100)	
교	12(0.1)	76(0.7)	1,066(9.3)	5,960(52.1)	4,320(37.8)	-	11,434(100)	14.311
사	5(0.1)	36(0.6)	545(8.6)	3,364(53.3)	2,358(37.4)	-	6,308(100)	
일반교사	7(0.1)	40(0.7)	521(10.2)	2,596(50.6)	1,962(38.3)	-	5,126(100)	

***p<.001 **p<.01 *p<.05

CR 2012-36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 연구

발행 2012년 09월
발행인 김태완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주소 서울 서초구 바우뒤편로1길 35
전화 : (02) 3460-0114
팩스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인쇄 1973. 6. 13. 제16-35호
인쇄 삼신인쇄 (02) 2285-6477

본 자료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